

#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집

2021. 7.



농림축산식품부



## 차 례

●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1
1.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	143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	147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2016. 3. 4. 제정) .....	197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2017. 4. 28. 일부개정) .....	201
● 동물도축세부규정(2019. 5. 22. 일부개정) .....	213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2021. 1. 27. 일부개정) .....	219
●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2017. 8. 18. 일부개정) .....	223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2016. 6. 30. 일부개정) .....	229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2016. 3. 4. 제정) .....	239

## 차 례

-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 ..... 251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2018. 7. 3. 일부개정)  
269
- 동물실험지침(2016. 3. 9. 일부개정) ..... 395
- 동물운송 세부규정(2018. 10. 11. 일부개정) ..... 409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2016. 1. 21. 제정) ..... 419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2014. 12. 11. 일부개정) ..... 431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2018. 12. 11. 일부개정) ..... 435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2019. 5. 22. 제정) ..... 439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2013. 5. 27. 일부개정) ..... 443
- 하균지두개 부흥·육성령(2015. 2. 3. 일부개정) ..... 447

#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9	제1조(목적) ..... 9	제1조(목적) ..... 9
제2조(정의) ..... 9	제2조(동물의 범위) ..... 10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 10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10	제1조의3(맹견의 범위) ..... 11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41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 11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51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 71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 71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등) ..... 71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 9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2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102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 12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12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 22
제9조(동물의 운송) ..... 18		제5조(동물운송자) ..... 18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 82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82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 82
제11조(동물의 수술) ..... 92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92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 9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73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93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54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64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74 제16조(신고 등) ..... 4 제17조(공고) ..... 5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6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7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95	제6조의2(보험의 가입) .....4 제7조(공고) ..... 5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7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03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3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63 제11조(인식표의 부착) .....73 제12조(안전조치) ..... 8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04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 41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14 제12조의5(보험금액) ..... 3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64 제14조(보호조치 기간) .....74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74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94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51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5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35 제20조(공고) ..... 5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75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06	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 0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06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06		
<b>제3장 동물실험</b>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16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36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36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36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46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 61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76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 67	제24조(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76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86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96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96	제25조(운영 실적) ..... 0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96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27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 71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 74	제2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37
<b>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b>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57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 75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77 제31조(인증의 승계) ..... 8		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57 제31조(인증의 신청) ..... 6  제32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 78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87 제34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97
제5장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08  제33조(영업의 등록) ..... 8		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08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18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58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19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 3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 94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59 제34조(영업의 허가) ..... 5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59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79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99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12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 14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15
제35조(영업의 승계) ..... 9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12 제37조(교육) ..... 104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 15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 17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9조(출입·검사 등) ..... 17</p> <p>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 19</p> <p>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21</p> <p>제41조의2 삭제</p> <p>제42조(수수료) ..... 115</p> <p>제43조(청문) ..... 118</p> <p>제44조(권한의 위임) ..... 118</p> <p>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1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46조(벌칙) ..... 123</p> <p>제46조의2(양벌규정) ..... 126</p> <p>제47조(과태료) ..... 127</p> <p>부칙 ..... 131</p>	<p>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 19</p> <p>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112</p> <p>제15조의2 삭제</p> <p>제16조(권한의 위임) ..... 118</p> <p>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120</p> <p>제18조(소속 기관의 장) ..... 122</p>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22</p> <p>제19조의2 삭제</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127</p> <p>부칙 ..... 131</p>	<p>제46조(시정명령) ..... 17</p> <p>제47조(동물보호감시원의 증표) ..... 21</p> <p>제48조(등록 등의 수수료) ..... 115</p> <p>제49조(규제의 재검토) ..... 116</p> <p>부칙 ..... 131</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제정 1991. 5.31. 법률 제 4379호	제정 2008. 1. 3. 대통령령 제20518호	제정 2008. 1. 3. 농림부령 제1575호
타법개정 1996. 8. 8. 법률 제 5153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호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	타법개정 2008. 6.20. 대통령령 제20854호	타법개정 2011. 6.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94호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 5443호	타법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5호	전부개정 2012. 2.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1호
타법개정 2004. 2. 9. 법률 제 7167호	타법개정 2009.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일부개정 2012.12.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29호
전부개정 2007. 1.26. 법률 제 8282호	일부개정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0호	전부개정 2012. 2.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1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타법개정 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	일부개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5호
타법개정 2010. 5.25. 법률 제10310호	타법개정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일부개정 2013.11.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58호
전부개정 2011. 8. 4. 법률 제10995호	전부개정 2012. 2. 3. 대통령령 제23613호	일부개정 2013.12.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8호
전부개정 2011. 8. 4. 법률 제10995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일부개정 2014. 2.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79호
전부개정 2011. 8. 4. 법률 제10995호	일부개정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0호	일부개정 2014. 4.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87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일부개정 2013.12.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8호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37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2014. 8.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04호
일부개정 2013. 8.13. 법률 제12051호	타법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5호	타법개정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29호
일부개정 2014. 3.24. 법률 제12512호	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9호	일부개정 2016. 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93호
일부개정 2013. 8.13. 법률 제12051호	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3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23호	일부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5호	일부개정 2017. 1.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42호
일부개정 2017. 3.21. 법률 제14651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일부개정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75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02호	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일부개정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75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02호	타법개정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75호
일부개정 2018.12.24. 법률 제16075호	일부개정 2018. 3.20. 대통령령 제28709호	일부개정 2018. 3.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11호
일부개정 2019. 8.27. 법률 제16544호	일부개정 2019. 3.12. 대통령령 제29614호	일부개정 2018. 9.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35호
일부개정 2020. 2.11. 법률 제16977호	일부개정 2019. 3.12. 대통령령 제29614호	일부개정 2019. 3.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61호
일부개정 2019. 8.27. 법률 제16544호	일부개정 2020. 3.17. 대통령령 제30532호	타법개정 2019. 8.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91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02호	타법개정 2020. 4.28. 대통령령 제30652호	일부개정 2019. 3.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61호
일부개정 2020. 2.11. 법률 제16977호	일부개정 2020. 3.17. 대통령령 제30532호	일부개정 2020. 8.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42호
일부개정 2020. 2.11. 법률 제16977호	일부개정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6호	타법개정 2020.11.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53호
	일부개정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6호	타법개정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57호
		일부개정 2021. 2.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70호
		일부개정 2020. 8.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42호
		일부개정 2021. 2.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70호
		일부개정 2021. 6.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82호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8. 3. 20., 2020. 2. 11.&gt;</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gt;</p> <p>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p> <p>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p>	<p>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p> <p>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p>	<p>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21.] [중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lt;2020. 8. 21.&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p> <p>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p> <p>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lt;개정 2016. 8. 11., 2019. 3. 12.&gt;</p> <p>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p> <p>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p> <p>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p>	<p>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20. 8. 21.&gt;</p> <p>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p> <p>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p> <p>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p> <p>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p> <p>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p> <p>[본조신설 2018. 9. 21.]</p> <p>[제1조의2에서 이동 &lt;2020. 8. 21.&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4. 12. 9., 2015. 12. 22., 2020. 3. 17., 2020. 4.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li> <li>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li> <li>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li> <li>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li> <li>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p> <p>10.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p> <p>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p> <p>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p> <p>12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p> <p>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p>	<p>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p> <p>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p> <p>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gt;</p> <p>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p> <p>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p> <p>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3. 23.&gt;</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lt;신설 2017. 3. 21.&gt;</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7. 3. 21.&gt;</p> <p>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p>	<p>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lt;개정 2018. 3.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li> <li>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li> </ol> <p>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li> </ol> <p>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ol>	<p>“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lt;신설 2016. 1.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p> <p>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1. 22.&gt;</p> <p>⑥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6. 1. 22.&gt;</p> <p>⑦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t;개정 2016. 1. 22.&gt;</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t;개정 2016. 1. 22.&gt;</p>	<p>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5조 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li> <li>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p> <p>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p>		<p>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7.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li> </ol>		<p>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gt;</p> <p>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p>		<p>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1. 21., 2018. 3. 22.&gt;</p> <p>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p> <p>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p> <p>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p> <p>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실·유기동물</li> <li>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li> </ol>		<p>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p> <p>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삭제 &lt;2020. 8. 21.&gt;</p> <p>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관리 의무를 말한다. &lt;개정 2020. 8. 21.&gt;</p> <p>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7. 3. 21., 2019. 8. 27.&gt;</p> <p>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p> <p>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p> <p>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p>		<p>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신설 2014. 2. 14., 2018.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다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018. 9.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li> <li>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li> <li>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li> </ol> <p>⑧ 법 제8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8.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li> </ol>		<p>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신설 2018. 3. 22., 2018. 9. 21., 2020. 8.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li> <li>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li> </ol> <p>제5조(동물운송자)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4. 8., 2018. 3. 22.&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17. 3. 21.]</p> <p>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3. 8. 13.&gt;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 3. 23., 2013. 8. 13.&gt;</p>		<p>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1. 21.&gt;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 8. 13.&gt;</p> <p>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p>		<p>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gt;</p> <p>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 12.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과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li> <li>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p>		<p>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p> <p>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gt;</p>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2. 14., 2020. 8. 21.&gt;</p> <p>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7. 3., 2019. 3. 21.&gt;</p> <p>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lt;신설 2019. 3. 21.&gt;</p> <p>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9. 3. 21., 2020. 8.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li> <li>2.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li> <li>3.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li> <li>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li> </ol>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p> <p>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lt;개</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정 2017. 7. 3., 2018. 3. 22., 2019.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등록증</li> <li>2. 삭제 &lt;2017. 1. 25.&gt;</li> <li>3.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li> </ol>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7. 7. 3., 2018. 3. 22.&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⑥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lt;개정 2019. 3. 21.&gt;</p> <p>⑦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lt;개정 2019. 3. 21.&gt;</p> <p>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20. 2. 11.&gt;</p> <p>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20. 2. 11.&gt;</p>		<p>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9. 3. 21., 2020. 8.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li> <li>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li> <li>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li> <li>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li> <li>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li> </ol> <p>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12. 31., 2020. 8. 21.&gt;</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lt;신설 2013. 12. 31.&gt;</p> <p>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의 성명</li> <li>2. 소유자의 전화번호</li> <li>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5. 1. 20.&gt;</p> <p>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lt;개정 2021. 2. 10.&gt;</p> <p>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p> <p>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lt;개정 2021. 2. 10.&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lt;개정 2021. 2. 10.&gt;</p> <p>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lt;신설 2021. 2. 10.&gt;</p> <p>[전문개정 2019. 3. 21.]</p> <p>[시행일 : 2022. 2. 11.]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p> <p>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른 것</p>		<p>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li> <li>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게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li> </ol> <p>② 맹견의 소유자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li> <li>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li> </ol> <p>[본조신설 2019. 3. 21.]</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1.]</p> <p>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li> <li>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다. &lt;개정 2021. 2. 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li> <li>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li> <li>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li> <li>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li> </ol>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li> <li>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li> <li>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2. 11.&gt; [본조신설 2018. 3. 20.]</p>	<p>제6조의2(보험의 가입)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p> <p>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p> <p>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p> <p>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p>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p> <p>제12조의5(보험금액) ① 영 제6조의2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p> <p>② 영 제6조의2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0.]</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p> <p>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p> <p>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p> <p>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p> <p>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p> <p>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li> <li>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li> <li>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li> <li>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li> </ol> <p>[본조신설 2018. 3. 20.]</p>	<p>다. 제1호가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p> <p>[본조신설 2021. 2. 9.]</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실·유기동물</li> <li>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li> <li>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li> </ol>		<p>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gt;</p> <p>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p>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7. 3. 21.&gt;</p> <p>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gt;</p> <p>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t;신설 2017. 3. 21.&gt;</p>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p>		<p>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 2020. 8. 21.&gt;</p>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3. 8. 13.&gt;</p>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7. 3. 21.&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p>		<p>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li> <li>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li> <li>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li> <li>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5. 사업계획서</li> </ol> <p>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p>		<p>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3. 21.&gt;</p> <p>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013. 3. 23., 2017. 3. 21.&gt;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p>		<p>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2.&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분양하는 경우</p> <p>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gt;</p> <p>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9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gt;</p> <p>②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p> <p>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lt;개정 2018. 3.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li> <li>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li> <li>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p>		<p>③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9.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li> <li>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li> <li>3.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p> <p>⑤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 제10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lt;개정 2018. 3. 22.&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li> <li>2. 유실·유기동물</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li> <li>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li> </ol>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p> <p>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p> <p>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p> <p>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p> <p>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p> <p>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공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4. 5.&gt;</p>	<p>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p>	<p>제20조(공고)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4. 5., 2017. 3. 21.&gt;</p>	<p>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 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 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 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8 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하 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 4. 5.&gt;</p> <p>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 4. 5.&gt;</p> <p>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p>	<p>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p>	<p>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도지사와</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3. 4. 5.&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2018. 3. 20.&gt;</p>	<p>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p> <p>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 4. 5.,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li> <li>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li> <li>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 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 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 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lt;개정 2013. 4. 5.&gt; ②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 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3. 4. 5.&gt;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 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p>	<p>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 체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 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p>	<p>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2.&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동물실험</p> <p>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li> <li>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li> <li>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0.&gt;</p> <p>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8. 3. 20.&gt;</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p>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 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 3. 23.,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li> <li>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li> </ol>	<p>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2.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li> </ol>	<p>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21. 2. 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때만 해당한다.</li> <li>2.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동물의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li> <li>3. 삭제 &lt;2021. 2. 10.&gt;</li> </ol>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p>	<p>2.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p>	<p>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p> <p>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3. 20.]</p>		<p>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li> <li>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li> <li>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li> </ol> </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1) 과학 관련 교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li> <li>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li> <li>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li> <li>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li> </ol>	<p>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0.]</p> <p>제24조(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lt;개정 2017. 1.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경우</li> <li>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li> <li>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li> <li>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li> </ol> <p>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p>		<p>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간에 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li> <li>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li> <li>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li> </ol>	<p>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li> <li>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20. 3. 17., 2021. 2. 9.&gt;</p> <p>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lt;신설 2021. 2. 9.&gt;</p>	<p>제2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lt;개정 2013. 3. 23., 2019. 3. 21.&gt;</p> <p>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li> <li>2.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p> <p>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p> <p>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2. 9.&gt;</p> <p>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t;개정 2021. 2. 9.&gt;</p> <p>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2. 9.&gt;</p> <p>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p> <p>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p> <p>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p> <p>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p>	<p>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p> <p>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p> <p>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1.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1. 2. 9.&gt;</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 2021. 2. 9.&gt;</p>	<p>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li> <li>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li> </ol> <p>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lt;개정 2017. 1. 25.&gt;</p> <p>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2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li> <li>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li> <li>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li> <li>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li> <li>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p> <p>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lt;개정 2017. 7. 3.&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li> <li>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li> </ol>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p>		<p>제31조(인증의 신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4. 8., 2019. 8.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li> <li>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li> <li>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시하는 행위</p> <p>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li> <li>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li> <li>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32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제31조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고, 별표 6의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p>④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7. 7.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li> <li>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 방법에 따를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p> <p>제34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p> <p>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5장 영업</p> <p>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 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p>		<p>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복지축 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4. 8., 2019. 8.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 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li> <li>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li> <li>3.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li> </ol> <p>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 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 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 32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li> <li>2. 동물판매업</li> <li>3. 동물수입업</li> <li>4. 동물생산업</li> <li>5. 동물전시업</li> <li>6. 동물위탁관리업</li> <li>7. 동물미용업</li> <li>8. 동물운송업</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영업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20. 8. 21.]</p> <p>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 12. 26., 2017. 7. 3., 2018. 3. 22., 2020. 8. 21.,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li> <li>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li> </ol> </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 燥葬)시설"이라 한다]</p> <p>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li> <li>3.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li> <li>4.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li> <li>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li> <li>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li> <li>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 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p> <p>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 12. 26., 2017. 7. 3., 2018. 3. 22., 2020. 8. 21., 2021. 6. 17.&gt;</p> <p>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p> <p>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p> <p>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 화장(火葬) 시설"이라 한다],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 건조장(乾燥葬) 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 수분해장(水分解葬) 시설"이라 한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li> <li>3.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li> <li>4.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li> <li>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li> <li>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li> <li>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li> <li>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li> </ol> <p>[시행일 : 2021. 12. 18.] 제36조제1호나목</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2. 12. 26., 2016. 1. 21., 2018. 3. 22.,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 현황</li> <li>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li> <li>3. 사업계획서</li> <li>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li> <li>5. 삭제 &lt;2016. 1. 21.&gt;</li> <li>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 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li> </ol>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21. 6. 17.&gt;</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2. 12. 26., 2016. 1. 21., 2018. 3. 22.,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 현황</li> <li>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li> <li>3. 사업계획서</li> <li>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li> <li>5. 삭제 &lt;2016. 1. 21.&gt;</li> <li>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li> </ol>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21. 6. 17.&gt;</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2. 18.] 제37조제1항제6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7.&gt;</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lt;개정 2014. 3. 24., 2017. 3. 21., 2018. 12. 24., 2019. 8. 27.&gt;</p> <p>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p> <p>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p>		<p>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li> <li>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li> <li>3. 영업시설</li> <li>4. 영업장의 주소</li> </ol>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p> <p>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p> <p>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p>		<p>한다. &lt;개정 2012. 12. 26., 2017. 1. 25., 2018. 3. 22., 2021. 6. 17.&gt;</p> <p>1. 등록증</p> <p>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lt;신설 2021. 6. 17.&gt;</p> <p>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lt;개정 2021. 6. 17.&gt;</p> <p>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lt;개정 2017. 7. 3., 2018. 3. 22., 2021. 6. 17.&gt;</p> <p>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20. 2. 11.&gt;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p>		<p>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lt;신설 2017. 7. 3., 2021. 6. 17.&gt;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lt;신설 2017. 7. 3.&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구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① 동물생산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다. &lt;개정 2018. 3.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li> <li>2. 인력 현황</li> <li>3. 사업계획서</li> <li>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18. 3. 22.,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li> </ol>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농</p>		<p>2018. 3. 22., 2021. 6. 17.&gt;</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⑥ 제4항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gt;</p> <p>[제목개정 2018. 3. 22.]</p> <p>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7.&gt;</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2014. 3. 24., 2017. 3. 21., 2018. 12. 24., 2019. 8.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li> <li>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li> </ol>		<p>제3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li> <li>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li> <li>3. 영업시설</li> <li>4. 영업장의 주소</li> </ol> <p>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lt;개정 2017. 1. 25., 2018. 3. 22., 2021. 6.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증</li> <li>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li> </ol>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p> <p>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3. 21.]</p> <p>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lt;개정</p>		<p>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허가증”으로 본다. &lt;개정 2021. 6. 17.&gt;</p> <p>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신청”은 “신고”로 본다. &lt;개정 2021. 6. 17.&gt; [제목개정 2018. 3. 22.]</p> <p>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1. 6. 17.&gt;</p> <p>1. 양도·양수의 경우</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017. 3. 21.&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4항 중 “등록”과 제34조제4항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7. 3. 21., 2019. 8. 27.&gt;</p>		<p>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21. 6. 17.&gt;</p> <p>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lt;신설 2021. 6. 17.&gt;</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4항제1호·제4호 및 법 제34조제4항제1호·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1.&gt;</p> <p>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p>		<p>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2., 2021. 6. 17.&gt;</p> <p>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2., 2021. 6. 17.&gt;</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2., 2021. 6. 17.&gt;</p> <p>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lt;개정 2018. 3. 22.&gt;</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p> <p>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p> <p>4. 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p> <p>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p> <p>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p> <p>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2. 11.&gt;</p> <p>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2. 11.&gt;</p> <p>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7. 3. 21.&gt;</p> <p>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7. 3. 21.&gt;</p> <p>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p>		<p>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8. 3.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li> <li>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li> <li>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li> </ol> <p>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수 있다. &lt;개정 2017. 3. 21.&gt;</p> <p>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p>		<p>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p> <p>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교육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교육 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lt;신설 2021. 6. 17.&gt;</p> <p>④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의 방법, 교육 결과의 통지 및 기록의 유지·관리·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lt;신설 2019. 3. 21., 2021. 6. 17.&gt;</p> <p>⑤ 삭제 &lt;2019. 3. 21.&gt;</p> <p>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li> <li>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li> <li>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p>		<p>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lt;개정 2018. 3. 22.&gt;</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목개정 2017. 3. 21.]</p> <p>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p>		<p>제46조(시정명령)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li> <li>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li> <li>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의 장</li> <li>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li> </ol>		<p>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li> <li>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li> <li>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li> <li>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p> <p>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검사 목적</li> <li>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li> <li>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li> <li>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li> <li>5. 제출할 자료</li> </ol> <p>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p>	<p>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3.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li> <li>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li> <li>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li> </ol>	<p>제47조(동물보호감시원의 증표)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8. 3. 20., 2021. 2.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li> <li>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li> <li>3의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한 지도</li> <li>3의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li> <li>3의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li> <li>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li> <li>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p>	<p>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6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p> <p>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41조의2 삭제 &lt;2020. 2. 11.&gt;</p>	<p>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li> <li>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p> <p>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p> <p>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li> <li>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li> <li>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li> <li>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li> </ol> <p>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li> <li>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li> </ol>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li> <li>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li> <li>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li> </ol>	<p>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5조의2 삭제 &lt;2021. 2. 9.&gt;</p>	<p>제48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lt;개정 2013. 12. 31.&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9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lt;개정 2017. 1. 2., 2018. 3. 22., 2020. 11. 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20. 11. 24.&gt;</li> <li>2. 제5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017년 1월 1일</li> <li>3. 제6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2017년 1월 1일</li> <li>4. 삭제 &lt;2020. 11. 24.&gt;</li> <li>5.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li> <li>6.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li> <li>7.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li> <li>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li> </ol>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설치 등: 2017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7년 1월 1일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35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13. 제38조에 따른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4. 제4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 2017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li> <li>2.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li> <li>3.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li> </ol> <p>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1. 22., 2018. 3. 20., 2020. 3. 17., 2021. 2.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li> </ol>	<p>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lt;신설 2020. 11. 24.&gt; [본조신설 2015. 1. 6.]</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li> <li>3.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li> <li>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li> <li>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li> <li>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li> <li>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li> <li>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受理)</li> <li>9. 법 제39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li> <li>10.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수당 지급</li> <li>11.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li> <li>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li> <li>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li> <li>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li> <li>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li> </ol>	<p>(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p> <p>13.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2·제8호·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실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p> <p>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p> <p>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p> <p>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8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8.</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신</p>	<p>6., 2018. 3.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li> <li>3. 삭제 &lt;2016. 1. 22.&gt;</li> <li>4. 삭제 &lt;2016. 1. 22.&gt;</li> <li>5.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 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 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li> </ol> <p>제19조의2 삭제 &lt;2016. 12. 30.&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설 2018. 3. 20., 2020. 2. 11.&gt;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gt;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li> <li>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li> <li>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li> </ol>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한 소유자등</p> <p>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p> <p>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p> <p>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p> <p>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p> <p>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t;개정 2017. 3. 21., 2018. 3. 20.&gt;</p> <p>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3. 21.]</p> <p>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20. 2. 11.&gt;</li> <li>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li> <li>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li> <li>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li> </ol>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20. 3. 17., 2021. 2.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2·제8호·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li> <li>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p> <p>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p> <p>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p> <p>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p> <p>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p> <p>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p> <p>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gt;</p>	<p>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p> <p>3.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p> <p>[전문개정 2018. 3. 20.]</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7. 3. 21.&gt;</li> <li>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li> <li>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li> <li>4. 삭제 &lt;2017. 3. 21.&gt;</li> <li>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li> <li>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li> <li>6. 삭제 &lt;2017. 3. 21.&gt;</li> <li>7. 삭제 &lt;2017. 3. 21.&gt;</li> <li>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li>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li>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li> <li>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li> </ol>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p> <p>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p> <p>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p> <p>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p> <p>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p> <p>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p> <p>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p> <p>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부칙 &lt;제10995호, 2011. 8. 4.&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3613호, 2012. 2. 3.&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및 별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p>	<p>부칙 &lt;제261호, 2012. 2. 21.&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8조·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유기동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24455호, 2013. 3. 23.&gt;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p>	<p>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p> <p>제3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329호, 2012. 12. 26.&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5호, 2013. 3. 23.&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6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 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신고한 자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11690호, 2013. 3. 23.&gt;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생략</p> <p>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p>	<p>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시간판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58호, 2013. 11. 29.&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68호, 2013. 12. 31.&gt;</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79호, 2014. 2. 14.&gt;</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293&gt;까지 생략 &lt;294&gt;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p>	<p>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lt;76&gt;까지 생략 부칙 &lt;제25160호, 2014. 2. 11.&gt;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5532호, 2014. 8. 6.&gt;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87호, 2014. 4. 8.&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104호, 2014. 8. 29.&g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5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9항,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제2항·제7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3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5751호, 2014. 11. 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76&gt;까지 생략 &lt;277&gt;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lt;278&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부칙 &lt;제25835호, 2014. 12. 9.&gt;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p>	<p>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lt;제133호, 2015. 1. 6.&gt; (규제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lt;제193호, 2016. 1. 21.&gt;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37호, 2017. 1. 2.&gt;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lt;295&gt;부터 &lt;710&gt;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lt;제11737호, 2013. 4. 5.&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12051호, 2013. 8. 13.&gt;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12512호, 2014. 3. 24.&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3항제1호</p>	<p>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lt;제25919호, 2014. 12. 30.&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6754호, 2015. 12. 22.&gt;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p>	<p>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lt;제242호, 2017. 1. 25.&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제275호, 2017. 7. 3.&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별표 9 제1호 라목 및 별표 10 제1호자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13023호, 2015. 1. 20.&gt;</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4651호, 2017. 3. 2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p> <p>12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p> <p>④부터 ⑫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lt;제311호, 2018. 3. 22.&gt;</p> <p>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335호, 2018. 9. 21.&gt;</p> <p>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361호, 2019. 3. 21.&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제4조(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lt;제15502호, 2018. 3. 20.&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3조의3,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및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2 및 법률</p>	<p>부칙 &lt;제26925호, 2016. 1. 22.&gt;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7444호, 2016. 8. 11.&gt; (주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호 중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⑦부터 &lt;75&gt;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lt;제27751호, 2016. 12. 30.&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p>	<p>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맹견 소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맹견을 소유한 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30일까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동물보호센터는 2021년 3월 20일까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p> <p>부칙 &lt;제391호, 2019. 8. 26.&gt;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42호, 2020. 8. 21.&gt;</p>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lt;제16075호, 2018. 12. 24.&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4호와 제3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부칙 &lt;제28211호, 2017. 7. 26.&gt;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14&gt;까지 생략</p> <p>&lt;215&gt;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53호, 2020. 11. 24.&gt;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57호, 2020. 12. 1.&gt;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제16544호, 2019. 8. 27.&gt;</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6977호, 2020. 2. 1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8조제2항제3호의2, 제12조제4항·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p>	<p>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lt;216&gt;부터 &lt;388&gt;까지 생략</p> <p>부칙 &lt;제28709호, 2018. 3. 20.&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lt;제29614호, 2019. 3. 12.&gt;</p> <p>이 영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8 제3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로 한다.</p> <p>⑥부터 ⑫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lt;제470호, 2021. 2. 10.&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82호, 2021. 6. 17.&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lt;제30532호, 2020. 3. 17.&gt;</p> <p>이 영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30652호, 2020. 4. 28.&g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p> <p>② 및 ③ 생략</p> <p>제3조 생략</p>	<p>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6조제1호나목, 제37조제1항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2), 별표 10 제2호가목3) 및 5)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li> <li>2. 별표 9 제2호라목2)나)(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바)(2), 같은 호 사목1)마), 같은 목 2)나)(5), 같은 호 아목2)마)부터 아)까지, 같은 목 3) 및 별표 10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li> <li>3. 별표 9 제2호라목1)마)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li> <li>4. 별표 1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li> </ol> <p>제2조(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별표 9 제2호라목1)마), 같은 목 2)</p>

<p>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p>
	<p>부칙 &lt;제31436호, 2021. 2. 9.&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0조제2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나)(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 별표 9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미용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④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시행령 별표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10	20	4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10	20	40
다.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라.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20	40	6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	20	40
바.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	20	40
사.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	10	2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20	30	5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5	7	1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3	100	200	300
다.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4	100	200	300
파.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5	100	200	300
하.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6	100	200	300
거.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7	100	200	300
너.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의2	30	50	100
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30	50	100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30	50	100
어.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30	50	100
저.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	40	60
처.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2호	20	40	60
커.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3호	30	50	100
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4호	20	40	60
퍼.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5호	20	40	60

##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들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들은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들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2. 개별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들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 1)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할 것
  - 2)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할 것
- 나.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 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다. 깔짚을 이용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 마. 돼지의 송곳니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8조제2항 관련)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부여한다.
-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 2) 표시

코드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른 것
  -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른 것
  -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 다. 삭제 <2020. 8. 21.>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9. 3. 21.>

##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

###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해야 한다.

- 1)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 2) 1)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람을 공격하거나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등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할 것.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해야 한다.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가목에 따른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센터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보호조치 장소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도 조례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등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해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2. 10.>

**보험금액**(제12조의5 관련)

**1.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頭蓋腔) 내 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합물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을 말한다)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흉복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아래팔 뼈 중 안쪽에 있는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아래팔 뼈 중 바깥쪽에 있는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 골절과 팔꿈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를 말한다)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를 말한다)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꿈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꿈치뼈[足終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먼쪽 부위[遠位部] 골절 7. 자뼈 몸쪽 부위[近位部]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좌골·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안복사뼈[內踝骨] 또는 바깥복사뼈[外踝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伸展)골절 2. 쇄골 골절 3. 팔꿈관절 탈구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4. 어깨뼈 골절 5. 팔꿈관절 내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6. 코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棘狀突起) 또는 횡돌기(橫突起) 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인대, 근육 등 주위의 연조직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5. 모든 불완전골절(코뼈, 손가락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골절을 말한다)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線狀骨折)로 뼈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 2.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급	8,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반신마비가 된 사람</li> <li>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2급	7,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ol>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ol>
3급	6,4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ol>
4급	5,6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li> </ol>
5급	4,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li> </ol>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p>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p> <p>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p>
6급	4,000만원	<p>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p> <p>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p> <p>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p> <p>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7급	3,200만원	<p>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p> <p>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p> <p>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p>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p>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p> <p>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p>
8급	2,400만원	<p>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p> <p>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점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애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 라) 고양이: 50 × 70 × 60(cm)
  -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8. 26.>

###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 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다. 보호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동물이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라. 보호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또는 해당 보호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해야 하고, 보호동물을 다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바.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참관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2. 10.>

###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

(제23조의2제2호라목 관련)

1. 심의위원회는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 나.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다.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라. 지도 교원이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 마. 동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 바. 동물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수의학적인 방법 또는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장소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동물 해부실습과 지도 교원, 동물 해부실습 방식, 사용 동물의 종(種) 및 마릿수가 모두 같은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부터 2년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학생, 학부모 등의 재심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7. 동물 해부실습 지도 교원은 해부실습이 종료한 후 해당 해부실습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 간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17.>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일반 기준

##### 가. 사육시설 및 환경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관리자의 의무

-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4) 관리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

-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들여오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올 수 있다.
-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가축의 종류별 개별기준

가축의 종류별 인증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3.2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제32조제3항 관련)

1. 검역본부장은 제32조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류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서류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동물의 관리방법,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의 상태 점검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평가 관련 자료 및 사진 등과 함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받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제3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6.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증심사원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은 인증신청인과 관련된 자료와 심사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2.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1.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cm, 세로 60cm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가. 농장명: 세로 10cm(청색)
  -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cm(청색)
  -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cm(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cm
3. 바탕색: 흰색
4.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 가. 제3호가목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 나.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

가. 표시도형



**인 증 기 관**



**Organization Name**

나. 작도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작도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준용한다.

**4. 삭제 <2014.4.8>**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17.>

[시행일 : 2022. 6. 18.] 제2호사목1)마), 제2호사목2)나)(5), 제2호아목2)마), 제2호아목2)바), 제2호아목2)사), 제2호아목2)아)까지, 제2호아목3)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바. 영업장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2. 개별 기준

### 가. 동물장묘업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나)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다)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나. 동물판매업

####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삭제 <2021. 6. 17>

####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동물수입업

-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6) 격리실은 라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

- 1) 일반기준

-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 2) 사육실
-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이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땅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땅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바.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

-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야 한다.
  -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어 것
  -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 것
  -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 것
  - 마)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야 한다.
  -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나 영업장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 것
      - (1) 물을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추어 것
      -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6) 자동차에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 (1) 소·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 것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나 영업장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 것
  - (1) 물을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추어 것
  -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6) 자동차에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 (1) 소·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는 것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를 갖추는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는 것

사)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17.>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늪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 7)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 가) 개·고양이: 2개월 이상
  -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떼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	------------	---------	-------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 ]예 [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등록번호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 7)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다)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 마)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물생산·판매·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과 동물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아)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 10)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 3)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마. 동물전시업자

-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미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17.>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허가) 취소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허가)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38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8. 3. 2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등록사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만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1.>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 ]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후 회수 [ ] 기타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3.>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암 수
			중성화 여 부	생년월(일)
				취득일
				특이사항
신청사유	[ ] 동물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발생일	
	[ ] 동물등록증 훼손		동물등록증 분실장소	
	[ ] 그 밖의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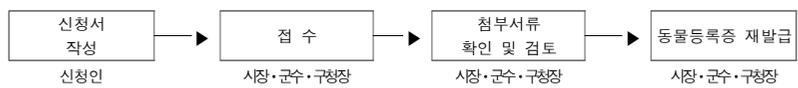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무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22.>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보호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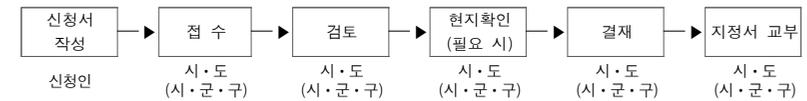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3. 22.>

지정번호 제 호

###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보호대상 동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공고 번호 제 호

###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 구조정보	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기타					
3. 동물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m)		보호동물 사진2(3X4cm)		보호동물 사진3(3X4cm)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년 월 일	[ ] 반환 [ ] 분양 [ ] 기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 ] 폐사 [ ] 안락사	사유	확인자		
	[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 ] 기타				
7. 기타					

210mm×297mm[백상지(15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1.>

### 보호동물 관리대장

연번	신고내역		구조내역		개체정보			보호내역		처리결과		비고					
	신고일	신고자	구조일	구조자	축종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 상태		치치 및 치료	기타	처리일	처리방법	내용
1																	
2																	
3																	
4																	
5																	
6																	
7																	
8																	
9																	
10																	

364mm×257mm[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2.>

비용징수통지서 (O차)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p>「동물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 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b>시·도지사</b> <b>시장·군수·구청장</b></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안내	<p>1. 「유실물법」 제12조·「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않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시·군·구)로 귀속됩니다.</p> <p>2.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p> <p>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p>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앞쪽)

동물실험	명칭
시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동물보호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물실험시행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위원 현황 (총 명)

성 명	전문분야	소속

2. 위원회 개최 횟수 ( 회)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다.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	미승인 건수

210mm×594mm[백상지(80g/m<sup>2</sup>)]

(뒤쪽)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동물 종	정도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합계 (C+D+E)	중별 총계 (B+C+D+E)																																																																																																																																																																																															
		설치류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조류(닭)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기타 조류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과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기타									총계																																																																																																																																																																																														
총계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들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척추동물들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D: 척추동물들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등급 E: 척추동물들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① 항목 1. 의 전문분야의 경우,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기타 전문가(세부영역)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항목 3. 의 경우,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		②조직원(고용인) 수
	③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인증의 구분		
신청내용	⑤축종		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⑦농장소재지	사육시설 : 동	m <sup>2</sup>
		사육규모 :	

「동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수수료 제4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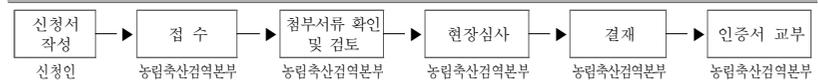
[동의]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 ⑤축종에는 한우·육우·젖소·돼지·육계·산란계·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⑥동물복지 자유방목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려면 "여"에 표시합니다.
-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1.>

인증 번호 제 호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농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증구분	축종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 / 부	
농장소재지		
사육시설	동	m <sup>2</sup>
사육규모		

「동물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1.>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연번	인증 연월일	인증번호	축종	농장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364mm×257mm [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승계를 하는 사람	법인(조직, 농장)명	조직원(고용인)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①법인(조직, 농장)명	②조직원(고용인) 수	
	③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인증번호	⑥축종	
승계내용	인증의 구분	⑦자유방목 기준 축종 여부: 여/부	
	⑧농장소재지	사육시설 : _____ 동 _____ m <sup>2</sup>	사육규모 : _____

⑨승계사유 [ ] 양수 [ ] 상속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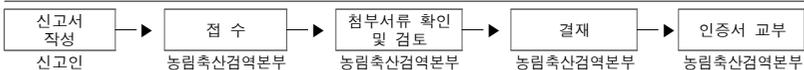
구비서류	1. 승계사항이 적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	---

- [동의]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고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 신고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 ⑥축종에는 한우·육우·젖소·돼지·육계·산란계·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⑦동물복지 자유방목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려면 "예"에 표시합니다.
- ⑧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법인(조직)이 신고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17.>

영업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_____)
영업장의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_____)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 (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전시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위탁관리업 <input type="checkbox"/> 동물마용업 (일반, 자동차 이용) <input type="checkbox"/> 동물운송업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 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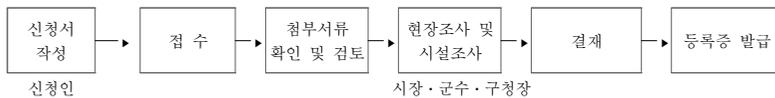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 등록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운영 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6. 17.>

<b>등록번호 제 호</b> [ ] 동물장묘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b>등록증</b>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운송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주소	
대표자	
주소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등록조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동물장묘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 동물운송업 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직인</span>	

210mm×297mm[백상지(150g/m²)]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6. 17.>

###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동물수분해장시설/방안시설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작성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작성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	면적	장례식장	m <sup>2</sup>	동물 화장 시설 / 동물 건조장 시설 / 동물수분해장시설	m <sup>2</sup>	방안시설	m <sup>2</sup>
	화장료/ 건조·멸균분쇄시설/수분해시설	규격 (수량)					
종업원 수			명				
4.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작성자 (직급·성명)		
5. 비고							

210mm×594mm [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3. 22.>

###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 ] 동물전시업 [ ] 동물운송업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경매실	m <sup>2</sup>	전시실/위탁관리실/접수실 /운송차량번호	m <sup>2</sup>			
	격리실	m <sup>2</sup>	준비실/대기실/휴식실	m <sup>2</sup>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 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월일	분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594mm [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17.>

- [ ] 동물장묘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생산업 [ ] 동물운송업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 동물장묘업 [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 동물수입업 [ ] 동물생산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 동물운송업				
재발급 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 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동물장묘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 ] 동물생산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 서류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결제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6. 17.>

- [ ] 동물장묘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생산업 [ ] 동물운송업
-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변경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 동물장묘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전시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 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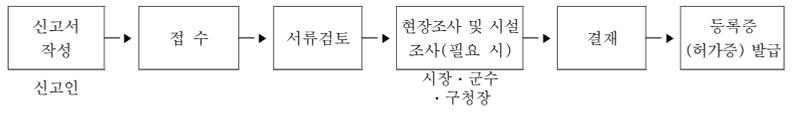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6. 17.>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장묘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생산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전시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위탁관리업 <input type="checkbox"/>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input type="checkbox"/>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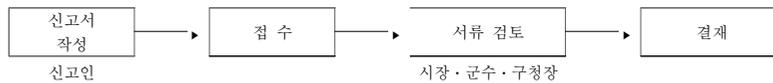
(뒤쪽)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6. 17.>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생산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인력현황(종사자 수)	명	
품종별 사육마리 수	종: 두(암, 수)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소규모 생산업 여부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맹견 사육 여부	예( ), 아니오( )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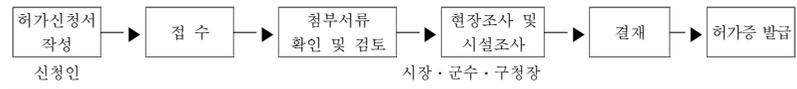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수수료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17.>

허가번호 제 호

동물생산업 허가증

법인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생산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소규모 생산업 여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 [백상지(15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3. 22.>

###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생산업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허가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	m <sup>2</sup>	분만실	m <sup>2</sup>			
	격리실	m <sup>2</sup>	판매실	m <sup>2</sup>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 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 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594mm[백상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17.>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 상속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6. 17.>

동물생산·판매·수입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 기본 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생산업자 기록사항	개체관리번호	출생일	특징(털색 등)						
	판매동물 개체정보	*)판매일			*)판매처	영업자의 명칭(상호) 등록(허가)번호 연락처			
		*)건강상태·진료사항	날짜	질병 또는 건강상태, 처리내역 등					
	어미 동물 정보	개체관리번호	품종	출생년도					
		번식기록	출산횟수						
			출산일	출산마릿수	마리(암 .수 )				
		건강정보	날짜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처리내역 등					
	판매업자·수입업자 기록사항	*) 구입 기록	영업장의 명칭(상호)			*) 판매기록	판매일	판매처	판매자 연락처
			등록(허가)번호			판매 시 동물등록 여부	○ / ×		
			수입국가	*수입업만 해당					
거래기록		연락처							
		수의사 진료사항							
특이사항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								
*) 경매 정보	경매업체			영업등록번호					
	경매일			낙찰자(업체명)					
	수의사	(서명 또는 인)		수의사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150g/m<sup>2</sup>)]

\*)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1. 6. 17.>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 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 (전시업만 해당)	출생일	특징(털색 등)					
건강상태					동물등록 여부	○ / ×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함)			
위탁 기록사항	위탁자 (연락처)				위탁 내용	□ 사육 □ 훈련 □ 보호		
	위탁기간	~			특이 사항			
	기타							

210mm×297mm[백상지(150g/m<sup>2</sup>)]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6. 17.>

### 영업자 실적 보고서

(앞쪽)

1. 영업등록(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주소	(전화 :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장 현황							
동물장묘업	면적	장례식장	m <sup>2</sup>	동물 화장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수분해장 시설	m <sup>2</sup>	방안 시설	m <sup>2</sup>
	화장로/ 건조·멸균 분쇄 시설/ 수분해 시설	규격 (수량)					
동물판매업 (일반 알선·중개)	사육실	m <sup>2</sup>		격리실	m <sup>2</sup>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판매업 (경매 알선·중개)	접수실	m <sup>2</sup>		준비실	m <sup>2</sup>		
	경매실	m <sup>2</sup>		격리실	m <sup>2</sup>		
동물수입업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사육실	m <sup>2</sup>		판매실	m <sup>2</sup>		
동물생산업	격리실	m <sup>2</sup>		-	m <sup>2</sup>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사육실	m <sup>2</sup>		분만실	m <sup>2</sup>		
동물생산업	격리실	m <sup>2</sup>		판매실	m <sup>2</sup>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뒤쪽)

### 3. 영업실적(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구분	동물장묘업 처리 두수			동물판매업 (경매장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개	고양이	기타	추종	품종	판매 두수	추종	품종	수입 두수	수입국	추종	품종	두수	생산 두수	월판매 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4. 비고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덧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 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

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7호, 2016. 3. 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36호, 2017. 4.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검역본부에 소속한 공무원(겸임연구관, 박사후연수생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중 수의과학분야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검역본부의 수의과학분야와 관련된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검역본부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검역본부에 소속한 공무원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1. 동물실험계획 심의·의결 현황
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및 미비점 개선 방안
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 ④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 실험의 지도·점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역본부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사무관 중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다.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
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
6.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7. 검역본부 동물실험관련 정책 검토
8.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또는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검역본부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분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전문심사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전문심사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동물실험계획재승인·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동물실험계획서를 매분기 첫 번째 달의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동물실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③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다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 방법
5. 안락사방법
6.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7.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 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검역본부 내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지침(검역본부 훈령 제27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전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필요시 추가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위원의 제외·회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책임자가 특정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전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전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12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인된 방법에 의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 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의 자료를 실험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16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8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2009-79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예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 2017. 4. 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예규는 2020년 4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제7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구 및 실험 개요

(1-뒷면)

연구목적			
예상성과			
동물실험 대체 연구방법을 검색한 자료 및 검색시 사용한 키워드			
<input type="checkbox"/> MEDLINE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 키워드 ( )			
대체방법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대체법이 있으나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	
동물실험의 범주 (하나만 선택)	<input type="checkbox"/> A.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물 사용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시험 <input type="checkbox"/> B.척추동물물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C.척추동물물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D.척추동물물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어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E.척추동물물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고 마취제나 진통제등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동물실험의 종류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병원성실험 <input type="checkbox"/> 단클론항체생산 <input type="checkbox"/> 항혈청생산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검정 <input type="checkbox"/> 독성실험 <input type="checkbox"/> 단순채혈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사용할 실험동물의 수	(동물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 마리 수 및 총사용 마리 수 기입)		
통계적 근거	(각 실험군의 수, 통계적 근거 설명)		

3. 실험동물

동물종류	계통	성별	품질	주령	마리수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구분없음	<input type="checkbox"/> Germfree <input type="checkbox"/> Gnotobiotic <input type="checkbox"/> SPF <input type="checkbox"/> Conventional		
구입처	모니터링 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업체제공 <input type="checkbox"/> 실험자체공(    항원/항체음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4. 동물실험절차

(2-앞면)

	투여(접종)물질	용량 및 횟수	투여(접종)방법	보정법
실험방법	투여(접종)물질의 특성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위해물질 (재조합DNA 투여등) <input type="checkbox"/> 바이러스 <input type="checkbox"/> 세균 <input type="checkbox"/> 백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		
	투여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			
	투여물질이 환경노출시 미치는 영향			
	시료채취(부위 및 방법)	(채혈의 경우 부위, 양, 횟수, 시기 기입)		
수의학적관리	실험동물의 고통경감 (동물실험의 범주 D, E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input type="checkbox"/> 진정 <input type="checkbox"/> 진통 <input type="checkbox"/> 마취		
	사용마취제 및 용량, 방법	(약물명, 용량, 경로 기입) (항진성성약물은 식약청의 마약류사용허가자격 기입) (근이완제사용시 사용이유 제시)		실시자 ( )
	외과적처치(해당시 작성)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동물실험중 동물의 고통을 종료하기위해 연구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		
사육시설 및 관리	안락사	<input type="checkbox"/> 주사마취제 (약물명:    , 용량:    , 경로:    ) <input type="checkbox"/> 흡입마취제 (약물명:    , 농도:    ) <input type="checkbox"/> 이산화탄소가스(농도:    ) <input type="checkbox"/> 경추탈구 <input type="checkbox"/> 전기충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육시설	<input type="checkbox"/> (    과)실험동물사 <input type="checkbox"/> 해외전염병과 차폐실험실 <input type="checkbox"/> 신종질병연구동 차폐실험실 <input type="checkbox"/> 독성화학과 배리어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실험종료후관리	주거 엔리치먼트 (Enrichment)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설치류의 경우 작은 tube나 기둥, 토기는 나무토막, 돼지이상은 장난감등)		
	실험을 위해 반입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장비	(케이지, 사료, 깔짚 등)		
	실험자를 안전을 위한 보호 물품 및 대책	(글러브, 마스크, 방역복, 장화등)		
	사료-음수-운동 제한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사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음수제한 <input type="checkbox"/> 운동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제한사유:    )		
실험종료후관리	실험동물 사체처리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적용소독제			

<별지 제3호 서식>

###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 1. 동물실험계획 관련사항

접수번호	AEC	평가차수	제 차
기승인번호	AEC	평가일	
과제명			

####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			
		그렇다	보통	아니다	해당 없음
일반사항	· 실험기간의 적절성 · 실험자의 교육이수 및 훈련도와 경험도의 적절성				
동물실험 근거	· 연구목적과 동물실험 필요성의 적합성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Replacement)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의 충분한 검색 및 고려 ·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의 검색				
동물실험의 감소 (Reduction)	· 연구목적과 실험 설계된 동물 수의 일치성 · 정확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실험군 크기 선택 · 실험모델 선정의 적합성(동물계통 및 종류)				
동물실험의 개량 (Refinement)	·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장기실험시 환경 엔리치먼트(Enrichment) 고려 여부 ·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진통·마취제 사용 고려여부 ·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의 적절성				
수의학적 관리	· 진정·진통·마취제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 · 투여(집중)물질의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 · 외과적 처치 및 처치 후 관리의 적절성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실험종료후 관리	· 실험물질 및 실험동물 처리방법의 적절성				
기타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거의 타당성 · 실험물질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 실험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 동물실험시 실험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 3. 종합 심의평가의견

종합평가결과	평가 의견	
<input type="checkbox"/> 원안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제심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평가위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기승인번호	AEC							
과제명 (한글/영문)								
과제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험변경 내용	<input type="checkbox"/> 동물 사용수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동물 종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input type="checkbox"/> 진정·진통·마취 방법 <input type="checkbox"/> 안락사방법 <input type="checkbox"/>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input type="checkbox"/> 그 외 실험방법 등 ( 변경사항 기입 )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동물 사용수								
동물종								
실험기간연장								
진정·진통·마취								
안락사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자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실험방법								
그 외								

<별지 제5호 서식>

### 동물실험계획승인서

#### 1.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육승인번호

#### 2. 동물실험계획서

접수번호	AEC
연구과제명	
실험기간	
실험동물 종류 및 사용 마리 수	

#### 3. 승인

심의일자	
승인일자	
승인번호	AEC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 동물도축세부규정

---



## 동물도축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28호, 2019. 5.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호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제4조(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물 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제6조(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상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
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
3. 쇠클(Shackle)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쇠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쇠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조류의 경우, 쇠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챔버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키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4호, 2013. 3. 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1호, 2013. 3.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77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9. 3.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8호, 2019. 5.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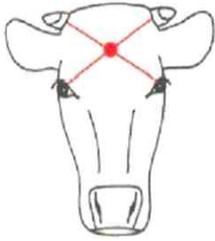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제8조제3항 관련)

1. 소

가. 타격법

- 1)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2. 돼지

가. 타격법

- 1) 눈 바로 위의 중앙부위를 척수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나. 전살법

- 1)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

다. CO<sub>2</sub> 가스법

- 1) 챔버 내에서 돼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 2) 80~90% 농도에서 3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3. 닭

가. 전살법(전기수조)

- 1)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2) 60Hz 싸인과 교류전류 이용 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0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시켜야 한다.
- 3)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되어야 한다.

4. 오리

가. 전살법(전기수조)

- 1)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2) 60Hz 싸인과 교류전류 이용 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3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시켜야 한다.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5호, 2021. 1.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 주소는 [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

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

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키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6년 1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키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키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호, 2014. 1.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7호, 2020. 2.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 2021. 1. 27.>

이 고시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



##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3호, 2017. 8.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3항제3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전용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이후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포함)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파일 형태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집필진. 이하 같다)는 학계 및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동물보호·동물복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2. 교육장소(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전용 인터넷사이트)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6. 결장 등에 대한 조치 사항
  7.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8. 사이버교육의 경우, 본인인증 및 학습진행상황 확인 방안
  9.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매분기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사항을 기록한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06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6월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159호, 2012. 10. 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10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3-1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21호, 2016. 3. 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3호, 2017. 8.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 4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 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활동) ①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호, 2008. 3.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49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32호, 2010. 3. 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84호, 2013. 10. 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316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감시원으로 본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명예감시원의 수당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1호, 2014. 3. 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감시원으로 본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명예감시원의 수당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1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

위촉기관	인원(명)
서울	450
세종	10
부산	80
대구	50
인천	50
광주	30
대전	30
울산	20
경기	210
강원	30
충북	30
충남	40
전북	40
전남	50
경북	60
경남	70
제주	10
합계	1,260

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시·군·구별로 위촉인원을 조정하되 가급적 동물보호 복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input type="checkbox"/> 추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E-mail)	
④소속 단체 또는 직장명	(직위)	
⑤추천 또는 신청사유 (주요 동물보호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개인 신청자의 경우	본인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 예감시원을 희망하기에 신청합니다. 20 .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단체장 이 추천하 는 경우	위 사람을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추천기관 : ○○○○○○ 단체장 (인)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위촉 기관명	성명 (위촉일자)	활동일	업무수행 실적	업무수행 시간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업무수행 실적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번호(아래 참고)를 기재

- ※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별지 제5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

시도명	위촉 인원 (명)	업무수행실적(건)					②번 처리결과(건)		
		①	②	③	④	계	고발	기타	계

- ※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 ②번 처리결과의 기타란에는 신고건 조사결과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 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단순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경우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

위촉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개설은행	계좌번호	활동일수 (일)	지급액 (원)

일반용지 60g/cm<sup>2</sup>(재활용품)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2016. 3. 4.,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각각 설치 또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제2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질병관리, 반환·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관리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 센터의 총괄운영, 관리
2. 수의사 : 질병 예방·치료·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3. 사무직 종사자 : 센터의 세부운영, 예·결산, 규칙 제17조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
4. 유실·유기동물 구조원 :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응급조치·운송 업무
5. 보호·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동물에 대한 사료·물 등의 급여 및 위생·관리 업무

제5조(시설기준) 센터의 시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1년 이상 보관하고, 해당 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모든 서식 서류는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간 실적이 200두 이하인 센터
2.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중복 수행하여 예산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자체 직영 센터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년도 기준 유실·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 마리 이상인 센터는 규칙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봉사활동 시간은 센터의 운영시간에 한하며,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센터의 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동물의 포획·구조 및 운송

제9조(동물의 포획·구조 방법) ① 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구조하여야 한다.

②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많은 부위를 조준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③ 단순 생포 시에는 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인근주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성별·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

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① 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실시할 것
2.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3. 운송 직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 할 것
4.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

#### 제4장 동물의 보호조치

제11조(센터 입소 절차) ① 센터의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확인
2.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
3. 예산 범위 내에서 파보, 디스토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 실시.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

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용 시, 다음 각 호의 개체 또는 개체군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어린 개체, 임신·분만 개체
2. 소유자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즉시 이동 예정인 개체
3. 상해를 입는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개체
4.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5. 공격성이 심한 개체 등 센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체

제12조(위생관리) ① 개체의 털에 묻은 이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체 분류 후 격리실로 이동하여 목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 내에서는 위생복, 고무장화, 고무장갑 등 개인 위생장비를 갖추어 소독제 등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동물수용시설을 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때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소독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세정제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최대한 씻어내는 등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용 발판을 동선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 발생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한다.

⑥ 보호조치 중인 동물과 사람에게 부작용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한다.

제13조(사료 및 물 제공) ① 센터 운영자는 별표 1의 사료급여 기준을 참고하여 사료를 개체별 용기에 1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언제든지 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 물은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 개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장 질병 관리

제14조(예방접종 및 구충)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광견병(Rabis)
2. Distemper(CDV)
3. Adenovirus-2(CAV-2/hepatitis)
4. Pavovirus(CPV)

5. Parainfluenza(CPIV)

6. Leptospira

③ 8주령 이상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광견병, 범백혈구 감소증 및 허피스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상태 예찰)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찰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제16조(치료우선 순위) 센터 운영자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제17조(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체와 분변 등을 관리한 후 손을 자주 씻을 것
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 조치할 것
3. 보정용 글러브, 그물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4. 사용한 가운, 케이지, 마스크 등을 자주 세척·소독할 것
5. 질병매개체인 해충을 구제(驅除)하고, 청소·소독을 철저히 할 것

6.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의심 개체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
7. 과상풍 예방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은 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것
- ② 센터 운영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근무처에 게시하고 직원,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제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 제18조(동물의 반환) ① 센터 운영자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2조에 따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①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분양희망자의 신분 확인
  2. 분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분양신청서 작성
  3. 분양 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분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4. 동물의 건강상태·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기증
  6.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 1인당 3마리(연간 10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고 1차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분양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센터의 운영자는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후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⑤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장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①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순위.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순위.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순위.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순위.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순위.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체로서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① 수의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④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사료 급여 기준(제14조 관련)

1.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임신, 수유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보호센터 [ ]예산서 [ ]결산서

항목	예산		결산	
	산출근거 (단가×수량)	금액(A)	실집행액(B)	집행잔액 (B-A)
<b>수입</b>				
-유기동물보호관리비				
-길고양이 TNR 사업				
-기부금 등				
<b>지출</b>				
-인건비	급여	진료수의사		
		행정		
		미용, 간호		
	복지후생비	구조		
		위생관리		
		교통비		
		급식비		
		상여금		
		4대보험(사업자분)		
		사무용품		
-일반운영비	운영비	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냉난방비		
		화재보험		
		차량보험		
		자동차세		
		정화조청소		
		임대료		
		업무추진비	회의비	
-보호관리비	의료비	유지보수비		
		의약품		
		의료소모품		
		검사 kit		
	관리비	자산취득비(장비)		
		소독제		
		사료(개/건식)		
		사료(고양이/건식)		
		사료(자견/자묘)		
		관리용품		
구조비	자산취득비			
	사체처리, 의료물폐기			
-에비비 및 기타	유류구입			
	구조차량 유지보수비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발급 번호 제 호

### 봉사활동 확인서

성명	인적사항	* 학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학교                      학년                      반                      번			
	생년월일				
기간	년            월            일	--:--	~	--:--	(    )일 (    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보호동물 운동시키기 <input type="checkbox"/> 보호동물 미용 <input type="checkbox"/> 보호동물 목욕시키기 <input type="checkbox"/> 청소 <input type="checkbox"/> 정리정돈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평가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극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량				

위 사실대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보호센터 대표)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교 / 학년/ 반/ 번호	활동 시간		확인자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여부	발급일	비고
					시작	종료				
1										
2										
3										
4										
5										
6										
7										
8										
9										
10										

364mm×257mm(보존용지 70g/㎡)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반환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사육장소					
반환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연령	모색
	등록번호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동물등록을 하겠습니다. 5. 외출 시 인식표·목줄 착용을 하여 동물을 분실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동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동물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서명)

인도자 성명 : (서명)

210mm×297mm(보존용지 120g/m<sup>2</sup>)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분양 설문지

- 어떤 동물을 분양받고 싶습니까?  
 자견  성견  자묘  성묘  기타
- 이전에 동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 왜 동물을 분양받고 싶습니까?  
 반려동물로서 같이 지내고 싶어서  고양이나 쥐를 쫓기 위해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  사냥을 위해서  아이들이 원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키우는 동물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  
 기타
- 최근에 다른 동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품종: 나이: 중성화 유무:
- 최근 5년 사이에 몇 마리의 동물을 키우셨습니까? 개: 고양이:  
 이들에게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택  아파트  원룸  기타
- 집은 본인 소유입니까?  네  아니오
-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수: 자녀수: 아이들 나이:
-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양에 대한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오
- 분양은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오
- 집에 방문하여 분양된 동물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오
- 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이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364mm×257mm(보존용지 70g/m<sup>2</sup>)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분양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사육장소					
분양 신청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연령	모색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분양 받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분양 받은 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분양 받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분양 받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의 분양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분양을 신청하니 분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210mm×297mm(보존용지 120g/m<sup>2</sup>)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분양 확인서

인수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		
	사육장소					
분양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연령	모색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분양 받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분양 받은 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분양 받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분양 받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에 기재된 준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물의 분양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서명)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210mm×297mm(보존용지 120g/m<sup>2</sup>)

##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

---



##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도축장”이라 함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 처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작업장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로 구분된다
- 나. “차상대기”라 함은 동물이 운송되어 도축장에 도착하였을 때 계류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동물을 하차하지 않고 차량 적재함 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가변식 하차대”라 함은 동물을 하차 시 하차대를 운송차량의 적재함 높이에 맞추어 유압식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한 하차대를 말하고 “고정식 하차대”라 함은 가변식 하차대와 같은 설비없이 고정된 바닥으로 된 하차대를 말한다.
- 라. “전살”이라 함은 동물의 뇌와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기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마.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란 동물의 도축에서 축산물의 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 바. “가림막”이라 함은 동물운송차량의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를 덮는 구조물을 말한다.
- 사. “현수”이라 함은 소, 돼지, 닭이 쇠클에 채워져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 아. “DOA(Dead On Arrival)”란 도축장에 도착 시 이미 사망한 동물을 말한다

### 2. 도축장

가. 소

구분	구비요건
기본 사항	(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li> <li>- 도축설비 점검사항</li> <li>-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내용)</li> <li>-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운송두수)</li> <li>- 인증평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li> <li>-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li> <li>-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li> </ul> ② 최근 3개월간 운영현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CCTV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li> <li>-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li> <li>-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 가능한 곳</li> <li>-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li> </ul> 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학대하여서는 안된다 ①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 ②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 ③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부위(눈, 귀, 코, 항문, 생식기 등)를 뽕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 ④ 보행이 어려운 동물에 대해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
하차	(1)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①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 ②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출 것 (3)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4)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가변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경우 실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바닥을 높여서 차량에 따른 하차대 높이를 다양화하고 하차대 높이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 (5) 동물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는 26° 이하여야 한다. (6)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7)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로가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8)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류	(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 (2)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 되어야 한다. (3)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 (5)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 (6)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31~50Lux)를 유지하여야 한다. (7) 계류장은 도축처리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류장의 계류밀도는 마리당 4.99m <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8)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① 진로 방해 요소 : 이동통로 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 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 (9) 계류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인접 칸의 동물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야 한다. (10)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져야 한다. ①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한다. ②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4~10h이다.
기절	(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 (2) 소에 충격법을 실시하는 경우 적절한 기절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충격부위 :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 방향으로 충격 (3)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된다. ① 의식회복 판별법 : 눈 깜빡임, 발작, 소리지름 ②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한다. (4) 최초 기절 실패 시 재기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휴대용 전살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축산물 가공	(1)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나. 돼지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 사항	(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여야 한다. -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 도축설비 점검사항

구 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내용)</li> <li>-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운송두수)</li> <li>- 인증농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li> <li>-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li> <li>-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li> </ul> <p>② 최근 3개월간 운영현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CCTV 설치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li> <li>-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li> <li>-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 가능한 곳</li> <li>-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li> </ul> <p>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p>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한다</p> <p>(4)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학대하여서는 안된다</p> <p>①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p> <p>②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p> <p>③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부위(눈, 귀, 코, 항문, 생식기 등)를 뽕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p> <p>④ 보행이 어려운 동물에 대해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p>
하차	<p>(1)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2)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p>

구 분	구 비 요 건
	<p>갖춰져있어야 한다.</p> <p>①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p> <p>②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출 것</p> <p>(3)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p> <p>(4)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① 가변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경우 실제 운용하여야 한다.</p> <p>② 고정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바닥을 높여서 차량에 따른 하차대 높이를 다양화하고 하차대 높이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p> <p>(5) 동물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는 20° 이하여야 한다.</p> <p>(6)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p> <p>(7)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로가 구비되어있어야 한다.</p> <p>(8)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도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계류	<p>(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p> <p>(2)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 되어야 한다.</p> <p>(3)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4)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p> <p>(5)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p> <p>(6)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31~50Lux)를 유지하여야 한다.</p> <p>(7) 계류장은 도축처리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p>

구 분	구 비 요 건
	<p>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류장의 계류밀도는 마리당 0.83m<sup>3</sup> 이상이어야 한다</p> <p>(8)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p> <p>① 진로 방해 요소 : 이동통로 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 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p> <p>(9) 계류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인접 칸의 동물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야 한다.</p> <p>(10)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져야 한다.</p> <p>①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한다.</p> <p>②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4~10h이다.</p>
기절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p> <p>(2) 돼지를 전살하는 경우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① 전류 : 최소 1.25A 이상</p> <p>② 통전시간 : 2~4초</p> <p>③ 통전부위 : 뇌부위 또는 뇌와 가슴부위</p> <p>(3) 돼지를 CO<sub>2</sub> 가스 기절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권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li> <li>- 농도 : 80~90%</li> <li>- 노출시간은 모든 돼지가 기절상태가 되도록 충분해야하고 최대시간은 180초 이하</li> </ul> <p>(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 눈 깜빡임, 발작, 소리지름</p> <p>②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한다.</p> <p>(5) 최초 기절 실패 시 재기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휴대용 전살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방혈	<p>(1) 돼지를 전살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2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2) 돼지를 CO<sub>2</sub> 가스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6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돼지의 방혈 시작 후 최소 30초 이후에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p>
축산물 가공	<p>(1)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p>

다. 닭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 사항	<p>(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li> <li>- 도축설비 점검사항</li> <li>-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내용)</li> <li>-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운송두수)</li> <li>- 인증농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li> <li>-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li> <li>-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li> </ul> <p>② 최근 3개월간의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CCTV 설치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차대 : 하차 시 낙하 등에 의한 부상여부 확인이 가능한 곳</li> </ul>

구분	구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장소 : 동물을 쇠를 이용하여 거꾸로 매다는 곳</li> <li>- 기절장소 : 전기수조, 가스실 부근</li> <li>-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li> </ul> <p>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p>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p> <p>(4)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서는 안된다</p> <p>①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물이드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p> <p>②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p>
포획	<p>(1) 포획작업자는 상차작업 전 도축장 동물복지 담당자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동물취급자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① 포획 시 상태가 좋지 않은 닭은 상차하지 말아야 한다</p> <p>② 포획 시 목, 날개 죽지를 잡아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p> <p>③ 생체중량이 1.5kg이상인 닭은 한손에 5마리 이상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p> <p>(2) 수송용기의 적재 밀도는 57kg/m<sup>3</sup>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p>
계류·투입 시설	<p>(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p> <p>(2) 닭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송풍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3) 동절기에는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난방장치를 운영해야 한다</p> <p>(4)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져야 한다.</p> <p>①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한다.</p> <p>②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4~10h이다.</p> <p>(5)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p> <p>(6) 닭을 투입시킬 때 낙하로 인한 골절이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낙하 높이를 최소화 등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7) DOAs 수를 기록관리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① 작업장 DOAs 비율이 0.5% 이상 발생 시 원인조사, 개선책 마련 시행,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p> <p>② DOAs 수거장소에는 인도적 처리 등을 실시한 사망한 개체만을 보관한다</p>	
기절방법	현수	<p>(1) 쇠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양다리가 매달려 있어야 한다</p> <p>(2) 현수작업장에서 전기수조까지 이동하는 닭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p> <p>(3) 닭이 쇠칼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 이동시간은 90초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60초이내를 권장한다</p>
	전살법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p> <p>(2)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① 전기수조에 입수 전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p> <p>② 전류 : 60Hz 사인파 교류전류 최소100mA 이상</p> <p>③ 통전시간 : 최소 4초 이상</p> <p>④ 전기수조에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p> <p>(3) 닭이 머리부터 입수하여 기절하기 전 날개등 부위가 먼저 입수되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조를 설계하여야 한다</p> <p>(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판별법 : 긴장성발작, 무호흡, 눈깜빡임 등</li> <li>- 부수적 판별법 : 안검, 각막반사 등</li> </ul> </p> <p>(5) 최초 기절 실패 시 인도적 도살 실시하여야 한다</p>
	기절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p> <p>(2) 기체농도가 기절농도에 이르기전에 육계를 챔버에 집어넣어서는 안된다</p> <p>(3) 닭을 CO<sub>2</sub> 가스 기절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권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li> </ul> </p>
가스법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p> <p>(2) 기체농도가 기절농도에 이르기전에 육계를 챔버에 집어넣어서는 안된다</p> <p>(3) 닭을 CO<sub>2</sub> 가스 기절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권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li> </ul> </p>	

구 분	구 비 요 건
현수	- CO <sub>2</sub> 농도 80% 일 경우 최소 1분으로 권장한다 (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식회복 판별법 : - 주요 판별법 : 날개퍼덕임, 무호흡 등 - 부수적 판별법 : 안검, 각막반사 등
	(1) 쇠클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두손을 이용하여 두 다리를 현수하여야한다 (2) 현수작업장에서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혈	(1)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살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1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 챔버를 나온 후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3) 닭이 방혈 시작 후 최소 90초 경과 이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구 분	구 비 요 건
	(7) 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 설비	(1) 동물 운송차량 및 적재함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측면부 가림막은 운송 중 동물이 밖을 볼 수 없게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4) 적재함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하며, 복층구조의 경우 상층 적재함도 해당된다. (5)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적합한 소재 및 구조로 되어 있는가? (6) 적재함은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 위 자유공간을 제공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차량적재 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 3. 운송차량

#### 가. 포유류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 사항	(1) 동물운송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차량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3) 적재함 면적이 10m <sup>2</sup> 를 초과하는 경우(적재중량 3.5톤급 이상) 칸막이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4) 동물운송자는 동물복지 지정도축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동물운송차량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운송소요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가금류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 사항	(1) 동물운송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차량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3) 동물운송자는 동물복지 지정도축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은 닭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차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5)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동물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량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 설비	(1) 동물 운송차량 및 적재함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운송차량은 기후 및 온도변화에 따라 닭이 쾌적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3)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적재함 바닥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 운용하여야한다
	(5) 적재함 구조물 틈에 닭의 날개나 다리 등이 끼이지 않아야 한다
	(6) 적재함 넓이는 수송 중 모든 닭이 서로 올라타는 개체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적재함의 높이는 닭이 앉은 자세에서 자유롭게 목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이 이어야 한다
	(8) 차량적재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 4. 지정 평가표

##### 가. 도축장

##### 1) 소

#####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17)	담당자 지정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Y: 지정 N: 미지정
	교육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수하였는가? Y: 이수 N: 미이수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Y: 실시 * 교육대상 : 도축장 동물 취급자, 동물복지 운송자 * 동물취급자에 교육내용 전달여부 : 일시, 사진, 참석자 서명, 교육내용 등 기록확인 N: 미실시
	모니터링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가? Y: 실시 *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확인 N: 미실시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 CCTV 설치위치 적정성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 가능한 곳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 * 모든 CCTV 영상을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여부	Y: 적정  N: 미적정
	작업장 녹화 기록을 최소 30일 분량 이상 보관 중인가?	Y: 보관 N: 미보관
	운영현황 제출	최근 3개월간의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하였는가? Y: 제출 N: 미제출
학대행위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가 *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 행위 *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 *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부위(눈,귀,코,항문,생식기 등)를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 * 보행이 어려운 동물에 대해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	Y: 적정  N: 미적정
	기록 (17)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 기록사항 (최근 3개월 이상)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1: 기록
도축설비 점검		1: 기록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여부) * cctv지적사항 모니터링 교정 기록관리 여부확인		10: 기록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차량번호,축종,출발지,운송두수) 복지농장 출하 시 지정차량 운송여부		1: 기록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3: 기록 1: 기록

□ 하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하차 시설 (25)	추락 방지벽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있는가?	Y: 설치 N: 미설치
		경사 유도로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로가 구비되어있는가?
	건강 상태 확인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Y: 확인 N: 미확인
	차상계류 (5)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4~5: 설치 1~3: 일부 설치 0: 미설치
		자발적 하차유도 (5)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 *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출 것
	하차대 구조 (5)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가변식or고정식)를 제공하고 실제 운용하는가? * 가변식 하차대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운용여부 확인 * 바닥을 높여서 하차대 높이를 다양화하는 경우도 허용 * 여러 높이의 고정식 하차대를 제공하더라도 하차대 높이에 맞지 않는 차량을 하차유도하는 경우 확인	4~5: 가변식 1~3: 고정식 (차량적재함높이에 맞는 여러높이의 하차대 제공) 0: 고정식 (단일높이의 하차대 제공)
		하차대 각도 (5)	소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가 기준에 적합한가? * 소 : ± 26° 이하
	하차대 바닥면 (5)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는가? * 충분 : 바닥면 재질이 마찰력이 있고 표면이 요철구조 * 보통 : 바닥면 재질이 마찰력이 있으나 표면이 요철구조 아님 * 부족 : 바닥면이 미끄럽고 표면이 요철구조 아님	4~5: 충분 1~3: 보통 0: 부족

□ 계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계류 시설 (25)	실내 계류장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인가?	Y: 예 N: 아니오
		급수기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 되고 있는가?
	분무 샤워기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Y: 정상작동 N: 작동안함
	환기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있는가? * 암모니아 농도 25ppm이하	Y: 적합 N: 부적합
		격리용 우리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고 있는가?
	밝기 (5)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는가?	5: 31~50 Lux 3: 21 ~ 30 Lux 또는 51 Lux 이상 0: 20 Lux 이하
			계류밀도
	이동통로 환경 (10)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 이동통로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	6~10: 없음 1~5: 일부 있음 0: 다수 있음
			계류장 칸막이 (5)
	바닥면상태 (5)	계류장 등 작업장 바닥은 동물들의 미끄러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소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100마리 평가 미끄러짐(S):3% 넘어짐(F 몸이바닥에 닿음):1%	5: S3%, F1% 이하 0: S3%, F1% 초과
계류 시 준수 사항 (10)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지는가? * 계류시간 : 기질을 실시하는 동물의 계근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측정

□ 기절 및 추가점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기절 시 준수 사항 (3)	총격법	총격법을 실시하는 경우 축종별 기절방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소 :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총격	Y: 적합 N: 부적합
		기구점검 (3)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있으며 수시 점검되고 있는가? (관련기록 확인)
추가 점수 (5)	HACCP (5)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획득하였는가?	5: 상
			2: 중
			0: 하
합계		※관정 기준 1. N 항목이 하나 이상일 경우 부적합 판정 2. 합계 점수가 전체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총점80점)	

2) 돼지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17)	담당자 지정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Y: 지정 N: 미지정
		교육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수하였는가?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교육대상 : 도축장 동물 취급자, 동물복지 운송자 * 동물취급자에 교육내용 전달여부 : 일시, 사진, 참석자 서명, 교육내용 등 기록확인		Y: 실시 N: 미실시
	모니터링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가? *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확인 * CCTV 설치위치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운영현황 제출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가능한 곳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 가능한 곳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 가능한 곳 * 모니터링 결과 : 문제점 확인 및 교정여부 기록 등 작업장 녹화 기록을 최소 30일 분량 이상 보관 중인가?	N: 미설치 Y: 보관 N: 미보관
	최근 3개월간의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하였는가?	Y: 제출 N: 미제출
학대행위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가 *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 행위 *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 *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부위(눈,귀,코,항문,생식기 등)를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 * 보행이 어려운 동물에 대해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	Y: 적정 N: 미적정
기록 (17)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 기록사항 (최근 3개월 이상)	Y: 실시 N: 미실시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1: 기록
	도축설비 점검	1: 기록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여부)	10: 기록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차량번호,축종,출발지,운송두수) 복지농장 출하 시 지정차량 운송여부	1: 기록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사진,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3: 기록 1: 기록

□ 하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하차 시설 (30)	추락 방지벽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있는가? Y: 설치 N: 미설치
	경사 유도도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도가 구비되어있는가? Y: 구비 N: 미구비
	건강 상태 확인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Y: 확인 N: 미확인
	차상계류 (5)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4~5: 설치 1~3: 일부 설치 0: 미설치
	자발적 하차유도 (10)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 갖춰져있는가? *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 *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출 것 6~10: 모두 설치 1~5: 일부 설치 0: 미설치
	하차대 구조 (5)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가변식or고정식)를 제공하고 실제 운용하는가? * 가변식 하차대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운용여부 확인 * 바닥을 높여서 하차대 높이를 다양화하는 경우 허용 * 여러 높이의 고정식 하차대를 제공하더라도 하차대 높이에 맞지 않는 차량을 하차유도하는 경우 확인 4~5: 가변식 1~3: 고정식 (차량적재함높이에 맞는 여러높이의 하차대 제공) 0: 고정식 (단일높이의 하차대 제공)
	하차대 각도 (5)	돼지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가 기준에 적합한가? * 돼지 : ± 20° 이하 5: ± 15° 이하 3: ± 16~20° 0: ± 21° 이상
	하차대 바닥면 (5)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는가? * 충분 : 바닥면 재질이 마찰력이 있고 표면이 요철구조 * 보통 : 바닥면 재질이 마찰력이 있으나 표면이 요철구조 아님 * 부족 : 바닥면이 미끄럽고 표면이 요철구조 아님 4~5: 충분 1~3: 보통 0: 부족

□ 계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계류 시설 (30)	실내 계류장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인가? Y: 예 N: 아니오
	급수기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 되고 있는가? Y: 정상작동 N: 작동안함
	분무 샤워기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Y: 정상작동 N: 작동안함
	환기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있는가? * 암모니아 농도 25ppm이하 Y: 적합 N: 부적합
	격리용 우리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고 있는가? Y: 운용 N: 미운용
	밝기 (5)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는가? 4~5: 31~50 Lux 1~3: 21 ~ 30 Lux 또는 51 Lux 이상 0: 20 Lux 이하
	계류밀도	계류장은 도축처리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하여,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가? * 계류밀도는 마리당 0.83㎡ 이상 Y: 적합 N: 부적합
	이동통로 환경 (10)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 이동통로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 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 6~10: 없음 1~5: 일부 있음 0: 다수 있음
	계류장 칸막이 (5)	계류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인접 칸의 동물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있는가? 4~5: 완전 차단 1~3: 일부 차단 0: 미차단
	바닥면상태 (5)	계류장 등 작업장 바닥은 동물들의 미끄러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소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100마리 평가 미끄러짐(S):3%이하 넘어짐(F 몸이바닥에 닿음):1%이하 5:S3%, F1% 이하 0:S3%,F1% 초과
계류 시 준수 사항 (10)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지는가? * 계류시간 :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계근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측정 6~10: 4~10h 1~5: 1~5: 2~4h미만, 10h 초과 0: 2h이내 도축	

□ 기절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기절 시 준수 사항 (3)	전살법	전살하는 경우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전류 : 최소 1.25A 이상 * 통전시간 : 2~4초 * 통전부위 : 뇌부위 또는 뇌와 가슴부위	Y: 적합 N: 부적합
		CO <sub>2</sub> 가스법은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 권장사항 -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 - 농도 : 80~90% - 노출시간은 모든 돼지가 기절상태가 되도록 충분해야하고 최대시간은 180초 이하	Y: 적합 N: 부적합
	미기절 개체 방혈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는가? * 현장 확인 시 10두 평가 * 의식회복 판별법 : 눈 깜빡임, 발작, 소리지름 *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	Y: 없음 N: 있음
		재기절 방안	최초 기절 실패 시 재기절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구체적 방안 : 휴대용 전살기 등
	기구점검 (3)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있으며 수시 점검되고 있는가? (관련기록 확인)	3: 매일
			1: 2~7일 0: 미점검

□ 방혈 및 추가점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방혈 (10)	방혈 시작시간 (5)	돼지를 전살법으로 기절 후 방혈은 신속히 실시되는가? * 현장확인 시 10두 평가	5: 15초 이내 4: 16~20초 3: 20초 초과 1두
			N: 20초 초과 2두 이상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돼지를 가스법으로 기절 후 방혈은 신속히 실시되는가? * 현장확인 시 10두 평가	5: 50초 이내 4: 51~60초 3: 60초 초과 1두 N: 60초 초과 2두 이상
		방혈 진행시간 (5) 돼지의 방혈 시작 후 적정시간 이후에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는가? * 현장 확인 시 10두 평가
추가점수 (5)	HACCP (5)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획득하였는가?	5: 상 2: 중 0: 하
합계	※판정 기준 1. N 항목이 하나 이상일 경우 부적합 판정 2. 합계 점수가 전체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총점100점)	

3) 닭

□ 기본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17)	담당자 지정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 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Y: 지정 N: 미지정
	교육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수하였는가? 동물복지 담당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교육대상 : 도축장 동물 취급자, 동물복지 운송자 * 동물취급자에 교육내용 전달여부 : 일시, 사진, 참석자 서명, 교육내용 등 기록확인	Y: 이수 N: 미이수 Y: 실시 N: 미실시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모니터링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가? *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확인 * CCTV 설치위치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 현수장소 : 동물을 쇠를 이용하여 거꾸로 매다는 곳 기절장소 : 전기수조, 가스실 부근 방혈대 : 의식이 있는 동물의 방혈실시 여부를 확인 가능한 곳 * 모니터링 결과 : 문제점 확인 및 교정여부 기록 등	Y: 설치 N: 미설치
	작업장 녹화 기록을 최소 30일 분량 이상 보관 중인가?	Y: 보관 N: 미보관
운영 현황 제출	최근 3개월간의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하였는가?	Y: 제출 N: 미제출
강압적 몰이	작업장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는가? *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 행위 *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지르는 행위	Y: 미사용 N: 사용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하고 있는가 관리하는가? * 기록사항 (최근 3개월 이상)	Y: 실시 N: 미실시
기록 (17)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1: 기록
	도축설비 점검	1: 기록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여부)	10: 기록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차량번호,축종,출발지,운송두수) 복지농장 출하 시 지정차량 운송여부	1: 기록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	3: 기록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1: 기록

□ 포획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포획	교육 포획작업자는 상차작업 전 도축장 동물복지 담당자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동물취급자교육을 받았는가? * 이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 행위금지 * 작업장에서 발로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행위 금지 * 생체중량이 1.5kg이상인 닭은 한손에 5마리 이상 운반 금지	Y: 이수 N: 미이수
	적재밀도 수송용기의 적재밀도는 57kg/m³를 초과하는가 ?	Y: 이하 N: 초과

□ 계류 및 투입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계류·투입 시설 (30)	건강 상태 확인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Y: 확인 N: 미확인	
	실내 계류장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인가?	Y: 예 N: 아니오	
	조명 계류장 조명은 조도가 낮거나 청색계열이어야 한다	Y: 적합 N: 부적합	
	분무 송풍장치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송풍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Y: 정상작동 N: 작동안함	
	환기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있는가? * 암모니아 농도 25ppm이하	Y: 적합 N: 부적합	
	투입 (10) 닭을 투입시킬 때 낙하로 인한 골절이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낙하높이 최소화 등 주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낙하 시 충격 완화장치 설치여부 등 확인	6~10:양호 1~5:보통 0:불량	
	조도 (5)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는가?	5: 5 Lux 이하 3: 6~10 Lux 0: 10 Lux 이상	
	계류시간 (10)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지는가? * 계류시간 :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계근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측정	10: 4~10h 5: 2~4h미만, 10h 초과 0: 2h이내 도축	
	사계관리 (5)	작업장 DOAs 비율이 0.5% 이상 발생 시 원인조사, 개선책 마련 시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5 기록관리 0: 미기록
		DOAs 수거장소에 살아있는 닭이 같이 존재하지 않는가?	Y: 적합 N: 부적합

□ 현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현수작업 (20)	현수시간 답을 쇠클에 걸어서 기절하기까지 이동시간 기준 초과여부	Y: 90초 이하 N: 90초 초과
	밝기 (10) 쇠클작업실에서 전기수조까지 이동로에서 낮은 조도의 조명 또는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는가	낮은 조도 또는 푸른색계열:6~10 푸른색이외 조명:1~5
	현수 (10) 쇠클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양다리가 매달려 있는가? * 현장확인 시 양다리 현수가 아닌 경우 200수 평가	10 : 0수 5: 2수이하 N: 3수이상

□ 기절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기절 방법 등(8)	미기절 개체 방혈	답이 머리부터 입수하여 기절하기 전 날개등 부위가 먼저 입수되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조를 설계하여야한다	Y: 적합 N: 부적합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는가? * 현장 확인 시 200수 평가 * 의식회복 판별법 : 전살법 : 긴장성발작, 무호흡, 눈깜빡임, 안검, 각막반사 등 가스법 : 날개피떡임, 무호흡, 안검각막반사, 눈깜빡임 등	Y: 4수 이하 N: 4수 초과
		신속한 방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목 절단이 이루어지는가? * 현장 확인 시 200수 평가 * 경동맥 미절단 마리수 : 4수 이하 관리	Y: 4수 이하 N: 4수 초과
	기절 방법	전살법 (5) 전살하는 경우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전류 : 최소100mA 이상 * 통전시간 : 최소 4초 이상 * 전기수조에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 여부	5: 충족 0: 미흡
		가스법 (5) CO <sub>2</sub> 가스법은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 권장사항 - 챔버 내 적정 공간 확보 - CO <sub>2</sub> 농도 80% 일 경우 최소 1분으로 권장한다	5: 충족 0: 미흡
	기구 점검(3)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 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고 있는가? (관련기록 확인)	3: 매일 1: 2~7 0: 미점검

□ 방혈 및 추가점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방혈시 준수 사항 (10)	방혈 시작시간 (5) 답을 전살법으로 기절 후 방혈은 신속히 실시되는가? * 현장확인 시 200수 평가	5: 5초 이내 3: 6~10초 1: 10초 초과 1두 N: 10초 초과 2두 이상
		답을 가스법으로 기절 후 방혈은 신속히 실시되는가? * 현장확인 시 200수 평가
	방혈 진행시간 (5) 답의 방혈 시작 후 적정시간 경과 이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가? * 현장 확인 시 200수 평가	5: 90초 이상 3 : 90초 이하 1두 이하 N : 90이하1두 초과
기타 (10)	날개 부상 (5) 기절 전 후에 날개가 탈구되거나 골절된 개체는 얼마나 되는가? * 현장확인 시 200수 평가	5:6수이하 3:6~10수미만 0:10수이상
	다리 부상 (5) 탕박 후 다리 골절 개체는 얼마나 되는가? * 현장확인 시 200수 평가	5:없음 3:2수 0:3수이상
가공 처리시 준수 사항 (5)	축산물 혼합 방지 (5) 동물복지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혼합을 방지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운용하는가?	5: 운용 0: 미운용
추가 점수 (5)	HACCP (5)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획득 하였는가?	5: 상 2: 중 0: 하
합계	※판정 기준 1. N 항목이 하나 이상일 경우 부적합 판정 2. 합계 점수가 전체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총점100점)	

나. 동물운송차량

1) 소, 돼지

□ 기본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차량등록 된 동물운송차량인가? (차량등록시스템 확인)	Y: 등록 N: 미등록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는가?	Y: 예 N: 아니오
	적재함 면적이 10m <sup>2</sup> 를 초과하는 경우(적재중량 3.5톤급 이상) 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가?	Y: 설치 N: 미설치
	동물운송자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Y: 이수 N: 미이수
	동물운송차량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운송소요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Y: 준수 N: 미준수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예 N: 아니오
	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 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량 내에 비치하였는가?	Y: 미치 N: 미비치

□ 점수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차량 설비 등	청소 용이 (5)	4~5: 용이(모든 구조물에 접근가능) 1~3: 보통(일부 구조물 접근 불가능) 0: 어려움(적재함내 접근 불가능)
	가림막 (10)	6~10: 상부 및 측면 모두 설치 1~5: 상부 또는 측면 중 일부 설치 0: 가림막 미설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측면부 가림막 높이 (5)	측면부 가림막은 운송 중 동물이 밖을 볼 수 없게 설치되어있는가?	5: 볼 수 없음
		0: 볼 수 있음
적재함 밀폐여부 (5)	적재함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가? *복층구조의 경우 상층 적재함도 포함	4~5: 완전 밀폐
		1~3: 일부 유출 0: 밀폐시설 무
미끄러짐 방지 (10)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적합한 소재 및 구조로 되어있는가?	6~10: 전후 좌우 미끄러짐 모두 방지
		1~5: 일부 미끄러짐 방지 0: 미끄러짐 미방지
머리 위 자유공간 (5)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 위 자유공간이 제공되는가?	4~5: 충분 (머리를 든 상태보다 높음)
		1~3: 보통 (머리를 들지 않은 상태보다 높음) 0: 좁음 (머리위 자유공간 없음)
환기구 구조 (10)	차량적재 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로 되어있는가?	6~10: 전면 및 측면 환기 모두 제공
		1~5: 전면 또는 측면 환기 만 제공 0: 환기 미제공
추가 점수	충격 방지	운송 중 충격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있는가? 3: 무진동 차량 0: 무진동 차량 아님
	소음 방지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차량 바닥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인가? 3: 발굽소리 흡수 0: 발굽소리 미흡수
합계	※관정 기준 1. N 항목이 1개 이상 일 경우 부적합 관정 2. 합계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관정(총점50점)	

2) 닭

기본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기본항목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차량등록 된 동물운송차량인가? (차량등록시스템 확인)	Y: 등록 N: 미등록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는가?	Y: 예 N: 아니오
	동물운송자는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Y: 예 N: 아니오
	동물 운송 적재밀도는 57kg/m <sup>3</sup> 를 초과하지 않는가 ?	Y: 적합 N: 초과
	적재함은 닭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차하는 구조인가?	Y: 아니오 N: 예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예 N: 아니오
	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1호 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량 내에 비치하였는가?	Y: 비치 N: 미비치

점수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차량 설비 등	청소 상태 (5)	동물 운송차량 및 적재함은 청소와 소독 상태가 양호한가?	4~5: 양호 1~3: 보통 0: 불량	
		온도 대응 장치 (5)	운송차량은 기후 및 온도변화에 따라 닭이 쾌적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하는가?	4~5: 적합 1~3: 보통 0: 미설치
			가림막 (5)	겨울철 외부 온도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였는가?
	분변 등 유출방지 (5)			적재함 바닥은 분변이나 기타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되어있는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기본항목	끼임방지 (5)	적재함 구조물 틈에 닭의 날개나 다리 등이 끼이지 않는가?	4~5: 양호 1~3: 보통 0: 불량	
		수송공간 넓이 (5)	운송되는 동물이 서로 올라탐 없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제공되는가?	4~5: 충분 {안정된자세취함} 1~3: 보통 0: 좁음 (서로 올라탐)
			수송공간 높이 (5)	적재함의 높이는 닭이 앉은 자세에서 자유롭게 목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이인가?
	환기구조 (5)	차량적재 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로 되어있는가?		4~5: 전면 및 측면 환기 모두 제공 1~3: 전면 또는 측면 환기 만 제공 0: 환기 미제공
추가 점수			충격 방지 (5)	운송 중 충격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합계	※판정 기준 1. N 항목이 1개 이상 일 경우 부적합 판정 2. 합계 점수가 총점의 80%일 경우 부적합 판정(총점40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0호, 2018. 7. 3.,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1-1, 별표 1-2, 별표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제5조(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제9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 제4장 출입·검사 등

제10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검사 등) ① 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6.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 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칙 <제2014-8호, 2014. 4. 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7년 4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5호, 2014. 12. 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7년 12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서 이미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는 [별표1-1] 1. 나. 2., 준수사

항 (2), 사육밀도 (4), [별표1-2]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 이미 설치된 다단구조 물은 [별표1-1] 사육시설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은 [별표1-2] 사육공간 (4) ②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38호, 2016. 1.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00호, 2016. 11. 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4호, 2018. 2. 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0호, 2018. 7. 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1 제4호 방목장시설란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시행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수정 (2019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째의 12월 31일)

[별표 1-1]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산란계”라 함은 부화목적이 아닌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암탉을 말한다.
- 나. “닭”이라 함은 산란계와 산란계와 함께 사육하는 수탉을 말한다.
- 다. “산란 장소”라 함은 닭이 계란을 낳는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 라. “깔짚”이라 함은 모래목욕 등 닭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짚, 톱밥, 모래, 쌀겨 등의 물질을 말한다.
- 마. “혜”라 함은 계사 내에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등의 막대를 말한다.
- 바. “슬랫(slat) 구조물”이라 함은 계사 바닥 보다 높고 천공성 바닥으로 이루어져 아래로 분변이 모아지는 1단의 구조물을 말한다.
- 사. “다단(多段) 구조물”이라 함은 계사 바닥 보다 높고 천공성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혜, 급이기, 급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폐기계란 관리현황 ⑥ 점등 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질병예방 프로그램 ⑩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⑪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 ⑫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닭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닭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② 닭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다리, 발, 발톱, 뺨, 고기수염,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계란 생산 수준,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구분	구비요건
	<p>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지 확인한다.</p> <p>(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이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p> <p>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닭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p>
건강관리	<p>(1)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p> <p>(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붉은 진드기로 인한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3)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한다.</p> <p>(4) 닭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p> <p>(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급여	<p>(1) 모든 닭은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p>

구분	구비요건
	<p>(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3)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닭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p> <p>(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p> <p>(6) 닭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7)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계를 할 경우에는 도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p> <p>(8)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이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선형 급이기는 닭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의 급이공간이 할당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선형 급이기가 서로 평행하게 설치될 경우, 급이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한다.</p> <p>④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닭이 급이기를 해 대용으로 사용하여 사료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이 급이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롤러 바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9) 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닭이 굵은 모래(6.35~8.0mm 권장)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급수	<p>(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p> <p>(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상수도 급수 시 면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 (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p> <p>(3)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수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되어야 한다.</p> <p>④ 급수기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p> <p>⑤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p>
준수사항	<p>(1)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p> <p>(2) 농장내에서의 부리다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카니발리즘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적외선 방법을 이용하여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하거나 이 방법으로 부리다듬기를 실시한 농장 등에서 입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p> <p>(3) (2)에도 불구하고 응급한 경우에는 부화 후 24시간 이후에도 수의사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부리다듬기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① 부리다듬기는 숙련된 사람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지혈을 하여야 한다.</p> <p>③ 10일령 이상 된 닭의 부리다듬기는 긴급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허용된다.</p> <p>④ 관리자는 부리다듬기를 시행 후 한달동안 닭의 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부리다듬기를 한 경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 및 부리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p> <p>(4)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쫄기나 카니발리즘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p> <p>(5)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입식하여서는 안 된다.</p> <p>(6)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2개월 이상을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인도적 도태	<p>(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닭은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p> <p>(2)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p> <p>①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p>

구분	구비요건
	② 목의 탈구 ③ CO <sub>2</sub> 가스법(CO <sub>2</sub> 가스 농도 40% 이하 또는 비활성가스 혼합 사용 권장) (3) 닭이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1)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된다. 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워야 하며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구분	구비요건
	③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3) 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화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닭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화 역할을 하는 유사 시설도 포함한다.) 또한 다른 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일부 화는 슬랫 구조물 또는 다른 화 보다 더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화의 굵기는 직경 3~6cm(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고 폭이 약 4cm인 사각형 모양의 화를 권장한다), 화와 화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닭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최소 25~40cm 위에 화를 설치하고, 화의 높이는 바닥에서 최대 1m를 넘지 않게 하여 닭이 화에서 뛰어내릴 때 골절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화는 높은 단에 있는 닭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폭 4c3m 내외로 닭이 발로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 슬랫에 포함되어 있고, 높이 40cm 이상의 슬랫구조물은 총 필요한 화의 80% 까지 화 역할을 하는 유사시설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닭 1마리 당 필요한 슬랫 바닥 면적은 최소 460cm <sup>2</sup> 이상이다. ⑤ 화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깔짚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구분	구비요건
	<p>(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한다.</p> <p>②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주어야 하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④ 사용한 깔짚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효 등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⑤ 닭에게 산란 장소 적응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깔짚 깔린 바닥에 대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p> <p>(5) 계사 내에 다단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p> <p>① 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p> <p>② 다단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하며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는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자가 닭에 대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통로시설을 설치할 것</li> <li>2.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직접 이동거리가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간 단을 제공할 것</li> </ol>

구분	구비요건
	<p>③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는 최소 0.5m 이상 최대 1m 이하이어야 한다.(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 까지 측정)</p> <p>④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여야 한다.</p> <p>⑤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⑥ 관리자가 다단구조물을 밟지 않고 각 단에 있는 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6) 계사 내에 슬랫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배설물 제거 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냄새를 제거 처리를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사육밀도	<p>(1)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화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p> <p>(3)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한다.(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p> <p>(4)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이고,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7마리 이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환경	<p>(1) 계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li>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한다.</li> <li>③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ul> <p>(2) 계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li> <li>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1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li> <li>③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li> </ul> <p>(3) 계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닭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li> <li>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인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li> <li>③ CO<sub>2</sub>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li> </ul> <p>(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닭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ul>

구 분	구 비 요 건
자동화·기계화 설비	<p>(5) 계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li> <li>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li> </ul>
	<p>(1) 닭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p> <p>(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p> <p>(3) 설비의 결함 시 닭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 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li> <li>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li> <li>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li> </ul> <p>(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소독	<p>(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2) 닭을 입식하기 전에는 계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p> <p>(3)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p> <p>(5) 계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p>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방목장 시설]</b></p> <p>(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p> <p>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 정하는 특별방역기간, 또는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5)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긴 경우 3주 이내에 방목을 하여야 하고, 21~24주령 전에 방목을 시작하여야 한다</p> <p>(6)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p> <p>(7)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p> <p>(8)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p> <p>(9)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p> <p>(10)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11)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p> <p>(12) 계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방목장에 설치된 산란장소가 아닌 곳에 산란된 계란은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해서는 안된다.</p>

5. 인증 평가표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수의사처방전 없음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 사양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의무 (12)	기록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하되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2.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4. 사료 및 물 섭취량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1점 처리) 5.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폐기계란 관리현황 6. 점등 시간 7.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8. 청소 및 소독내용 9.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10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대비계획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가?	1~2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닭의 건강상태 등 점검 (15)	점검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1~5 N : 기록 없음
	조치	1~5 N : 미조치
건강관리	질병예방 프로그램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급이 (15)	격리	Y: 있음 N: 없음
	사료	4~5: 사료품질 양호, 자유급이
		2~3: 사료품질 양호, 제한급이
	0~1: 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기록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3~5: 기록 양호	
		1~2: 기록 미흡 :기록 없음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이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선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 급이기 사이 간격 : 최소 60cm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설치		
모래	소화 및 산관과정을 돕기 위해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가?(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모래 제공 현황 기록)	Y: 이용 N: 이용 불가	
		Y	
급수 (5)	급수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N: 심한 오염/제한 급수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Y N: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대책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수기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수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니플형과 컵형 갯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	0~2: 심한오염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설치	
준수 사항 (5)	신체 절단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닭이 없는가? (* 절단 부위와 마리수 기록)	Y: 없음 N: 있음
	부리 다듬기	부리다듬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5: 미시행 3~4: 적절 0~2: 부적절
	강제환우	강제 환우를 하지 않는가? (*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Y: 미시행 N: 시행
인도적 도태(5)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가?(* 도태 방법 기록 및 실제 도태를 실시하는 인력과 면담 실시)	0~5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30)	사육시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는가? (* 사육 형태 기록)	Y N: 지속적 감금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N : 일부라도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움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 보호 장치 없음	
산란장소	산란장소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개별 산란상 :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 - 산란 장소 :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	Y: 적합 N: 부적합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운가?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이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4~5: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움 2~3: 외풍이 있거나 안이 어둡지 않음 0~1: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바닥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가?	4~5: 왕겨, 볏짚 등이 충분함 2~3: 왕겨, 볏짚 등이 불충분함 0~1: 왕겨, 볏짚 등 없음, 바닥이 전혀 안락하지 않음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가?	3~5: 청소 상태 양호 0~2: 청소 상태 불량	
	쾌	쾌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슬랫구조물 80% 인정 가능) - 굵기 : 직경 3~6cm - 쾌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 - 벽으로 부터의 거리 : 20cm 이상 - 높이 : 최소 40(25)cm~최대 1m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깔짚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이 깔짚으로 덮여 있는가?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Y N: 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다단 구조물 (* 다단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다단구조물의 기준은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최대 4단 이하 -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관리자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 설치 및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중간 단 설치 여부 -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 : 0.5m 이상~1m 이하 (* 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까지 측정)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고 있는가?	Y N: 배설물 제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설물 제거안함
	슬랫구조물	슬랫 구조물에 배설물 제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주기적으로 냄새를 제거 처리를 하고 있는가 Y: 설치, 냄새 제거 처리 N: 미설치, 냄새제거처리 안함
사육밀도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수탉의 마릿수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산란계 15마리당 수컷 1마리 비율로 산정) - 바닥면적 m <sup>2</sup> 당 성계 9마리 이하 - 다단구조물 :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7마리 이하	Y: 적합 N: 부적합
사육환경 (8)	조명시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기록을 확인하여 계절별 점등시간 기록)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인공조명이 없을 경우 3점으로 평가)	3: 단계적/점진적 방식 조명 0: 일반조명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조명도	조명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가? - 조명도 : 최소 1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 CO <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편감을 느끼는가?	0~5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계사 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 단열/보온시설이 있거나 필요없음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소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Y: 양호	
	자동화·기계화 설비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대체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전기시설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5)	소독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3:정기적 실시 1~2: 비정기적 실시 0: 미실시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2: 고정 소독기 설치 1: 소독 실시 0:소독 미실시	
가족분뇨 처리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닭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깃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깃털이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 발톱,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전체적으로 발과 발톱,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함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닭이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닭은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2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높이 : 35cm 이상 -너비 : 40cm 이상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차양시설/쉼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방목장 환경	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Y
		N: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거의 없거나 물빠짐이 매우 불량
계분 오염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Y :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
		N: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큼
합 계	* 환경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환경	-

[별표 1-2]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사료조”라 함은 돼지에게 사료 또는 물을 제공하는 먹이통을 말한다.
- 나. “군사사육”이라 함은 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스톨”이라 함은 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 가. 돼지의 관리 방법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자돈, 육성돈, 비육돈, 임신모돈, 종모돈 등) 및 돈사 내부면적(휴식공간 별도 표시)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⑤ 돈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구 분	구 비 요 건
	⑥ 청소 및 소독내용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 ⑨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⑩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⑪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⑫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걱정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관리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등에 참여하여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돼지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돼지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돼지를 다루거나 점검하여야 한다. ② 무리에서 따돌림, 빠르거나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 부진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돼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돼지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3) 점검이 끝나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돼지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
건강관리	(1) 관리자는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살모넬라·대장균 등에 의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 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 ③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④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⑤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3) 관리자는 돼지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동물관리	(1) 돼지의 꼬리, 귀, 다리 또는 기타 신체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끄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돼지를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된다. ① 수의학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혈액채취 및 치료 ② 특정 사료의 급여

구분	구비요건
	<p>③ 표식, 세척 및 체중측정</p> <p>④ 축사 내 청소</p> <p>⑤ 인공수정</p> <p>⑥ 운송을 위한 대기</p> <p>(3) 돼지는 기존 무리와 새로운 무리가 섞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무리 구성원의 변화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p> <p>(4) 무리 내 경산돈과 후보돈 사이에 싸움이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5) 돼지들에게 외상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싸울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이나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p> <p>(6)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p> <p>① 먹을 것을 찾아 코로 파헤치고 발로 긁고 씹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짚, 나무조각, 톱밥, 가죽 끈 등 적합한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p> <p>② 다른 돼지의 꼬리, 옆구리, 귀, 음문 등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씹거나 입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흥미있는 보조물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p> <p>(7) 농장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낯선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시켜야 한다.</p>
급이	<p>(1) 모든 돼지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시 제외)</p> <p>(2) 사료나 물을 먹기 어려운 돼지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3)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p>

구분	구비요건
	<p>(4)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여야 한다.</p> <p>(5)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이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제한 급이를 할 경우,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어깨넓이의 1.1배 이상)</p> <p>③ 무제한 급이를 할 경우, 1개의 급이공간(1마리가 사료를 먹을 때 필요한 공간)당 돼지 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p> <p>-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없는 건식 급이기 : 최대 6마리</p> <p>- 칸막이가 있는 급이기 : 최대 10마리</p> <p>- 습식 급이기 : 최대 14마리</p> <p>④ 습식 급이기에는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p> <p>⑤ 전자식 급이기는 적절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p>
급수	<p>(1)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돼지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p> <p>(3)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수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1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③ 사료조에 물을 담아 제공할 경우 사료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체중, kg</th> <th>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th> </tr> </thead> <tbody> <tr> <td>&lt; 25</td> <td>100</td> </tr> <tr> <td>25~40</td> <td>84</td> </tr> <tr> <td>&gt; 40</td> <td>67</td> </tr> </tbody> </table> <p>④ 급수기의 유속은 사육단계별로 돼지가 필요한 수분섭취량을 충족시킬수 있어야 한다.</p> <p>⑤ 급수기가 같이 있는 급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돼지 10마리당 1개 급수공간).</p> <p>⑥ 사육단계별 니플형 급수기 유속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단계</th> <th>유속 (ml/min)</th> </tr> </thead> <tbody> <tr> <td>이유까지</td> <td>300</td> </tr> <tr> <td>~ 20kg</td> <td>500~1000</td> </tr> <tr> <td>20~40kg</td> <td>1000~1500</td> </tr> <tr> <td>100kg까지</td> <td>1000~1500</td> </tr> <tr> <td>미경산돈 및 임신돈</td> <td>2000</td> </tr> <tr> <td>수유 분만돈</td> <td>2000</td> </tr> <tr> <td>옹돈</td> <td>2000</td> </tr> </tbody> </table>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67	사육단계	유속 (ml/min)	이유까지	300	~ 20kg	500~1000	20~40kg	1000~1500	100kg까지	1000~1500	미경산돈 및 임신돈	2000	수유 분만돈	2000	옹돈	2000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67																								
사육단계	유속 (ml/min)																								
이유까지	300																								
~ 20kg	500~1000																								
20~40kg	1000~1500																								
100kg까지	1000~1500																								
미경산돈 및 임신돈	2000																								
수유 분만돈	2000																								
옹돈	2000																								
준수사항	<p>(1) 자돈은 생후 28일 이전에 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① 모돈이나 자돈의 건강과 복지에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하는 경우</p> <p>② 모돈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완전히 비어있고 내부의 청소 및 소독상태가 완벽한 자돈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최대 7일 빠르게(21일령 이상) 이유할 수 있다.</p>																								

구분	구비요건
	<p>(2) 돼지의 단미는 금지한다. 다만 꼬리물기 피해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① 단미시술을 할 경우 꼬리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길이만 자르되 꼬리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p> <p>② 수의사가 서명한 관련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설의 꼬리물기 피해상황(발생 일자, 피해 돼지의 수, 발생 빈도, 피해 사진 등)</li> <li>- 꼬리물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단미시술 이외의 방법 및 결과</li> <li>- 단미시술 방법 및 사용 장비</li> <li>- 꼬리물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li> </ul> <p>(3)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스톨 내 감금사육은 금지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p> <p>(4)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는 금지하며, 모돈의 복지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삭만 허용된다.</p> <p>① 수의사 또는 숙련된 자가 송곳니 연삭을 실시하여야 하며 송곳니의 날카로운 부위만 제거해야 한다.</p> <p>②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하고 병든 자돈에 한하여 생후 3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p> <p>(5) 비외과적 방법을 이용하여 웅취를 제거하거나 웅취가 안나는 품종을 이용하는 등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① 외과적 거세를 할 경우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생후 7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거세 후 자돈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염증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p> <p>② 생후 7일 이후에는 수의사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다.</p> <p>(6) 이표(또는 자돈의 이각), 마킹, 문신은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① 이각은 한 쪽 귀에만 실시할 수 있다. (7)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농장에서 돼지(옹돈, 후보돈 제외)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입식하여야 한다.
도태	(1)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돼지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는 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숙련된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도태는 허용한다. ① 4주령 이하의 자돈의 경우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 ② 가축총(captive bolt stunner),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한 기절 후 즉시 방혈 (3) 사체를 처리하게 전에 돼지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육시설 및 환경

구분	구비요건
사육시설	(1) 돈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돈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를 설계·관리해야 하며 해충, 기생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2) 분만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분만실은 모돈이 편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뻗어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하며,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분만실은 모돈과 자돈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 ③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모돈을 분만실로 옮겨서는 안된다. 다만 분만실이 항상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격리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수의 격리실을 갖추고 격리 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②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깔려있어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 (4)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	(1)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휴식공간 면적, 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10 이하</td> <td>0.1</td> <td>0.15</td> </tr> <tr> <td>10~20 미만</td> <td>0.13</td> <td>0.2</td> </tr> <tr> <td>20~30 미만</td> <td>0.2</td> <td>0.3</td> </tr> <tr> <td>30~60 미만</td> <td>0.36</td> <td>0.55</td> </tr> <tr> <td>60 이상</td> <td>0.66</td> <td>1.0</td> </tr> </tbody> </table>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구 분	구 비 요 건												
	<p>① 배설물 청소는 2회/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공간은 벽, 층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p> <p>③ 단,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의 면적을 소요면적의 33%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p> <p>(2)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30~60 미만</td> <td>0.8</td> </tr> <tr> <td>60 이상</td> <td>1.3</td> </tr> </tbody> </table> <p>① 배설물 청소 및 깔짚 보충·교체를 1회/3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사육단계별 권장 온도 등 참고, 이하 같음)되는 경우에는 60kg 이상의 최소 소요면적을 1.0m<sup>2</sup>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3)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30~60 미만</td> <td>1.4</td> </tr> <tr> <td>60 이상</td> <td>1.6</td> </tr> </tbody> </table> <p>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p>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0.8	60 이상	1.3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1.4	60 이상	1.6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0.8												
60 이상	1.3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1.4												
60 이상	1.6												

구 분	구 비 요 건												
	<p>(4)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최소 휴식공간 면적, 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후보돈</td> <td>0.92</td> <td>2.3</td> </tr> <tr> <td>임신돈</td> <td>1.3</td> <td>3.0</td> </tr> <tr> <td>옹돈</td> <td>-</td> <td>6.8</td> </tr> </tbody> </table> <p>① 단,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에는 임신돈 3.5m<sup>2</sup>, 후보돈 2.5m<sup>2</sup>, 옹돈 7.5m<sup>2</sup> 이상의 소요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돈의 최소 소요면적을 2.6m<sup>2</sup>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돈방 당 사육규모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 까지 소요면적을 감할 수 있다.</p> <p>(5) 휴식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된다.</p> <p>②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보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의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p> <p>③ ②에도 불구하고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물관리 (6)에 해당하는 보조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가능한 휴식공간의 바닥은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⑤ 돼지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p>	구 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후보돈	0.92	2.3	임신돈	1.3	3.0	옹돈	-	6.8
구 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후보돈	0.92	2.3											
임신돈	1.3	3.0											
옹돈	-	6.8											

구 분	구 비 요 건
	<p>(6)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li> <li>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li> <li>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li> <li>④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li> </ul>
사육환경	<p>(1) 돈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돈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li> <li>② 조명도는 최소 4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li> </ul> <p>(2) 돈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높은 습도·응결·외풍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li> <li>②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사람이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li> <li>③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li> </ul> <p>(3) 돈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② 송풍팬, 분무시설 등 돼지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 시 실행하여야 한다.</li> <li>③ 사육단계별 권장 온도는 다음과 같다.</li> </ul>

구 분	구 비 요 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육단계</th> <th>적정온도, °C</th> </tr> </thead> <tbody> <tr> <td>임신돈, 수유 분만돈</td> <td>15~20</td> </tr> <tr> <td>분만 72시간 이내 포유자돈</td> <td>25~28</td> </tr> <tr> <td>분만 72시간 이후 포유자돈</td> <td>20~22</td> </tr> <tr> <td>이유 초기</td> <td>첫 주 28°C, 매주 2°C씩 감소</td> </tr> <tr> <td>이유 후기</td> <td>20~22</td> </tr> <tr> <td>비육돈</td> <td>15~18</td> </tr> </tbody> </table>	사육단계	적정온도, °C	임신돈, 수유 분만돈	15~20	분만 72시간 이내 포유자돈	25~28	분만 72시간 이후 포유자돈	20~22	이유 초기	첫 주 28°C, 매주 2°C씩 감소	이유 후기	20~22	비육돈	15~18
사육단계	적정온도, °C														
임신돈, 수유 분만돈	15~20														
분만 72시간 이내 포유자돈	25~28														
분만 72시간 이후 포유자돈	20~22														
이유 초기	첫 주 28°C, 매주 2°C씩 감소														
이유 후기	20~22														
비육돈	15~18														
	<p>(4) 돈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해야 한다.</li> </ul>														
자동화·기계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돼지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li> <li>(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li> <li>(3) 설비의 결함 시 돼지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li>(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돼지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② 적합하게 절연 및 접지해야 한다.</li> <li>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li> </ul> </li> </ul>														

구 분	구 비 요 건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소독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돼지를 입식하기 전에 돈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돈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돈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인증평가표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인증기준과 다른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돈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수의사 처방전 없음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를 입식하였는가? (* 다른 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한 경우에만 평가, 종돈·후보돈 제외)	Y: 인증농장 N: 일반농장

돼지의 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의무 (10)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 2.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자돈, 육성돈, 비육돈, 임신모돈, 종모돈 등) 및 돈사 내부면적(휴식공간 별도 표시)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4.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5. 돈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6. 청소 및 소독내용 7.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8. 질병예방 프로그램 9.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10.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11.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12.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10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대비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대비계획이 작성된 서류 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이력제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한가? (*관련 서류 확인) Y: 가능 N: 불가능
돼지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5)	점검	관리자가 돼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돼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돼지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1~5 N: 기록 없음
	조치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돼지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돼지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미조치
건강 관리 (5)	질병예방 프로그램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질병예방 계획 서류 확인) - 살모넬라대장균 등에 의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 -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는가?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Y: 격리, 치료 N: 격리, 치료없이 방치
	건강검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가? (* 수의사 서명 등 수의사 정기 검진여부를 서류로 확인) 4~5: 정기검진, 질병예방 철저 3: 양호 1~2: 비정기점검 0: 정기검진 안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동물 관리 (5)	보조물	질, 나무조각, 톱밥, 가축 끈 등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 안할 경우 수의사 서명 및 사유서를 확인하여 인정될 경우 3점으로 평가) 4~5: 보조물 수 충분, 형태 적절 3: 양호 1~2: 미흡 N: 제공 안함
		사료
급이 (10)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상태 기록) 4~5: 오염 없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
급수 (5)	급수	돼지에게 적합한 음료로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4~5: 오염안됨 2~3 : 양호 0~1: 오염 N : 급수기 심한 오염/제한 급수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 대책 없음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1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필요한 공간) 제공 - 사료조에 물을 담아 제공할 경우 사료조의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체중, kg</td> <td>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td> </tr> <tr> <td>&lt; 25</td> <td>100</td> </tr> <tr> <td>25~40</td> <td>84</td> </tr> <tr> <td>&gt; 40</td> <td>67</td> </tr> </table>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67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67								
준수 사항	이유 시기 (자돈은 생후 28일 이후(28일 포함)에 이유하는가? (* 사육일지 등 관련 기록 확인, 28일 이전 이유에 대한 정당할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 서명 확인 또는 자돈사 환경 확인)	Y: 28일 이후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N : 28일 이전 이유							
	단미 금지 (돼지의 단미를 하지 않는가? (* 단미를 했을 경우 수의사 서명 서류 내용 확인 시 Y로 평가)	Y: 미실시 N: 실시							
	군사 사육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는가? (* 임신돈의 경우 사육일지 등으로 스톨 사육기간 준수가 확인되면 Y로 평가 * 기록이 없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N으로 평가)	Y: 군사사육 N: 스톨사육							
	발치 금지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를 실시하지 않는가? (* 모돈의 복지가 저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삭을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Y로 평가)	Y: 발치 또는 절치 안함 N: 발치 또는 절치, 관행적인 연삭							
	거세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를 할 경우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생후 7일 이전에 하는 외과적 거세 및 생후 7일 이후 수의사가 실시하는 외과적 거세는 Y로 평가, 관련 기록 확인)	Y: 외과적 거세 안함 N: 7일 이후 외과적 거세							
	전기봉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Y: 미보유 N: 보유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도태	도태는 수의사 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도구, 폐사기록, 수의사 처리 기록 등 확인)	Y: 수의사, 숙련 N: 방치, 부적절한 방법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20)	돈사는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 보호 장치 없음
	분반실은 기준에 적합한가? (* 모돈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 모돈이 몸을 완전히 뺄 수 있는 충분한 크기 - 모돈이 분반 5일 이후에는 쉽게 몸을 들릴 수 있어야 함 - 모돈과 자돈에게 안락함 제공 -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 또는 보호시설 설치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격리실은 기준에 적합한가?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격리 사유에 따른 적합한 위치 및 구조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5: 모두 적합 3~4: 격리시설 수 적절, 청소 및 소독 양호 1~2: 격리시설 부족, 청소 및 소독 상태 불량 0: 격리시설 절대 부족 N: 격리시설 없음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는가?	Y: 적합 N: 미끄러움, 심하게 경사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밀도 (10)	휴식공간 면적과 최소 소요면적은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예외 적용 가능 시 반영)	Y: 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휴식공간 면적, 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10 이하</td> <td>0.1</td> <td>0.15</td> </tr> <tr> <td>10~20 미만</td> <td>0.13</td> <td>0.2</td> </tr> <tr> <td>20~30 미만</td> <td>0.2</td> <td>0.3</td> </tr> <tr> <td>30~60 미만</td> <td>0.36</td> <td>0.55</td> </tr> <tr> <td>60 이상</td> <td>0.66</td> <td>1.0</td> </tr> </tbody> </table>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N: 한 개 이상 부적합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배설물 청소는 2회/주 이상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가? (청소 기록 확인)	Y : 2회 이상, 위생·쾌적 N: 2회 미만, 불결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덮혀있는 경우 최소 소요면적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30~60 미만</td> <td>0.8</td> </tr> <tr> <td>60 이상</td> <td>1.3(1.0)</td> </tr> </tbody> </table>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0.8	60 이상	1.3(1.0)	N: 한 개 이상 부적합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0.8																			
60 이상	1.3(1.0)																			
배설물 청소 및 깔짚 보충·교체를 1회/3주 이상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가? (청소, 깔짚 교체 기록 확인)	Y : 1회/3주 이상, 위생·쾌적 N: 1회/3주 미만, 불결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 최소 소요면적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체중, kg</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30~60 미만</td> <td>1.4</td> </tr> <tr> <td>60 이상</td> <td>1.6</td> </tr> </tbody> </table>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1.4	60 이상	1.6	N: 한 개 이상 부적합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30~60 미만	1.4																			
60 이상	1.6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환경 (15)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가?(청소, 깔짚 교체 기록 확인)	Y : 위생·쾌적 N: 불결												
	돼지의 몸에 배설물이 묻어 있지 않는 등 청결한가?	0~5												
	최소 소요면적은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예외 적용 가능 시 반영)	Y: 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최소 휴식공간 면적, 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후보돈</td> <td>0.92</td> <td>2.3(2.5)</td> </tr> <tr> <td>임신돈</td> <td>1.3</td> <td>(2.6)3.0(3.5)</td> </tr> <tr> <td>용돈</td> <td>-</td> <td>6.8(7.5)</td> </tr> </tbody> </table>	구 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후보돈	0.92	2.3(2.5)	임신돈	1.3	(2.6)3.0(3.5)	용돈	-	6.8(7.5)	N: 부적합
	구 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m <sup>2</sup>	최소 소요면적, m <sup>2</sup>											
	후보돈	0.92	2.3(2.5)											
	임신돈	1.3	(2.6)3.0(3.5)											
	용돈	-	6.8(7.5)											
	휴식공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 아님 - 후보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의 경우 깔짚으로 덮여있음 (*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물 평가 결과 5점일 경우에는 면제 가능) -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 - 돼지가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4~5 : 깔짚 충분 1~3 : 청결, 건조 N: 천공성 바닥, 깔짚 없음												
	깔짚의 기준은 적합한가? -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Y: 적합 N: 부적합												
조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 조명도 : 최소 4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 -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Y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 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돈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가?	Y: 25 이하 N: 25 초과 0~5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돈사 내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0~5 N: 단열/보온시설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송풍팬, 분무시설 등 돼지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는가?(* 돈사 내 최고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0~5 N: 없음
	소음	평가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자동화·기계화 설비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대체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 시설	돼지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 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5)	소독	돈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3:정기적 실시 1~2: 비정기적 실시 0: 미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2: 소독 0: 소독 안함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합계 (돼지의 관리방법 및 사육시설환경)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돼지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털에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 발톱,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성장단계별로 다리를 저는 돼지가 돈군의 4% 미만인가?	Y/N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돼지가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돼지는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16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20

[별표1-3]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육계”라 함은 식육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닭으로 사육기간 별로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한다

- 1) “육계”라 함은 28~35일 동안 사육하여 출하하는 닭을 말한다
- 2) “토종닭”이라 함은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인정하는 품종으로 70일 이상 사육하여 출하하는 닭을 말한다.
- 3) “삼계”라 함은 삼계탕을 생산하기 위하여 35~42일 동안 사육하여 출하하는 닭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구분	구비요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④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⑤ 사료 및 물 섭취량

구분	구비요건
	⑥ 점등 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닭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닭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② 닭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다리, 발, 발톱, 멧, 고기수염,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이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 와 함께 기록)

구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li> <li>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닭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li> </ul>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li> <li>(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붉은 진드기로 인한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li> <li>(3) 내외부 기생충은 구충약 투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li> <li>(4) 닭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li> <li>(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li> </ul>
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닭은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li> <li>(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li> <li>(3)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li> <li>(4) 닭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li> <li>(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li> <li>(6) 닭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ul>

구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계를 할 경우에는 도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li> <li>(8)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급이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li> <li>② 육계·토종닭은 65수당, 삼계는 110수당 지름이 33cm 내외의 원형 또는 타원형태의 급이기를 1대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li> <li>③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닭이 급이기를 췌 대응으로 사용하여 사료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이 급이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물러 바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li> </ul> </li> <li>(9) 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하여 닭이 소화를 돕기 위한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li> <li>(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상수도 급수 시면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li> <li>(3)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급수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li> </ul> </li> </ul>

구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니플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컵형은 28마리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li> <li>③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되어야 한다.</li> <li>④ 20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하는 우리에는 언제나 1대 이상의 급수기가 있어야 한다</li> <li>⑤ 급수기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⑥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li> </ul>
준수사항	(1) 일반농장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4주 이상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인도적 도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닭은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li> <li>(2)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li> <li>② 목의 탈구</li> <li>③ CO<sub>2</sub> 가스법(CO<sub>2</sub> 가스 농도 40% 이하 또는 비활성가스 혼합 사용 권장)</li> </ul> </li> <li>(3) 닭이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li> </ul>

구분	구 비 요 건
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li> <li>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li> <li>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된다.</li> <li>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li> </ul> </li> <li>(2) 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육계 1,000수당(토종닭 800수당, 삼계 1,700수당) 헷대 2m를 제공해주어야 한다.</li> <li>② 화의 굵기는 직경 3~6cm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고 폭이 약 4cm인 사각형 모양의 화를 권장한다), 화와 화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화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0~100cm 높이어야 한다</li> <li>③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닭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한다</li> <li>④ 화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li> </ul> </li> </ul>

구분	구비요건
	<p>(3) 가능한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쪼는 물건 (양배추등 각종채소류,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한다.</p> <p>② 깔짚은 충분히 깔아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p> <p>③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p> <p>④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 주어야 하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사육밀도	<p>(1)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화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p> <p>(3) 계사 내 닭의 최소 사육밀도는 아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육계·토종닭 : 19수 이하 및 30kg/m<sup>2</sup> 이하  - 삼계 : 35수 이하 및 30kg/m<sup>2</sup> 이하</p>
사육환경	<p>(1) 계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제공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③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계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p> <p>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2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p> <p>(3) 계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닭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p> <p>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p>③ CO<sub>2</sub>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p>(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닭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5) 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 <p>① 적절한 환기와 송풍팬 등 활용하여 열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p> <p>(6) 계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화·기계화 설비	(1) 닭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닭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 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방역 및 청소	(1)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조에서 장화 등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닭의 건강과 계사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모든 계사를 동시에 비우는 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한다. 다만, 올인-올아웃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농가는 고정식 소독장치 설치운영 등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닭을 입식하기 전에는 계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5)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7) 계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방목장 시설]</b></p> (1) 방사장은 닭들이 운동, 산책, 군집 및 사회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어야 한다. ①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 ② 모든 닭이 방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구의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구의 개수는 700수당 1개 이상이어야 한다

	<p>-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최대 20m 이내</p> <p>(2) 낮 동안에는 닭이 방사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관련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3) 방사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소 412수당 3.3㎡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p> <p>(4) 방사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p> <p>(5)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p> <p>(6)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p> <p>(7) 방목장에서는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8)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	--

## 5. 인증평가표

###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처방전미구비)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Y: 이수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N: 미이수

### □ 사양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 의무 (10)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하되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0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1
	2.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1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1
	4.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1
	5. 사료 및 물 섭취량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1점 처리)	1
	6. 점등 시간	1
	7.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1
	8. 청소 및 소독내용	1
	9.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1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1	
대비 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가? (* 관리자 서류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15)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관리자가 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닭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기록 의무사항에 대한 기록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5 N : 기록 없음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닭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 미조치
건강 관리	질병 예방 프로그램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 및 내용 확인)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내·외부 기생충은 구충제 투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20) 급이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4~5: 사료품질 양호, 자유급이
		2~3: 사료품질 양호, 제한급이
		0~1: 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기록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3~5: 기록 양호 1~2: 기록 미흡 0: 기록 없음
조치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조치 내용 기록)	1~5 N : 미조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이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이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원형 또는 타원형태 급이기 : 33cm - 육계·토종닭 65수당 1대 이상 -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모래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설치
	소화를 돕기 위해 닭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가?(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모래 제공 현황 기록)	Y: 이용 N : 이용 불가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하는가?	Y N : 심한 오염/제한 급수
급수 · 준수 사항 (5)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하는가?	Y N : 심한 오염/제한 급수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 대책 없음
급수 기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수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수기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0~2: 심한오염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플형 갯수 : 10마리당 1개 이상</li> <li>- 컵형 개수 : 28마리당 1개 이상</li> <li>-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li> <li>-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li> <li>-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우리에는 항상 1대 이상 급수기 설치</li> </ul>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Y: 미설치 N : 설치
인도적 도태(10)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가? (* 도태 방법 기록 및 실제 도태를 실시하는 인력과 면담 실시)	0~10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시설 등 (15)	가능한 충분히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는가? (*사육 형태 기록)	Y	
		N: 지속적 감금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N : 일부라도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움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 보호 장치 없음	
	해	해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 1000수, 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 당 2m 제곱</li> <li>- 굵기 : 직경 3~6cm</li> <li>- 해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li> <li>- 높이 : 최소 10cm~최대100cm</li> <li>- 벽과의 거리 : 최소 20cm 이상</li> </ul>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깔짚	깔짚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모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으며 충분한 깊이인가?</li> <li>-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li> </ul>	N: 한 개 이상 부적합	
사육 밀도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토종닭 : m<sup>2</sup> 당 19수 이하 및 30kg/m<sup>2</sup> 이내</li> <li>- 삼계 : m<sup>2</sup> 당 35수 이하 및 30kg/m<sup>2</sup> 이내</li> </ul>	N: 부적합	
조명	조명시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기록을 확인하여 계절별 점등시간 기록)	Y: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li> <li>-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li> </ul>	N: 한 개 이상 부적합	
조명도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5:점진적방식 조명 0: 일반조명	
	조명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Y: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가?</li> <li>- 계사내 조명도 : 최소 2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li> </ul>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 오염도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li> <li>- CO<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li> </ul>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가?	0~5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계사 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 단열/보온시설이 있거나 필요없음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소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자동화·기계화 설비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대체 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전기 시설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정보 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방역 및 청소 (15)	전실	방역을 위한 전실이 설치되어 있고 소독조에서 장화 등을 소독을 실시하는가?	1~5: 설치,소독실시 N:미설치
	소독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5:정기적 실시
			3: 비정기적 실시
		0: 미실시	
울인 올라웃 시스템 사용 또는 고정식 소독장치를 설치 운영하는가		Y: 운영(설치) N:미운영(미설치)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1~5:실시 N:소독 미실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 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닭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깃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깃털이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 발톱, 다리, 서있는 자세,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함	전체적으로 발과 발톱,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함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닭이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닭은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2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높이 : 45cm 이상 - 너비 : 50cm 이상 -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차양시설/쉼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닭 412마리 당 최소 3.3㎡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환경	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Y
		N: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거의 없거나 물빠짐이 매우 불량
계분 오염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Y :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
		N: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큼
합 계	※ 관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관정	-

[별표 1-4]

###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제4조)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풀사료”라 함은 가축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소화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각종 건초류(hay), 짚류(straw), 생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근채류 등을 말한다.

나. “군사사육”이라 함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계류식 사육”이라 함은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송아지”라 함은 6개월령 미만의 소를 말한다.

마. “번식우”라 함은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를 말한다.

바. “비육우”라 함은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를 말한다.

####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4. 인증기준

가. 소의 관리 방법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① 소의 입식 및 출하 상황 ② 사육 두수 및 성별

구 분	구 비 요 건
	③ 폐사 및 도태 두수와 원인 ④ 사육밀도, 우사 내부 면적(시설 평면도 포함) ⑤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등) ⑥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 내용 ⑦ 우사내 매일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⑩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⑪ 질병발생 및 처치내용 ⑫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⑬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⑭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⑮ 우사 바닥의 상태 ⑯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관리자는 쇠고기 이력제 등에 참여하여 농장 이력 추적에 능하게 하여야 한다.
소의 건강	(1) 관리자는 소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상태 등 점검	① 소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두려움을 유발시키거나 소에게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주의하여 이동해야 한다. ② 모든 소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에 의해 고통을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④ 관찰할 때는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피부, 다리, 발바닥,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등과 비정상 행동 여부를 살핀다. ⑤ 소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점검과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소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소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
질병 관리	(1) 관리자는 소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 ③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구분	구비요건
	<p>④ 병들거나 상처 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p> <p>(3) 관리자는 소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굽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p> <p>(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p>(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p> <p>(7) 환축관리</p> <p>① 소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에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책(치치, 격리, 도태, 환경개선 등)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바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축사를 비우고 개선해야 한다.</p> <p>②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사료 급이	<p>(1) 소의 품종, 연령에 맞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 균형을 맞춘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p> <p>(2) 모든 소는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생리적 욕구에 적합하도록 매일 사료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3) 소에게 위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나 음료를 급여해서는 안 된다.</p> <p>① 사료의 종류나 양을 변경할 때는 갑자기 변경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p> <p>② 변질 되었거나 오염된 사료와 물은 급여하지 않아야 한다.</p> <p>③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원료는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구분	구비요건						
	<p>(4) 모든 소가 사료와 식수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30%(건물 기준)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 출하전 6개월간은 사료의 15%(건물 기준) 이상 풀사료를 급이 할 수 있다</p> <p>(5) 먹이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p>(6) 사육단계별로 마리당 사료조의 길이를 달리 제공해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송아지</th> <th>번식우·비육우</th> </tr> </thead> <tbody> <tr> <td>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td> <td>40</td> <td>70</td> </tr> </tbody> </table> <p>(7) 질병의 유입과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저장한 사료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p> <p>(8) 사료나 물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도축을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사료급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9) 사료 안에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첨가할 수 없다.</p> <p>(10) 사료안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으며, 치료목적으로만 사료 안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p>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급수	<p>(1) 7일령 이후의 송아지를 포함한 모든 소는 담당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매일 적합한 양의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을 초해서는 안된다.</p> <p>(2)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10마리당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p> <p>(3)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의 급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p> <p>(5) 급이기와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의 사용은 금지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송아지 관리	<p>(1) 모든 송아지들은 태어난 후 가능한 빨리(최소 6시간 이내) 어미소나 다른 암소로부터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p> <p>① 첫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약 1.0L 이상)의 초유를 먹여야 한다.</p> <p>② 생후 1주 후부터 사료 입 불이기를 하여야 하며, 최소 700g 이상의 고품식 사료를 급여할 때까지 대용유를 급여해야 한다.</p> <p>③ 반추위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후 1주 후부터 양질의 풀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p> <p>④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경우 송아지를 이유시킬 수 있으나, 가급적 생후 80일령 이후에 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p> <p>④ 송아지를 이유와 동시에 합사하여서는 안 된다.</p> <p>⑤ 송아지는 제갈을 물리지 않도록 한다.</p> <p>(2) 송아지 출산전 요네병이나 새로 태어난 송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송아지 관리에 관한 수의사의 조언을 얻을 것을 권장 한다.</p>
제갈	<p>(1) 소의 제갈은 가급적 금지한다. 다만 서열다툼, 난폭한 성향에 대한 관리적 목적이나 전두동염 등의 치료적 목적으로 제갈을 할 수 있다. 이때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한다.</p> <p>① 제갈연고를 사용하여 제갈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1주일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갈기, 줄뿔,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갈방법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성우에 대하여 제갈이 불가피한 경우 마취 후 제갈을 실시해야 한다.</p>
거세	<p>(1) 소의 거세는 가급적 금지한다. 다만 거세가 필요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준수 사항	<p>(1) 이표, 마킹, 문신은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2) 다른 농장에서 소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소를 입식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8개월령 이하의 소를 입식하여야 한다.</p> <p>(3)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4) 소를 계류하여 사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하다.</p>
인도적 도태	<p>(1) 걸을 수 없거나, 심각한 상처 및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p> <p>① 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를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p> <p>- 타격법, 전격법, 충격법, 가스마취법</p> <p>②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인력이 없을 경우 수의사에 의해 이를 대행할 수 있다.</p>
분뇨 처리	<p>(1) 우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한다.</p> <p>① 우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우분으로 인해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마철이나 폭우 등 강우량이 많을 때 하천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p>

나. 사육시설 및 환경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시설 일반기준	<p>(1) 동물복지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p> <p>① 주요 기록사항은 1) 전체 바닥면적, 2) 칸막이 축사, 깔짚이 깔린 장소의 수, 3) 연령·체중·급이/급수 및 깔짚이 깔린 장소와 비교한 소의 수 등을 포함한다.</p> <p>②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는 각 축사의 출입구나 그 부근에 게시해야 한다.</p> <p>(2)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은 흙을 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코팅 처리 등을 하여야 한다.</p> <p>(3) 통로는 동물 두 마리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해야 한다.</p> <p>(4) 우세한 동물에 의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막다른 통로의 수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p> <p>(5) 우사는 가능한 자연광과 바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p> <p>(6) 우사 및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는 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p> <p>① 우사 및 사육시설은 소에게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며, 운동장에 소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카우브러쉬(cow brush)을 활용할 수 있다.</p> <p>(7) 우사 내 깔짚이 깔린 누울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p>
우사 (사육공간)	<p>(1) 소의 품종 특성 등에 맞게 움직임의 자유를 주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① 무리의 크기, 우사 구조, 온도, 환기 등에 맞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② 모든 소가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p> <p>③ 우사 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깔짚은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④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심각하게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p> <p>(2)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p> <p>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p> <p>④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p> <p>(3) 씨수소 우리는 다른 소의 활동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p> <p>① 관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소용 구속시설과 비상 출구를 갖춰야 한다.</p>
울타리	<p>(1) 모든 울타리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p> <p>(2)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해야 한다.</p> <p>①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한다.</p> <p>(3) 사료급이를 하는 급사책(Feed fence) 등 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p>
해충과 포식동물 방지	<p>(1)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관리해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사육밀도	(1)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2)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m <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m <sup>2</sup> 이상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운동장	(3)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4)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명	(1) 축사내부는 언제든지 소를 관찰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춰야 하며 우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낮 동안에는 축사내부에 최소 100lux 이상의 조명이 제공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② 축사내부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0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온도 및 환기	(1) 축사내 환경은 소의 사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적절한 환기 및 보온으로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품종의 내한성, 연령 및 기후조건들을 고려하여 축사내부의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열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소를 보호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출산환경	(3)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축사 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한다.		
	①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인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축사내 먼지 및 가스농도는 소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출산환경	③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1) 새끼를 낳으려는 소는 깔짚이 완전히 깔린 우리에 사육해야 한다.		
	(2) 우리는 관리자에 의해 암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암소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출산 성향에 따라,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취급설비	(4) 새끼를 낳을 암소는 일 2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1) 통로와 출입문은 동물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출입문과 열쇠를 조작할 때에는 동물에게 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송아지 관리시설	(3) 적재 시설은 경사 26도 이하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송아지 우리는 열 스트레스와 극심한 온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① 송아지 우리는 외풍을 막으면서도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한다.		
	② 송아지 우리는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송아지를 밟줄로 매는 것을 금지한다.		
송아지 관리시설	③ 송아지 우리는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송아지가 항상 깔짚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2) 송아지는 온도변화에 취약하므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 시설(보온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기계화 설비	<p>(1) 소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급이, 급수, 환기, 보온 등)는 소의 복지에 적합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①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p> <p>② 설비의 결함 시 소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2)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적합하게 절연 및 접지해야 한다.</p> <p>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p> <p>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p> <p>⑤ 2년에 최소 1번 이상 해당자격 소지자나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3) 전기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전기고장이나 환기 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p> <p>① 예비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p>
소음	<p>(1) 기계화 및 자동화 설비로 인한 소음으로 소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p> <p>① 환기 팬, 급이기 등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 해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②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리는 피해야 한다.
청소 및 소독	<p>(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2) 소를 입식하기 전에 소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p> <p>(3) 차단 방역을 위하여 우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p>
자유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자유 방목장 시설]</b></p> <p>(1) 방목장은 1마리당 337㎡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해야 한다.</p> <p>(3) 낮 동안에는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 일 경우 일시적으로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p> <p>(4)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p> <p>(5) 소가 필요한 식수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배수 환경을 만들어 깊은 진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p> <p>(6)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7)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시</p>

구 분	구 비 요 건
	설/쉽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쉽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8)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쑥갓 속 식물, 엉겅퀴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은 바로 제거해야 한다.
	(9)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10)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
	(11) 방목장에서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12)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인증 평가표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인증기준과 다른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우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수의사 처방전 없음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소를 입식하였는가?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8개월령 이하 소 입식 허용)	Y: 인증농장 N: 일반농장

□ 소의 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의 의무 (10)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 2.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및 우사 내부면적(사육밀도, 시설 평면도 포함)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4.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및 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질병발생, 치료 등) 5.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6. 우사 바닥의 상태, 청소·소독,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7. 송아지 관리, 제각, 거세 관련 기록 8. 우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9.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정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10
	대비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대비계획이 작성된 서류 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이력제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한가? (*관련 서류 확인)	Y: 가능 N: 불가능
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5)	점검 관리자가 소를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소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1~5 N : 기록 없음
	조치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소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소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 미조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질병관리 (5)	질병예방 프로그램	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질병예방 계획 서류 확인) - 과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는가?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Y: 격리, 치료 N: 격리, 치료없이 방치
	건강검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가? (* 수의사 서명 등 수의사 정기 검진여부를 서류로 확인)	4~5: 정기검진, 질병예방 철저 3: 양호 1~2: 비정기점검 0: 정기검진 안함
보조물(5)		카우브러쉬, 건조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 안함 경우 수의사 서명 및 사유서를 확인하여 인정될 경우 3점으로 평가)	4~5: 보조물 수 충분, 형태 적절 3: 양호 1~2: 미흡 0: 제공 안함
급여 (10)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4~5: 풀 제공, 사료품질 양호, 충분 2~3: 사료품질 양호, 불충분 0~1: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풀사료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30%(건물 기준) 이상 건조 등 풀사료를 포함하는가 (다만, 도축 출하전 6개월간은	Y: 30% 이상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수 (5)	금지	사료의 15%(건물 기준) 이상 풀사료를 급이 가능? (* 관리자가 제출한 사료 구매, 급여, 체고 등 관련 기록으로 사료급여 중 풀사료 급여 비율이 확인이 안 될시 'N' 평가)	N: 30% 이하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상태 기록)	4~5: 오염 없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Y: 적합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N: 부적합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급수 (5)	급수	소에 게 적합한 음료로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4~5: 오염안됨 2~3: 양호 0~1: 오염 N: 급수기 심한 오염/제한 급수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Y N: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대책 없음	
	급수기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10마리당 1개 이상 -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	Y: 적합 N: 부적합	
준수 사항 (5)	송아지 관리	송아지가 아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첫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약 1.0L 이상)의 초유 급여 - 생후 1주 후부터 사료 입 불이기를 하여야 하며, 최소 700g 이상의 고품질 사료를 급여할 때까지 대용유를 급여 - 반추위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후 1주 후부터 양질의 풀사료 급여	0~5  N:이유 동시 합사 또는 제갈 물리기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군사 사육	-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경우 송아지를 이주시킬 수 있으나, 가급적 생후 80일령 이후에 이유하는 것을 권장 - 이유와 동시에 합사 및 제갈 물리기 금지 (* 사육일지 등 관련 기록 확인)	
		모든 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는가? (* 치료 목적 이외 계류식 사육 시 N으로 평가)	Y: 군사사육 N: 계류사육
	제갈	제갈을 하지 않거나 제갈할 경우 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 서열다툼, 난폭한 성향에 대한 관리적 목적이나 전두동염 등의 치료적 목적의 제갈 허용, 이때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	Y: 제갈 미실시 또는 규정 준수
		- 제갈연고를 사용하여 제갈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1주일 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 - 제각기, 졸뜸,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갈방법들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성우에 대하여 제각이 불가피한 경우 마취 후 제갈 위 기준을 준수하여 제갈하는 경우 Y로 평가, 관련기록 확인)	N: 제갈
	거세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Y: 거세 미실시 또는 규정준수 N: 거세
	이표, 마킹, 문신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는가?	Y: 적절 N: 부적절
전기봉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Y: 미보유 N: 보유	
도태	도태는 수의사 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도구, 폐사기록, 수의사 처리 기록 등 확인)	Y: 수의사, 숙련 N: 방치, 부적절한 방법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10)	사육시설	우사는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Y: 적합 N: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Y: 적합 N: 부적합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보호 장치 없음		
		출산환경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새끼를 낳으려는 소는 깔짚이 완전히 깔린 우리에 사육 - 우리는 관리자에 의해 암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암소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 - 출산 성향에 따라,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 확보 - 새끼를 낳을 암소는 일 2회 이상 검사(기록 확인)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송아지 우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외풍을 막으면서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 -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 -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깔짚 도포 -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 등) 설치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격리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격리 사유에 따른 적합한 위치 및 구조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5: 모두 적합 3~4: 격리시설 수 적절, 청소 및 소독 양호 1~2: 격리시설 부족, 청소 및 소독 상태 불량 0: 격리시설 절대 부족 N: 격리시설 없음		
			모든 바닥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는가? - 경사 26도 이하	Y: 적합 N: 미끄러움, 심하게 경사	
			울타리	모든 울타리는 아래와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는가?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덩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 사료급이를 하는 급사책(Feed fence) 등 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밀도 (10)	깔짚제공 면적과 최소 소요면적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Y: 적합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N: 한 개 이상 부적합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 쉼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m <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m <sup>2</sup> 이상의 깔짚을 제공				
운동장	운동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Y: 적합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N: 부적합
깔짚 및 바닥관리(10)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관리상태가 아래 기준에 따라 양호한가? - 우사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깔짚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관리하며, 오염되면 즉시 교체 - 깔짚은 질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깔짚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흡수력이 있어야 하며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됨			0~5
	소의 몸에 배설물이 묻어 있지 않는 등 청결한가?			0~5
사육 환경 (10)	조명	조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낮 동안 최소 100 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낮은 조도 장소 제공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환기 등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으로 관리하는가?(* 실측치 기록)		Y: 80 이하 N: 80 초과	
	우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가?		0~5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우사 내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0~5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송풍팬, 분무시설 등 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Y:대책 실행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소음	필요시 실행하고 있는가?(* 우사 내 최고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N: 없음
	평가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가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 시설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Y: 실시 N: 미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Y: 실시 N: 미실시
가축분뇨 처리			Y: 있음 N: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소의 관리방법 및 사육시설환경)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소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털에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굽,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전체적으로 발굽,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한가?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소가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소는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2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337㎡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는가?	Y: 적합 N: 부적합
급수	1)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 했는가? 2) 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가? 3)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였는가?(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Y: 적합 N: 부적합
방목장 환경	1)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쑥갓 속 식물, 영경귀의 새	Y: 적합 N: 한 개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썩, 마디풀과의 잡초 등)이 있는가? 2)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은가?. 3)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는가?	이상 부적합
가축분뇨	방목장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는가?	Y: 적합 N: 부적합
울타리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는가?	Y: 적합 N: 부적합
합 계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별표 1-5]

동물복지 젓소 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풀사료”라 함은 가축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소화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각종 건초류(hay), 짚류(straw), 생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근채류 등을 말한다.
- 나. “군사사육”이라 함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다. “계류식 사육”이라 함은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라. “송아지”라 함은 6개월령 미만의 소를 말한다.
- 마. “착유우”라 함은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를 말한다.
- 바. “미경산우”라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말한다.
- 사. “건유우”라 함은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를 말한다.
- 아. “육성우”라 함은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소를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가. 젓소의 관리 방법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① 소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젓소, 숫소, 송아지 등), 우사 내부면적, 운동장 및 방목장(선택사항) 면적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배합사료, 풀사료 성분 비율) ④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⑤ 우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⑥ 청소 및 소독내용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⑧ 수의사 컨설팅 내용 ⑨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⑩ 젓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역 ⑪ 착유장치,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⑫ 집유량 및 집유차량, 출하차 별 거래내역 ⑬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⑭ 우사 바닥의 상태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관리자는 우유 이력 유통 시스템 등에 참여하여 원유의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젓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p>(1) 관리자는 젓소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젓소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무리에서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피부, 다리, 발바닥,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등과 비정상 행동 여부를 살핀다.</p> <p>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체가 있는지 확인한다.</p> <p>(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개체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3) 점검이 끝나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p> <p>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p> <p>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개체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p>
질병관리	<p>(1) 관리자는 소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p> <p>(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①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p> <p>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p> <p>③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p>

구 분	구 비 요 건						
급이	<p>④ 병들거나 상처 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p> <p>(3) 관리자는 소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굽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p> <p>(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p>(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p> <p>(7) 환축관리</p> <p>① 소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에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책(처치, 격리, 도태, 환경개선 등)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바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축사를 비우고 개선해야 한다.</p> <p>②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p>(1) 모든 소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2) 사료나 물을 먹기 어려운 개체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3)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p> <p>(4) 모든 소가 사료와 식수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건물 기준)</p> <p>(5) 사육단계별로 두당 사료조의 길이를 달리 제공해야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송아지</th> <th>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th> </tr> </thead> <tbody> <tr> <td>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td> <td>4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구분	구비요건
급수	<p>(1)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3)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수기는 모든 소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10마리당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p> <p>③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의 급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p>
관리 준수사항	<p>(1) 모든 송아지들은 태어난 후 가능한 빨리(최소 6시간 이내) 어미소나 다른 암소로부터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p> <p>① 첫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약 1.5L 이상)의 초유를 4차례 이상 먹여야 한다.</p> <p>② 생후 1주 후부터 사료 입 붙이기를 하여야 하며, 최소 700g이상의 고품식 사료를 급여할 때까지 대용유를 급여해야 한다.</p> <p>③ 반추위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후 1주 후부터 양질의 풀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빈혈예방을 위해 사료의 철분함량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p> <p>④ 체중이 약 70kg에 달하는 때 이유시킬 수 있으나, 생후 50일령 이후 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⑤ 송아지를 이유와 동시에 합사하여서는 안 된다.</p> <p>⑥ 송아지는 제갈을 물리지 않도록 한다.</p> <p>(2) 젖소의 제각은 가급적 금지한다. 다만 서열다툼, 난폭한 성향에 대한 관리적 목적이나 전두동염등의 치료적 목적으로 제각을 할 수 있다, 이때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한다.</p> <p>① 제각연고를 사용하여 제각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1주일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각기, 줄톱,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각방법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성우에 대해 제각이 불가피한 경우 마취 후 제각을 실시해야 한다.</p> <p>(3) 소의 거세는 가급적 금지한다. 다만 거세가 필요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한다.</p> <p>(4) 이표, 마킹, 문신은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5) 사료나 물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도축을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사료급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① 급이기와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의 사용은 금지한다.</p> <p>② 사료 안에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첨가할 수 없다.</p> <p>③ 사료 안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으며, 치료목적으로만 사료 안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p> <p>(6) 다른 농장에서 소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소를 입식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50일령 이하의 송아지를 입식하여야 한다.</p> <p>(7)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p>

구분	구비요건
인도적 도태	<p>(1) 걸을 수 없거나, 심각한 상처 및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p> <p>(2) 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는 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숙련된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도태는 허용한다.</p> <p>- 타격법, 전격법, 총격법, 가스마취법</p> <p>(3) 사체를 처리하게 전에 소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p>

나. 사육시설 및 환경

구분	구비요건
사육시설	<p>(1) 우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우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p> <p>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p> <p>③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를 설계·관리해야 하며 해충, 기생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p> <p>④ 우사 내 깔짚이 깔린 누울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우사 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깔짚은 잘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심각하게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⑤ 소를 계류하여 사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하다.</p> <p>(2) 씨수소 우리는 다른 소의 활동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p> <p>① 관리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소용 구속시설과 비상출구를 갖춰야 한다.</p> <p>(3) 송아지 우리는 열 스트레스와 극심한 온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p> <p>① 송아지 우리는 외풍을 막으면서도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한다.</p> <p>② 송아지 우리는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송아지를 밟줄로 매는 것은 금지한다.</p> <p>③ 송아지는 온도변화에 취약하므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격리실 및 분만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충분한 수의 격리실 및 분만실을 갖추고 격리 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p> <p>②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p> <p>③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p> <p>(5) 소의 모든 이동로와 출입문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26도 이하 경사지지 않아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사육공간	(1)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사육단계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16.5
		건유우	6.5	13.5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① 개별우상(Free stall)을 이용할 경우, 개별우상 바닥 전체에 깔짚을 깔아주거나 바닥용 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소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③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④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3)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m <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m <sup>2</sup> 이상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4)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구분	구비요건
사육환경	①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울타리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① 전기 철책은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해야 한다.
	②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하고, 급사책(Feed fence) 등 급이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우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사내부는 언제든지 소를 관찰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② 낮 동안에는 축사내부에 최소 100 lux 이상의 조명이 제공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③ 축사내부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0 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제공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2) 우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높은 습도·응결·외풍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사람이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③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우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사 내 환경은 소의 사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 및 보온으로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품종의 내한성, 연령 및 기후조건들을 고려하여 축사내부의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구 분	구 비 요 건
	<p>③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p> <p>(4) 우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기계화 및 자동화 설비로 인한 소음으로 소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리는 피해야 한다</p> <p>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해야 한다.</p>
자동화·기계화 설비	<p>(1) 소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p> <p>(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p> <p>(3) 설비의 결함 시 소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적합하게 절연 및 접지해야 한다.</p> <p>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p> <p>④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p>
착유시설	<p>(1)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착유시설은 청결해야 하며, 젖소를 놀라게 하거나 착유를 방해하는 벌레, 조류 및 설치류 등을 방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2) 착유를 하기에 앞서 유방, 유두 등은 유두용 수건(teat towel)을 이용하여 청결하게 세척해야 하며, 유두는 승인된 소독제에 침지하여야 한다.</p> <p>(3) 주위에 유우를 쉽게 관찰하기 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p> <p>(4) 착유기는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착유기를 검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p> <p>(5) 적합한 유두 컵 라이너를 선택해야 한다.</p> <p>(6) 유두 컵 라이너를 매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p> <p>(7) 맥동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공 게이지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p> <p>(8) 전자동 착유시설</p> <p>① 수동식 착유시설 이상의 관리가 되어야 한다.</p> <p>② 착유시설 주위에 유우를 관찰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하며 청결하고 소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p> <p>③ 효과적인 착유가 가능하도록 유우를 관찰해야 하고 일반착유시설 이용 다른 소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야 한다.</p>
청소 및 소독	<p>(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2) 소를 입식하기 전에 우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3) 차단 방역을 위하여 우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5) 우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p>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자유 방목장 시설]</b></p> <p>(1) 방목장은 1마리당 337㎡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구조와 바닥, 조명을 구비해야 한다.</p> <p>(3) 낮 동안에는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 일시적으로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p> <p>(4)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p> <p>(5) 소가 필요한 식수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배수 환경을 만들어 깊은 진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p> <p>(6)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7)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p>

구분	구비요건
	<p>(8)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쑥갓 속 식물, 엉겅퀴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은 바로 제거해야 한다.</p> <p>(9)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p> <p>(10)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p> <p>(11) 방목장에서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p> <p>(12)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

### 5. 인증 평가표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인증기준과 다른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우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 약품을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수의사 처방전 없음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소를 입식하였는가? (* 다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50일령 이하 송아지 입식 허용)	Y: 인증농장 N: 일반농장

□ 소의 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의무 (10)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 2.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건유우, 착유우) 및 우사 내부면적(사육밀도, 시설 평면도 포함)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4.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및 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질병발생, 치료 등) 5.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6. 우사 바닥의 상태, 청소·소독,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7. 송아지 관리, 제각, 거세 관련 기록 8. 우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9.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10. 착유장치,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10		
			대비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대비계획이 작성된 서류 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이력제 농장 이력 추적에 가능한가? (*관련 서류 확인)	Y: 가능 N: 불가능
			점검 관리자가 소를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5)	기록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소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1~5 N : 기록 없음		
	조치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소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소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 미조치		
	점검 관리자가 소를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질병예방 프로그램 (5)	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질병예방 계획 서류 확인) - 파행, 유방염 등 질병 관리 방법 -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는가?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Y: 격리, 치료 N: 격리, 치료없이 방치
	건강검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가? (* 수의사 서명 등 수의사 정기 검진여부를 서류로 확인)	4~5: 정기검진, 질병예방 철저 3 : 양호 1~2 : 비정기검진 0: 정기검진 안함
보조물(5)	카우브러쉬, 건조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 안할 경우 수의사 서명 및 사유서를 확인하여 인정될 경우 3점으로 평가)	4~5: 보조물 수 충분, 형태 적절
		3: 양호
		1~2: 미흡 0 : 제공 안함
급여(10)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4~5: 사료품질 양호, 충분 2~3: 사료품질 양호, 불충분 0~1: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풀사료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는가? (* 관리자가 제출한 사료 구매, 급여, 재고 등 관련 기록으로 사료급여 중 풀사료 급여 비율이 확인이 안 될시 'N' 평가)	Y: 60% 이상 N: 60% 이하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수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상태 기록)	4~5: 오염 없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Y: 적합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
	두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급수 (5)	급수	소에게 적합한 음료로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4~5: 오염안됨	
			2~3 : 양호	
			0~1: 오염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N : 급수기 심한 오염/제한 급수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급수기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10마리당 1개 이상 -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	N : 대책 없음		
		Y: 적합		
준수 사항	이유 시기	송아지가 아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 첫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약 1.0L 이상)의 초유 급여 - 생후 1주 후부터 사료 입 붙이기를 하여야 하며, 최소 700g 이상의 고행식 사료를 급여할 때까지 대용유를 급여 - 반추위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후 1주 후부터 양질의 풀사료 급여 - 체중이 약 70kg에 달하는 때 이유시킬 수 있으나,가급적 생후 50일령 이후에 이유하는 것을 권장	0~5  N : 이유 동시 합사 또는 제갈 물리기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20)	사육시설	- 이유와 동시에 합사 및 제갈 물리기 금지 (* 사육일지 등 관련 기록 확인)	
		군사 사육 모든 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는가? (* 치료 목적 이외 계류식 사육 시 N으로 평가)	Y: 군사사육 N: 계류사육
		제갈 제갈을 하지 않거나 제갈할 경우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 서열다툼, 난폭한 성향에 대한 관리적 목적이나 전두동염 등의 치료적 목적의 제갈 허용, 이때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 - 제갈연고를 사용하여 제갈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1주일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 - 제갈기, 줄톱,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갈방법들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성우에 대하여 제갈이 불가피한 경우 마취 후 제갈 위 기준을 준수하여 제갈하는 경우 Y로 평가, 관련기록 확인)	Y: 제갈 미실시 또는 규정 준수  N: 제갈
		거세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Y: 거세 미실시 또는 규정준수 N: 거세
		이표, 마킹, 문신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는가?	Y: 적절 N: 부적절
전기봉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Y: 미보유 N: 보유		
도태	도태는 수의사 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도구, 폐사기록, 수의사 처리 기록 등 확인)	Y: 수의사, 숙련 N: 방지, 부적절한 방법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20)	사육시설	우사는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N : 보호 장치 없음		
	출산환경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새끼를 낳으려는 소는 깔짚이 완전히 깔린 우리에 사육 - 우리는 관리자에 의해 암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암소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 - 출산 성향에 따라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 확보 - 새끼를 낳을 암소는 일 2회 이상 검사(기록 확인)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송아지 우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외풍을 막으면서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 -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 -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깔짚 도포 -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 등) 설치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격리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격리 사유에 따른 적합한 위치 및 구조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5: 모두 적합 3~4: 격리시설 수 적절, 청소 및 소독 양호 1~2: 격리시설 부족, 청소 및 소독 상태 불량 0: 격리시설 절대 부족 N: 격리시설 없음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는가? - 경사 26도 이하	Y: 적합 N: 미끄러움, 심하게 경사	
		울타리	모든 울타리는 아래와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는가?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 사료급이를 하는 사조 울타리, 급사책(Feed fence)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	0~5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밀도 (10)	휴식공간 면적과 최소 소요면적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단계</th> <th>깔짚 제공면적(m<sup>2</sup>)</th> <th>총 면적(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경산우</td> <td>착유우</td> <td>8</td> <td>16.5</td> </tr> <tr> <td>건유우</td> <td>6.5</td> <td>13.5</td> </tr> <tr> <td>미경산우</td> <td>3</td> <td>10.8</td> </tr> <tr> <td>육성우</td> <td>3</td> <td>6.4</td> </tr> <tr> <td>송아지</td> <td>2</td> <td>4.3</td> </tr> </tbody> </table>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16.5	건유우	6.5	13.5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16.5																	
건유우		6.5	13.5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m <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6m <sup>2</sup> 이상의 깔짚을 제공																				
운동장	운동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Y : 적합 N: 부적합																			
깔짚 및 바닥관리(10)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관리상태가 아래 기준에 따라 양호한가? - 우사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깔짚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관리하며, 오염되면 즉시 교체 -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깔짚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흡수력이 있어야 하며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됨	0~5																			
	소의 몸에 배설물이 묻어 있지 않는 등 청결한가?	0~5																			
착유시설 및 관리	착유시설 및 관리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착유시설은 청결해야 하며, 젖소를 놀라게 하거나 착유를 방해하는 벌레, 조류 및 설치류 등을 방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 착유를 하기에 앞서 유방, 유두 등은 유두용 수건(teat towel)을 이용하여 청결하게 세척해야 하며, 유두는 승인된 소독제에 침지 - 주위에 유우를 쉽게 관찰하기 위한 조명이 있어야 함 - 착유기는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착유기를 검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적합한 유두 컵 라이너를 구비	Y :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두 컵 라이너를 매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교체</li> <li>- 맥동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공 게이지 압력이 적정인지 확인</li> </ul> <전자동 착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식 착유시설 이상의 관리가 되어야 함</li> <li>- 착유시설 주위에 유우를 관찰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하며 청결하고 소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돌출부가 없어야 함</li> <li>- 효과적인 착유가 가능하도록 유우를 관찰해야 하고 일반 착유시설 이용 다른 소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li> </ul>	
사육 환경 (10)	조명	조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낮 동안 최소 100 lux 이상 조명 제공 장소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낮은 조도 제공 Y :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 오염도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우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심한 불편감을 느끼는가? Y: 25 이하 N: 25 초과 0~5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우사 내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송풍팬, 분무시설 등 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는가?(* 우사 내 최고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 대책 실행 N: 없음 0~5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소음	평가자가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자동화·기계화 설비	대체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 시설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 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5)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1~2: 비정기적 실시 0: 미실시	3:정기적 실시 2: 소독 0: 소독 안함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HACCP 지정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소의 관리방법 및 사육시설환경)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소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털에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 발톱,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전체적으로 발굽,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한가?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소가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소는 제외)	5
원유 체세포수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에 의한 체세포수 검사결과 평균으로 평가 (최근 3개월간) (* 배점 기준 : [10점] 20만 미만 개/ml, [5점] 20만 ~35만 이하, [0점] 35만 이상)	10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5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3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337㎡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구조와 바다, 조명 구비 하였는가?	Y: 적합 N: 부적합
급수	1)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 했는가?	Y: 적합
	2) 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가? 3)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했는가?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시설/웍터를 설치하였는가?(차양/웍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Y: 적합 N: 부적합
	1)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썩작 속 식물, 엉겅퀴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이 있는가? 2)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은가? 3)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가축분뇨	방목장에서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는가?	Y: 적합 N: 부적합
	울타리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는가 ?
합 계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별표 1-6]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풀사료”라 함은 가축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소화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각종 건초류(hay), 짚류(straw), 생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근채류 등을 말한다.
- 나. “군사사육”이라 함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다. “계류식 사육”이라 함은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가. 염소의 관리방법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축사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④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구 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사료 및 물 섭취량</li> <li>⑥ 점등 시간 및 조명 강도</li> <li>⑦ 축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li> <li>⑧ 청소 및 소독내용</li> <li>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수의사 컨설팅 내용포함)</li> <li>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li> <li>⑪ 축사 바닥의 상태</li> <li>⑫ 기대치 대비 성장률</li> </ul> <p>(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li> <li>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li> </ul>
염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p>(1) 관리자는 염소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염소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li> <li>② 모든 염소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li> <li>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염소가 있는지 확인한다.</li> </ul>

구 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염소가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연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피부, 다리, 털, 발바닥,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li> </ul> <p>(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염소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p> <p>(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 와 함께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li> <li>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염소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li> </ul>
건강관리	<p>(1) 관리자는 염소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p> <p>(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li> <li>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li> <li>③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li> <li>④ 병들거나 상처 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li> </ul> <p>(3) 관리자는 염소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굽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염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p>(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염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p> <p>(7) 환축관리</p> <p>① 염소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에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책(처치, 격리, 도태, 환경개선 등)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바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축사를 비우고 개선해야 한다.</p> <p>②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염소는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p>
급이	<p>(1) 모든 염소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p> <p>(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3) 사료를 먹기 어려운 염소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염소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나 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p> <p>(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p> <p>(6) 모든 염소가 사료와 식수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건물 기준)</p> <p>(7)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축할 경우에는 도축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8) 요결석 예방을 위한 미네랄 보충을 위해 린칼블럭 등을 공급해주어야 한다</p> <p>(9)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두당 약 30~40cm 길이의 사료조를 제공해야 한다</p> <p>(10) 사료나 물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축할 경우 12시간 이내로 급이를 제한할 수 있다</p>
급수	<p>(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염소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p> <p>① 모든 개체에게 매일 신선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p> <p>② 급수시스템이 작동 안 될 경우도 평소 섭취량에 맞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상수도 급수 시 면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p> <p>(3)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급수기는 모든 염소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② 급수기는 염소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이어야 한다.</p>
준수사항	<p>(1) 일반농장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염소를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80일령 이하의 염소를 입식하여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2) 군사사육 염소는 공격적인 행동 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 유무, 적절한 크기와 연령에 따라 그룹 관리해야한다 (3) 염소는 쉼터와 그늘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동안 실외에 두어서는 안된다 (4) 염소는 원칙적으로 끈을 이용한 계류사육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백신접종, 체중측정, 수의학적 조치, 사료급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염소의 민간함 부분(유두, 눈, 코, 항문, 고환 등)을 뽀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거나 때리지 말아야한다. (6) 이동시 꼬리를 비틀거나 들어올리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7) 염소에게 전기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인도적 도태	(1) 걸을 수 없거나, 심각한 상처 및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염소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① 염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를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타격법, 전격법, 총격법, 가스마취법 ②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인력이 없을 경우 수의사에 의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염소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1) 축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염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③ 축사는 염소가 서있는 상태에서 앉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설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④ 축사는 정상적인 휴식자세로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이어야 한다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염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악천후(특히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축사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출입문은 염소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2) 울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울타리는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높이가 1.0~1.2m 정도이어야 한다. ② 전기 철책은 접촉 시 염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해야 한다. ③ 급이시설과 관련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④ 염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⑤ 깔짚은 청결, 건조하고, 곰팡이가 없으며 수시로 보충해주어야 한다
사육밀도	(1) 염소무리의 크기, 축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p>(2) 모든 염소가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p> <p>(3) 축사는 체중별 두당 최소 축사면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슬랫바닥 축사인 경우 최소 축사면적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종류</th> <th>깔짚 제공면적(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성축</td> <td>1.5</td> <td>2.5</td> </tr> <tr> <td>육성축</td> <td>0.4</td> <td>0.5</td> </tr> <tr> <td>자축/모축</td> <td>2.0</td> <td>3.0</td> </tr> <tr> <td>추가 자축</td> <td>0.4</td> <td>0.5</td> </tr> </tbody> </table> <p>① 개방식 흙바닥 축사의 경우 슬랫바닥 축사에 비해 1.5배의 면적을 제공해야한다</p>	종류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최소 소요면적(m <sup>2</sup> )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종류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최소 소요면적(m <sup>2</sup> )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운동장	<p>(1)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성장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p> <p>(2)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염소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사육환경	<p>(1) 축사에는 자연햇빛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축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염소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염소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하고 최소 5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3) 축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염소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p> <p>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p>③ CO<sub>2</sub>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구분	구비요건
	<p>(4) 축사 내 환경은 염소의 사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염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품종의 내한성, 연령 및 기후 조건들을 고려하여 축사 내부온도를 관리해야한다.</p> <p>③ 열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염소를 보호해야한다.</p> <p>(5)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한다</p> <p>(6) 기계화 및 자동화 설비로 인한 소음으로 염소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p> <p>① 환기 팬, 급이기 등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 해야 한다.</p> <p>②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리는 피해야 한다.</p>
분만 및 새끼관리	<p>(1) 염소의 경우 분만실 사용 유무에 따라 폐사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소 분만 일주일전에 분만실로 옮겨져야 한다.</p> <p>① 분만실 크기는 최소 가로 1.2m, 세로 1.8m 이어야 한다.</p> <p>② 분만실은 개체별로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p> <p>③ 분만실에는 보온을 위해 깔짚이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p> <p>④ 첫 24시간 동안 충분한 초유를 먹여야 하며, 생후 15일까지는 어미 염소와 함께 분만실에서 개체 관리를 해줘야 한다</p> <p>⑤ 생후 2주 후부터 사료 입 붙이기를 하여야 하며, 양질의 조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p> <p>⑥ 가급적 생후 80~90일령에 이유하여야 한다</p>
제각 및 거세	<p>(1) 염소의 제각은 가급적 금지한다. 다만, 서열다툼, 난폭한 성행에 대한 관리적 목적으로 제각을 할 수 있다. 이 때 숙련된 사람에게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① 제각연고를 사용하여 제각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4~5일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주일 넘지 않아야 한다</p> <p>② 제각기, 줄톱,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각방법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마취 후 제각을 실시해야 한다.</p> <p>(2) 염소의 거세는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생후 3~4개 월령에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① 외과적 수술은 마취 후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p>
자동화·기계화 설비	<p>(1) 염소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p> <p>(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p> <p>(3) 설비의 결함 시 염소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염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염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p> <p>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p> <p>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p> <p>(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p>
방역 및 청소	<p>(1) 축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조에서 장화 등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p> <p>(2)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4) 염소를 입식하기 전에는 축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p> <p>(5)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6)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p>
분뇨처리	<p>(1) 축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한다.</p> <p>① 축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축분으로 인해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마철이나 폭우 등 강우량이 많을 때 하천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p>
자유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자유 방목장 시설]</b></p> <p>(1) 방목장은 1마리당 155㎡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모든 염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해야 한다.</p> <p>(3) 낮 동안에는 염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 일시적으로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4)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p> <p>(5) 염소가 필요한 식수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배수 환경을 만들어 깊은 진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p> <p>(6)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 급수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7)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p> <p>(8)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염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은 바로 제거해야 한다.</p> <p>(9)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p> <p>(10)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p> <p>(11) 방목장에서 축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p> <p>(12)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

### 5. 인증 평가표

####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인증기준과 다른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측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N: 첨가, 수의사 처방전 없음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수료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염소를 입식하였는가?	Y: 인증농장 N: 일반농장

#### □ 염소의 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의무 (10)	<p>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li> <li>2.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 및 축사 내부면적(사육밀도, 시설 평면도 포함)</li> <li>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 가능한 경우에만 기록)</li> <li>4.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및 염소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질병발생, 치료 등)</li> <li>5.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li> <li>6. 축사 바닥의 상태, 청소소독,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li> <li>7. 새끼염소 관리, 제각, 거세 관련 기록</li> <li>8. 축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li> </ol>	10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9.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대비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대비계획이 작성된 서류 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건강상태 등 점검 (15)	점검 관리자가 염소를 정밀하게 점검하는가? (* 관리자에게 염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염소의 수와 원인, 조치 내용	1~5 N : 기록 없음
	조치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염소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염소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 미조치
질병예방 프로그램 질병관리 (5)	질병예방 프로그램 염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질병예방 계획 서류 확인) -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염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는가?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염소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Y: 격리, 치료 N: 격리, 치료없이 방치
	건강검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염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가?	4~5: 정기검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 수의사 서명 등 수의사 정기 검진여부를 서류로 확인)	질병예방 철저 3 : 양호 1~2 : 비정기점검 0: 정기검진 안함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급이 (10)	풀사료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는가? (* 관리자가 제출한 사료 구매, 급여, 재고 등 관련 기록으로 사료 급여 중 풀사료 급여 비율이 확인이 안 될시 'N' 평가)	Y: 60% 이상 N: 60% 이하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급이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상태 기록)	4~5: 오염 없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두당 최소 사료조의 길이: 30~40cm	Y: 적합 N: 부적합
급수 (5)	급수 염소에게 적합한 음료로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4~5: 오염안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검사		2~3 : 양호 0~1 : 오염 N : 급수기 심한 오염/제한 급수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 상수도 급수 시 Y로 평가)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 대책 없음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 모든 염소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관리 여부 - 염소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 여부	Y: 적합 N: 부적합
준수 사항 (5)	이유시기 새끼염소는 생후 80일령 이후(80일 포함)에 이유하는가?	0~5
	새끼염소를 다음과같이 관리하고 있는가? - 첫 24시간 동안 충분한 초유를 먹여야 하며, 생후 15일까지는 어미 염소와 함께 분만실에서 개체 관리 여부 - 생후 2주 후부터 사료 입 불이기를 하여야 하며, 양질의 조 사료를 섭취 여부	Y: 적합 N: 1개이상부적합
	그룹관리 군사사육 염소는 공격적인 행동 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 유두, 적절한 크기와 연령에 따라 그룹으로 관리하는가?	Y: 적합 N: 부적합
	방치 염소는 쉼터와 그늘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동안 실외에 방치하지 않는가?	Y: 적합 N: 부적합
	강압적 취급 염소의 민간함 부분 (유두, 눈, 코, 항문, 고환 등)을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거나 구타 또는 이동 시 꼬리를 비틀거나 들어올리는 강압적 행동을 하지 않는가?	Y: 적합 N: 부적합
	전기봉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Y: 적합 N: 부적합
	군사 사육 모든 염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는가? (* 치료 목적 이외 계류식 사육 시 N으로 평가)	Y: 군사사육 N: 계류사육
	제각 제각을 하지 않거나 제각할 경우 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 서열다툼, 난폭한 성향에 대한 관리적 목적이나 전투동염 등	Y: 제각 미실시 또는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거세	의 치료적 목적의 제각 허용, 이때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 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 - 제각연고를 사용하여 제각할 것을 권고하며, 생후 4~5일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2주이내) - 제각기, 줄톱, 인두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제각방법들은 원칙 적으로 금지, 다만 성우에 대하여 제각이 불가피한 경우 마 취 후 제각 위 기준을 준수하여 제각하는 경우 Y로 평가, 관련기록 확인)	규정 준수 N: 제각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를 할 경우 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 로 실시 - 외과적 수술은 생후 3~4개월령 이내에 마취 후 거세를 실시 해야 한다. 위 기준을 준수하여 제각하는 경우 Y로 평가, 관련기록 확인)	Y: 거세 미실시 또는 규정준수 N: 거세
	기타 농장 내에 염소 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가? (사육축종과 마리수 기록)	Y: 미사육 N: 사육
도태	도태는 수의사 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도구, 폐사기록, 수의사 처리 기록 등 확인)	Y: 수의사, 숙련 N: 방치, 부적절한 방법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10)	사육시설	축사는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 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Y: 적합 N: 부적합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Y: 적합 N: 부적합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적합 N: 보호 장치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분만실의 기준은 적합한가? - 최소 가로 1.2m, 세로 1.8m - 개체별로 분만 할 수 있는 시설 - 충분한 깔짚제공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격리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격리 사유에 따른 적합한 위치 및 구조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5: 모두 적합 3~4: 격리시설 수 적절, 청소 및 소독 양호 1~2: 격리시설 부족, 청소 및 소독 상태 불량 0: 격리시설 절대 부족 N: 격리시설 없음														
울타리	모든 울타리는 아래와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는가?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사육밀도 (10)	깔짚제공 면적과 최소 소요면적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Y: 적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깔짚 제공면적(m<sup>2</sup>)</th> <th>최소 소요면적(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성축</td> <td>1.5</td> <td>2.5</td> </tr> <tr> <td>육성축</td> <td>0.4</td> <td>0.5</td> </tr> <tr> <td>자축/모축</td> <td>2.0</td> <td>3.0</td> </tr> <tr> <td>추가 자축</td> <td>0.4</td> <td>0.5</td> </tr> </tbody> </table> - 개방식 흙바닥 축사의 경우 슬랫바닥 축사에 비해 1.5배의 면적을 제공	종류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최소 소요면적(m <sup>2</sup> )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종류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최소 소요면적(m <sup>2</sup> )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운동장	운동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성장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Y: 적합 N: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염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깔짚 및 바닥관리(10)	충분한 양의 깔짚을 깔아주고, 관리상태가 아래 기준에 따라 양호한가? - 축사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깔짚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관리하며, 오염되면 즉시 교체 - 깔짚은 짚,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깔짚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흡수력이 있어야 하며 염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 됨	0~10	
사육 환경 (20)	조명	조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낮 동안 최소 50 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낮은 조도 장소 제공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환기 등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Y: 25 이하 N: 25 초과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으로 관리되는가?(* 실측치 기록)	Y: 80 이하 N: 80 초과
		축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가?	0~10
	온도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축사 내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0~10 N: 단열/보온시설 없음
		송풍팬, 분무시설 등 염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는가?(* 축사 내 최고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대책 실행 N: 없음
소음	평가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가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점검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대체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 시설	염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경보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N: 없음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청소 및 소독	소독	측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Y: 실시 N: 미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	Y: 실시 N: 미실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Y: 있음 N: 없음
가점 사항 (5)	유기축산	유기축산 지정 받았는가?(지정서 확인)	3
	HA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업소의 관리방법 및 사육시설환경)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염소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털에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굽,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전체적으로 발굽,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한가?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염소가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염소는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2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55㎡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모든 염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는가?	Y: 적합 N: 부적합
급수	1)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 했는가? 2) 염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가? 3)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방목장 환경	1)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염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썩갓 속 식물, 엉겅퀴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이 있는가? 2)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은가? 3)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이 있는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가축분뇨	방목장 축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는가?	Y: 적합 N: 부적합
울타리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는가 ?	Y: 적합 N: 부적합
합 계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별표 1-7]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제4조)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육용오리”라 함은 식육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를 말한다
- 나. “산란용오리”라 함은 식용 또는 부화용 알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를 말한다.
- 다. “수육공간”이라 함은 오리가 고유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몸치장, 깃털 고르기, 머리담그기 등 물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라. “슬랫”이라 함은 분뇨, 물 등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격자형 또는 천공성 바닥 구조물을 말한다

2.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인증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동물복지 운영실적을 운영현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구 분	구 비 요 건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오리사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④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⑤ 사료 및 물 섭취량

구 분	구 비 요 건
	⑥ 점등 시간 ⑦ 오리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오리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오리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정밀 점검(1회 이상 기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오리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오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이동해야 한다. ② 오리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비공, 다리, 발, 발톱,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오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오리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 와 함께 기록)

구분	구 비 요 건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오리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건강관리	(1) 관리자는 오리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수증,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내·외부 기생충은 구충약 투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 (4) 오리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리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오리는 격리용 우리를 갖추고 격리하여 치료한다. ① 격리용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 ② 격리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③ 격리용 우리에서 나오는 분뇨는 다른 동물에게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노출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급여	(1) 모든 오리는 사육목적, 품종, 일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과도한 경쟁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 (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사료를 먹기 어려운 오리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분	구 비 요 건
	(4) 오리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6)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압을 할 경우에는 도압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 (7)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오리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최소 급이 공간으로 오리 100수 당 50cm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급이기는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팬형급이기는 오리 15수 당 1대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급수	(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오리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상수도 급수 시 면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향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오리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분	구비요건
	<p>② 니플형은 컵을 사용할 경우 12마리 당 1개 이상, 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마리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중형은 100마리 당 50cm이상 제공하여야하며, 음수공간의 폭과 깊이는 각각 7cm이상이어야 한다.</p> <p>④ 급수기는 오리의 크기와 일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로 조절해 주어야한다.</p> <p>(5) 수욕을 위한 별도의 급수공간을 제공해야한다.</p> <p>① 오리 100마리당 50cm이상의 수욕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폭은 20cm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수욕공간 내부 물의 깊이는 오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cm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수욕공간의 높이는 주령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p>
준수사항	<p>(1) 일반농장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오리를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40일 이상을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p>(2) 오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포획하여야 한다.</p> <p>① 오리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도를 낮춘 상태에서 포획하여야 한다.</p> <p>② 오리를 운반할 경우 오리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거나, 다리, 날개, 머리 그리고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p> <p>③ 만일 오리의 목을 잡고 포획할 경우 한손에 한마리만 잡아야 하며 호흡기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인도적 도태	<p>(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리는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2) 오리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p> <p>①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p> <p>② 목의 탈구</p> <p>③ CO<sub>2</sub> 가스법(CO<sub>2</sub> 가스 농도 40% 이하 또는 비활성가스 혼합 사용 권장)</p> <p>(3) 오리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p>
사육시설	<p>(1) 오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오리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p> <p>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오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양시설을 갖추어야한다.</p> <p>③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오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p> <p>④ 오리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오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된다.</p> <p>⑤ 오리사는 관리자가 모든 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오리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⑥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오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⑦ 사육시설은 오리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p> <p>(2)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오리는 언제든지 잘 건조되고 깨끗한 깔짚이 깔린 휴식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모든 오리사 내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며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다만 음수시설 부근은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음수시설 부근이 슬랫형태의 바닥이라면 전체 바닥면적의 25%이하여야 한다.</p> <p>④ 깔짚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한다.</p> <p>⑤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주어야 한다.</p> <p>⑥ 깔짚은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계절별로 아래의 최소 소요량 이상 제공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계절별</th> <th colspan="2">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th> </tr> <tr> <th>최소 소요량</th> <th>권장 소요량</th> </tr> </thead> <tbody> <tr> <td>봄(3~5)</td> <td>0.7</td> <td>0.9</td> </tr> <tr> <td>여름(6~8)</td> <td>1.0</td> <td>1.3</td> </tr> <tr> <td>가을(9~11)</td> <td>0.7</td> <td>0.9</td> </tr> <tr> <td>겨울(12~2)</td> <td>1.3</td> <td>1.8</td> </tr> </tbody> </table>	계절별	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		최소 소요량	권장 소요량	봄(3~5)	0.7	0.9	여름(6~8)	1.0	1.3	가을(9~11)	0.7	0.9	겨울(12~2)	1.3	1.8
계절별	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																	
	최소 소요량	권장 소요량																
봄(3~5)	0.7	0.9																
여름(6~8)	1.0	1.3																
가을(9~11)	0.7	0.9																
겨울(12~2)	1.3	1.8																
사육밀도	(1) 오리의 최소 사육밀도는 산란오리는 6.8kg(2마리)/㎡ 육용오리는 10.2kg (3마리)/㎡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육환경	<p>(1) 오리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오리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 후 5일령까지는 예외로 한다.</p>																	

구분	구비요건
	<p>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제공한다.</p> <p>③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오리가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오리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낮 시간 동안 오리사 내부는 오리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오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p> <p>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2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오리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p> <p>④ 야간에 완전한 암기가 아닌 2lux 이하의 약한 조명을 제공해야한다</p> <p>(3) 오리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오리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p> <p>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p>③ CO<sub>2</sub>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p> <p>(4) 오리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5) 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 <p>① 적절한 환기와 송풍팬 등 활용하여 열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p> <p>(6) 오리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구분	구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리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li> <li>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li> </ul>
자동화·기계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리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li> <li>(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li> <li>(3) 설비의 결함 시 오리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오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li>(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리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li> <li>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li> <li>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li> <li>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li> </ul> </li> <li>(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li> </ul>

구분	구비요건
방역 및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리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조에서 장화 등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li> <li>(2) 방목의 용도가 아닌 축사에 야생조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이나 창문 등에 그물이나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li> <li>(3)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li> <li>(4) 오리의 건강과 오리사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모든 오리사를 동시에 비우는 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한다. 다만, 올인-올아웃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농가는 고정식 소독장치 설치 운영 등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여야 한다</li> <li>(5) 오리를 입식하기 전에는 오리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li> <li>(6)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오리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li> <li>(7)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실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8) 오리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오리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li> </ul>
방목장 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b>[실외 방목장 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목장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마리당 면적을 제공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목지 관리 환경이 양호하면 오리 마리당 2.5㎡를 제공하고 방목지 관리가 좋지 않을 경우 오리 마리당 4㎡를 제공한다.</li> </ul> </li> <li>(2) 관리자는 방목사육을 위한 장소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방목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기생충이나 포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ul>

	<p>(3) 방목장은 오리들이 운동, 산책, 군집 및 사회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의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 이상이어야 한다.</li> <li>- 출입구의 개수는 700수당 1개가 적정하다.</li> <li>- 출입구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li> <li>- 출입구 바닥턱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cm이상이라면 경사로를 제공해야 한다.</li> </ul> <p>(4) 낮 동안에는 오리가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5)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오리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오리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p> <p>(6)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p> <p>(7)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8) 오리를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p> <p>(9) 기타 오리분뇨 관련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p>
--	--

### 5. 인증평가표

#### □ 일반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일반기준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오리사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하지 않는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을 구비하고 있는가?	Y: 미첨가 (처방전미구비) N:첨가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이수증 확인 및 고용인에게 교육 내용 전달 여부 확인)	Y: 이수 N: 미이수

#### □ 사양관리 방법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관리자 의무 (10)	기록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기록의무사항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하되 기록이 불량할 경우 0점 처리)	10
	1.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1
	2. 사육 개체수 및 오리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1
	3.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1
	4.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1
	5. 사료 및 물 섭취량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1점 처리)	1
	6. 점등 시간	1
	7. 오리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1
	8. 청소 및 소독내용	1
	9.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1
10.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1	
대비 계획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가? (* 관리자 서류확인)	Y: 문서화, 실현 가능 N: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오리의 건강상태 등 점검 (15)	관리자가 오리를 정밀하게 점검(매일 2회 이상)하는가? (* 관리자에게 오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실시)	1~5 N : 시연 거부/미점검	
	기록 의무사항에 대한 기록(1회 이상)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5 N : 기록 없음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오리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내용과 오리의 상태를 보고 평가)	1~5 N : 미조치	
건강관리	질병 예방 프로그램 오리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수의사의 서명 및 내용 확인)	Y: 있음 N: 없음, 수의사 서명없음, 내용 부실	
	구충 내외부 기생충은 구충약 투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Y: 방제, 기생충 문제없음 N: 방제 안함	
	격리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급이 (20)	사료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4~5: 사료품질 양호, 자유급이 2~3: 사료품질 양호, 제한급이 0~1: 사료 품질 불량, 불충분	
		기록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3~5: 기록 양호 1~2: 기록 미흡 0: 기록 없음
		조치 사료를 먹기 어려운 오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조치 내용 기록)	1~5 N : 미조치
	금지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 제외, 영양성분 기록 등 확인)	Y: 미포함 N: 포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급이 기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이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이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최소 급이 공간 : 100마리 당 50cm 이상 - 팬형 급이기 : 15마리 당 1대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급수 (5)	급수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오리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는가?	Y N : 심한 오염/제한 급수
	검사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수질 기준은 적합한가?	Y N : 기록없음, 미검사, 수질 기준 부적합
	겨울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비 내용 기록)	Y N : 대책 없음
급수 기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오염방지 장치내역 및 오염상태 등 기록)	4~5: 급수기 오염방지 장치 설치, 오염 가능성 낮음 3: 오염도 양호 0~2: 심한오염
	급수기는 기준에 적합한가?(실측치 기록) - 니플형 : 컵받침 설치 시 12마리당 1개 이상 컵받침 미설치 시 15마리당 1개 이상 - 벨형 : 100마리 당 50cm, 폭, 깊이 각각 7cm 이상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수육	수육 공간	적절한 수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 100마리당 길이 50cm, 폭 20cm, 깊이 10cm 이상제공	Y : 적절 N : 부적절
		사육 일반농장에서 입식한 경우 최소 40일 이상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 기준으로 사육하였는가?	Y: 사육 N: 미사육
준수 사항	포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포획하는가? -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낮은 속도	Y: 적절
		- 운반 시 머리가 아래로 향하거나, 다리, 날개, 머리, 꼬리를 잡는 행위 - 목을 잡을 경우 한손에 한 마리 포획하며 호흡기를 막는 행위	N:부적절
인도적 도태(5)		오리를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가? (* 도태 방법 기록 및 실제 도태를 실시하는 인력과 면담 실시)	0~5

□ 사육시설 및 환경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사육 시설 등 (20)	사육 시설	가능한 충분히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인가?	0~5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오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가?	0~5
		사육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0~5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지 않는가? (*사육 형태 기록)	Y N: 지속적 감금
		오리사는 관리자가 모든 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오리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가?	Y N : 일부라도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움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오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Y : 적절 N : 보호 장치 없음	
	깔짚 (5)	깔짚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 - 오리사 내 모든 바닥(음수부근 예외)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으며 충분한 깊이 - 음수시설 부근이 슬랫형태인 경우 바닥면적 25% 이하 - 깔짚은 위생적으로 관리, 건조하게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 -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었을 때 즉시 교체	Y: 모두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깔짚은 충분히 제공하며 계절별로 최소 소요량 이상 제공하는가? (*구배 및 사용량 기록 확인)	5:권장 소요량 이상 3:최소 소요량 이상, 권장 소요량 미만 0:최소 소요량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절별</th> <th colspan="2">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th> </tr> <tr> <th>최소 소요량</th> <th>권장 소요량</th> </tr> </thead> <tbody> <tr> <td>봄(3~5)</td> <td>0.7</td> <td>0.9</td> </tr> <tr> <td>여름(6~8)</td> <td>1.0</td> <td>1.3</td> </tr> <tr> <td>가을(9~11)</td> <td>0.7</td> <td>0.9</td> </tr> <tr> <td>겨울(12~2)</td> <td>1.3</td> <td>1.8</td> </tr> </tbody> </table>	계절별	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		최소 소요량	권장 소요량	봄(3~5)	0.7	0.9	여름(6~8)	1.0	1.3	가을(9~11)	0.7	0.9	겨울(12~2)	1.3
계절별	1,000마리 당 깔짚 소요량(톤)																	
	최소 소요량	권장 소요량																
봄(3~5)	0.7	0.9																
여름(6~8)	1.0	1.3																
가을(9~11)	0.7	0.9																
겨울(12~2)	1.3	1.8																
사육 밀도	사육 밀도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산란오리 : m <sup>2</sup> 당 6.8kg 및 2마리 이하 - 육용오리 : m <sup>2</sup> 당 10.2kg 및 3마리 이하	Y: 적합 N: 부적합															
사육 환경 (10)	조명	조명시간은 기준에 적합한가? * 기록을 확인하여 계절별 점등시간 기록)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오리가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5:점진적방식 조명 0: 일반조명															
	조명도	조명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낮 시간 동안 오리사 내부는 오리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오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가? - 오리사 내 조명도 : 최소 20 lux 이상 (* 실측치 기록) - 야간 2lux 이하 조명도 제공 여부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공기 오염도	공기오염도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 CO <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온도	오리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가?	0~5															
자동화·기계화	점검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는가? (* 오리사 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기록 상황 확인 및 평가 시 온도 기록)	Y: 단열/보온시설이 있거나 필요없음 N: 단열/보온시설 없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	Y: 없음 N: 있음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 작동 상태 확인)	Y: 양호 N: 한 개 이상 불량 또는 고장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설비	대체 방법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전기 시설 오리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가?	Y: 접근 불가능 N: 접근 가능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가?(*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 기록 확인)	Y: 검사기록 있음 N: 검사 기록 없음
	경보 장치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Y: 있음 N: 없음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만 평가)		Y: 있음, 정상 작동 N: 없거나 고장	
방역 및 청소 (15)	전실 방역을 위한 전실이 설치되어 있고 소독조에서 장화 등을 소독을 실시하는가?	1~5: 설치, 소독실시 N:미설치	
	소독 오리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5:정기적 실시 3: 비정기적 실시 0: 미설치	
		축사에 야생조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이나 창문등에 그물이나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Y: 적절 N: 부적절
		울인 울아웃 시스템 사육 또는 고정식 소독장치를 설치·운영하는가?	Y: 운영(설치) N:미운영(미설치)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가?	1~5:실시 N:소독 미실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Y: 있음 N: 없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적합(Y) 여부
가점 사항 (5)	유기 축산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는가? (인증서 확인)	3
	HA CCP HACCP 지정 받았는가? (지정서 확인)	2
합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없음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3. N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100 (가점 5)

□ 오리의 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눈의 활력과 상태	전체적으로 눈에 활력이 있고 반짝임	5
깃털의 상태	전체적으로 깃털이 윤기가 나고 깨끗함	5
발, 발톱, 다리,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전체적으로 발과 발톱, 다리가 정상이고, 서있는 자세가 바르며, 움직임과 걸음걸이가 활발함	5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	전체적으로 섭취행동에 활력이 있음	5
건강상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것이 확실한 오리가 없음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오리는 제외)	5
합 계	※ 판정 기준 1. 배점 기준 : 우수 : 5, 양호 : 4 보통: 3, 미흡 : 2, 부족 : 1, 열악 또는 평가불가능 : 0 2.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25

□ 동물복지형 자유방목(추가 사항)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Y) 여부
방목장 시설면적	방목장 면적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방목장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마리당 2.5㎡ - 방목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마리당 4㎡	Y: 적합
		N: 부적합
출입구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높이 : 45cm 이상 - 너비 : 50cm 이상 - 출입구 갯수: 700마리당 1개 이상(최소 2개 이상) - 출입구 바닥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cm이상 일 경우 경사로 제공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차양시설	차양시설/선풍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실측치 기록) - 오리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Y: 적합
		N: 한 개 이상 부적합
방목장 환경	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Y
		N: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거의 없거나 물빠짐이 매우 불량
축분 오염	방목장에서 축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Y :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
		N: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큼
합 계	※ 판정 기준 : N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	-

[별표 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검역본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 (나)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 (4)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5)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신청인이 현재 사육하는 전체 가축의 사육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
  - (나)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현장심사

- (1)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가능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현장심사는 가축이 사육중인 시기에 실시한다.
- (4)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사육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 (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라) 해당농장이 인증기준에 각 항목별로 적합한지 여부
- (5)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6)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축산물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나) 사료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
  - (다) 용수 :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가 의심되는 경우
- (7)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유해 잔류물질
  - (나) 사료 : 사료공정규격에 따라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 (다) 용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생활용수기준이 설정한 성분
- (8)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검사에 한함)
  - (나)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
  - (다)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

- (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생활용수 검사에 한함)
- (마)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9)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 (10) 시료채취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11)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과정에서 농장소재지 주소, 사육면적, 사육두 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보고

-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3) 현장심사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 (1)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2) 검역본부장이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3)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판정기준 이상의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 가. 단체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 나. 전체구성원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에서 부적합한 구성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부여방법(제9조 관련)

1. 동물복지-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별 지정번호(00) - 축종(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2. 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군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에는 시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3.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4. 축종별 번호는 산란계(1), 돼지(2), 육계(3), 한우(4), 육우(5), 젓소(6), 오리(7), 염소(8)로 한다.
5.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는 해당 시군의 축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산란계로 인증 받은 경우 동물복지-01-00-1-01
부산광역시(02)	기장군(01)	
대구광역시(03)	달성군(01)	
인천광역시(04)	강화군(01), 옹진군(02)	
광주광역시(05)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군(01)	
경기도 (10)	수원시(01), 성남시(02), 의정부시(03), 안양시(04),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7), 안산시(08), 고양시(09), 과천시(10), 구리시(11), 평택시(12), 남양주시(13), 오산시(14), 시흥시(15), 군포시(16), 의왕시(17), 하남시(18), 파주시(19), 이천시(20), 용인시(21), 양주군(22), 여주군(23), 화성시(24), 광주시(25), 연천군(26), 포천군(27), 가평군(28), 양평군(29), 안성시(30), 김포시(31)	예) 이천시에서 육계로는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동물복지-10-20-3-01
강원도 (11)	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8), 횡성군(09), 영월군(10), 평창군(11), 정선군(12), 철원군(13), 화천군(14), 양구군(15), 인제군(16), 고성군(17), 양양군(18)	
충청북도 (12)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청원군(04),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1), 증평군(12)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충청남도 (13)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서산시(05), 논산시(06), 금산군(07), 연기군(08), 부여군(09), 서천군(10), 청양군(11), 홍성군(12), 예산군(13), 태안군(14), 당진군(15), 계룡시(16)	
전라북도 (14)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2), 고창군(13), 부안군(14)	
전라남도 (15)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광양시(05), 담양군(06), 곡성군(07), 구례군(08), 고흥군(09), 보성군(10), 화순군(11), 장흥군(12), 강진군(13), 해남군(14), 영암군(15), 무안군(16), 함평군(17), 영광군(18), 장성군(19), 완도군(20), 진도군(21), 신안군(22)	
경상북도 (16)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1), 의성군(12), 청송군(13), 영양군(14), 영덕군(15), 청도군(16), 고령군(17), 성주군(18), 칠곡군(19), 예천군(20), 봉화군(21), 울진군(22), 울릉군(23)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경상남도 (17)	창원시(01), 진주시(03), 통영시(05), 사천시(06), 김해시(07), 밀양시(08), 거제시(09), 양산시(10), 의령군(11), 함안군(12), 창녕군(13), 고성군(14), 남해군(15), 하동군(16), 산청군(17), 함양군(18), 거창군(19), 합천군(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시(01), 서귀포시(02)	
세종특별자치시(19)	00	

[별표 4]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9조 관련)

1.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생산자	홍길동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2.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8의 작도법에 따라 표시한다.
- 나. 생산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생산자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 )로 표시 한다.
- 다. 인증번호는 해당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라. 품목은 해당 축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하고, 축종은 인증 받은 축종을 표시하며, 추가인증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 마. 농장소재지는 농장소재지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바.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품목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 사.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추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등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별표 5]

인증 농장 출입·검사 조사요령(제11조제2항 관련)

1. 농장 현장 조사

- 가. 검역본부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인증종류 및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2회 이상 실시한다.
  - (3) 검역본부장의 특별조사 계획 또는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다. 조사시기는 사육기간 중에 실시한다.
-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농장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7)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운영 현황서

###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2.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사육관리 등

####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면적(사육밀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폐사계란 관리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점등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청소 및 소독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닭의 건강상태 등 점검

○ 매일 1회 이상 닭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록의무사항에 대한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건강관리

○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선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 급이공간 : 1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 급이기 사이 간격 : 최소 60c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소화 및 산란과정을 돕기 위해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급수

○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니플형과 컵형 개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닭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부리다듬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경우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강제 환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내에 산란계이외의 동물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작용화학적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산란장소

○ 산란장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개별 산란상 :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 - 산란 장소 :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산란장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외풍이 없고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이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화 및 깔짚

○ 화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 굵기 : 직경 3 ~ 6cm - 화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 - 벽으로부터의 거리 : 20cm 이상 - 높이 : 최소 40cm ~ 최대 1m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이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함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다단 구조물(다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단 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최대 4단 이하 -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관리자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통로 설치 및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중간 단 설치 여부 -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 : 0.5m 이상 ~ 1m 이하 (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까지 측정)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사육밀도

<input type="radio"/> 사육밀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바닥면적 : 성계 9마리 이하/㎡ - 다단 구조물 : 바닥면적과 다단구조물의 이용 가능 전체 면적이 1㎡ 당 9마리 이하이고, 총 사육두수는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의 1㎡ 당 17마리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사육환경

<input type="radio"/> 조명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인공조명은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의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조명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 조명도 : 최소 10 lux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 - CO <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적절한 온도 관리를 위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는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자동화·기계화 설비

<input type="radio"/>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인증사항

<input type="radio"/>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계사와 방목장과의 출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높이 : 35cm 이상 - 너비 : 40cm 이상 -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차양시설 및 쉼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은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 상태가 좋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등	
관리자현황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현황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생산관리현황	○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청·등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없음		
	○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없음		
	○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있음(실적 : )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출하		

[별지 제1-2호 서식]

## 동물복지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2.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돈사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입식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돼지의 관리 방법

####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돈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청소 및 소독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⑪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⑫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 되어 있고 실현 가능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 돼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기록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돼지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건강관리

<input type="radio"/>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필요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동물관리

<input type="radio"/> 짖, 나무조각, 톱밥, 가죽 끈 등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마. 급이

<input type="radio"/>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사료를 먹기 어려운 돼지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제한 급여를 할 경우, 돼지 평균 어깨넓이의 1.1배 이상 - 무제한 급여를 할 경우, 1개의 급이공간 당 돼지 수 •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없는 건식 급이기 : 최대 6마리 • 칸막이가 있는 급이기 : 최대 10마리 • 습식 급이기 : 최대 14마리 - 습식 급이기에는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 전자식 급이기는 적절한 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급수

<input type="radio"/> 돼지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 제공 - 사료조에 물을 담아 제공할 경우 사료조의 기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체중, kg</th> <th>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th> </tr> </thead> <tbody> <tr> <td>&lt; 25</td> <td>100</td> </tr> <tr> <td>25~40</td> <td>84</td> </tr> <tr> <td>&gt; 40</td> <td>67</td> </tr> </tbody> </table>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체중, kg	사료조 1m당 최대 마리수							
< 25	100							
25~40	84							
> 40	67							
- 급수기의 유속은 사육단계별로 돼지가 필요한 수분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급수기가 같이 있는 급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								

<위 각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자돈은 생후 28일 이후에 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돼지의 단미를 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를 실시하지 않고 모돈의 복지가 저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내에 돼지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도태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분만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모돈이 몸을 완전히 뺄 수 있는 충분한 크기 -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쉽게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함 - 모돈과 자돈에게 안락함 제공 -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 또는 보호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격리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및 적합한 위치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사육밀도

○ 휴식공간 면적과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배설물 청소와 깔짚 교체를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휴식공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 아님 - 깔짚으로 덮여있음 -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 - 돼지가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사육환경

○ 조명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조명도 : 최소 40 lux 이상 -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송풍팬, 분무시설 등 돼지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돼지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청소 및 소독

○ 돈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인증사항

○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1-3호서식)]

**동물복지 육계농장 운영 현황서**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일반기준**

<input type="checkbox"/>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계사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사육관리 등**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면적(사육밀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사료 및 물 섭취량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점등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청소 및 소독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닭의 건강상태 등 점검

<input type="checkbox"/> 매일 1회 이상 닭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록의무사항에 대한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건강관리

○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원형 또는 타원형태 급이기 : 330mm - 육계·토종닭 65수당 1대 이상 -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소화 및 산란과정을 돕기 위해 닭이 모래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급수

○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벨형 개수 : 100마리당 1개 이상 - 니플형과 컵형 개수 : 10마리당 1개 이상 - 선형 급수공간 : 1마리당 최소 2.5cm 이상 - 원형 급수공간 : 최소 1c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사육할 경우 입식 후 4주 이상 육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내에 육계이외의 동물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닭을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무창계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화 및 깔짚

○ 화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재질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음 - 육계 1000수, 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 당 2m 제공 - 굵기 : 직경 3~6cm - 화 사이 간격 : 최소 30cm 이상 - 높이 : 최소 10cm~최대100cm - 벽과의 거리 : 최소 20c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계사내 모든바닥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함 -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사육밀도

○ 사육밀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육계·토종닭 : ㎡ 당 19수 이하 및 30kg/㎡ 이내 - 삼계 : ㎡ 당 35수 이하 및 30kg/㎡ 이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사육환경

○ 조명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 -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공조명은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의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조명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 조명도 : 최소 20 lux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 - CO <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계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온도 관리를 위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는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방역 및 청소

<input type="radio"/>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사육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올인-올아웃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정식 소독장치 운영 등 방역 및 소독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닭을 입식하기 전 계사를 비운 다음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차단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계분 처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인증사항

<input type="radio"/>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input type="radio"/>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계사와 방목장과의 출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높이 : 45cm 이상 - 너비 : 50cm 이상 -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방목장의 차양시설 및 쉼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닭 412마리 당 최소 3.3㎡ 이상 - 위치 :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방목장은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 상태가 좋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방목장의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4호 서식]

##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운영현황서

###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2.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우사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
○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소만 입식했습니까?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8개월령 이하 송아지 입식 허용)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소의 관리 방법

####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예 □아니오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우사 내부면적(사육밀도, 시설 평면도 포함)	□예 □아니오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예 □아니오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예 □아니오
⑤ 우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예 □아니오
⑥ 청소 및 소독내용	□예 □아니오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예 □아니오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예 □아니오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예 □아니오
⑩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질병발생 치료 등)	□예 □아니오
⑪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예 □아니오
⑫ 우사 바닥의 상태	□예 □아니오
⑬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예 □아니오
⑭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예 □아니오
⑮ 송아지 관리, 제각, 거세 관련 기록	□예 □아니오
○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 소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소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건강관리

○ 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필요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동물관리

○ 카우브러쉬, 건조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마.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4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송아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번식우·비육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able>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	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				
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급수

○ 소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소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 제공 -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송아지는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등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제각을 하지 않거나 제각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표, 마킹 및 문신이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도태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4. 사육시설 및 환경

#####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인으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출산환경은 다음과 같이 아래 기준에 적합합니까? - 새끼를 낳으려는 소는 깔짚이 완전히 깔린 우리에 사육 - 우리는 관리자에 의해 암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암소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 - 출산 성향에 따라,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 확보 - 새끼를 낳을 암소는 일 2회 이상 검사(기록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송아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준에 적합합니까? - 외풍을 막으면서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 -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 -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깔짚 도포 -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 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격리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및 적합한 위치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습니까? - 경사 26도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울타리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 사료급이를 하는 급사책(Feed fence) 등 급이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사육밀도, 깔짚 및 바닥관리

○ 깔짚제공 면적과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단계</th> <th>깔짚 제공면적, m<sup>2</sup></th> <th>총 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번식우</td> <td>5</td> <td>10</td> </tr> <tr> <td>비육우</td> <td>3.5</td> <td>7</td> </tr> <tr> <td>송아지</td> <td>1.5</td> <td>2.5</td> </tr> </tbody> </table>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단계</th> <th>깔짚 제공면적, m<sup>2</sup></th> <th>총 면적, 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번식우</td> <td>5</td> <td>10</td> </tr> <tr> <td>비육우</td> <td>3.5</td> <td>7</td> </tr> <tr> <td>송아지</td> <td>1.5</td> <td>2.5</td> </tr> </tbody> </table>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 m <sup>2</sup>	총 면적, m <sup>2</sup>											
번식우	5	10											
비육우	3.5	7											
송아지	1.5	2.5											
○ 운동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배설물 청소와 깔짚 교체를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사육환경

○ 조명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동안 최소 100 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조도 장소 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송풍팬, 분무시설 등 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행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행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인증사항

○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337㎡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음 급수 기준에 적합합니까? -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 마련 - 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 -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 시설/쉼터를 설치하였습니까?(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환경 관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하며,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썩갓 속 식물, 영경귀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 제거 -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함 -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자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lt;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gt;</p>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 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등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현황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생산관리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청·등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없음			
	○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없음			
현황	○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있음(실적 : )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출하			



다. 건강관리

○ 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필요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동물관리

○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소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마.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송아지</th> <th>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th> </tr> </thead> <tbody> <tr> <td>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td> <td>4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	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구분	송아지	번식우·비육우·건유우·착유우				
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40	70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급수

○ 소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개별 급수기를 사용할 경우 소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 제공 - 최소 급수공간은 두당 최소 450~700mm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송아지는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급여 등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제각을 하지 않거나 제각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표, 마킹 및 문신이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도태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4. 사육시설 및 환경

#####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출산환경은 다음과 같이 아래 기준에 적합합니까? - 새끼를 낳으려는 소는 깔짚이 완전히 깔린 우리에 사육 - 우리는 관리자에 의해 암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암소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 - 출산 성향에 따라, 충분한 수의 출산 장소 확보 - 새끼를 낳을 암소는 일 2회 이상 검사(기록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송아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준에 적합한가? - 외풍을 막으면서 수분응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기순환 - 다른 송아지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 위치 -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깔짚 도포 -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온시설(보온등 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격리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및 적합한 위치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았습니까? - 경사 26도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울타리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 사료급이를 하는 급사책(Feed fence) 등 급이시설은 소가 걸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착유시설 및 관리

○ 착유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청결, 젖소를 놀라게 하거나 착유를 방해하는 벌레, 조류 및 설치류 등을 방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 착유를 하기에 앞서 유방, 유두 등은 유두용 수건(teat towel)을 이용하여 청결하게 세척해야 하며, 유두는 승인된 소독제에 침지 - 주위에 유유를 쉽게 관찰하기 위한 조명이 있어야 함 - 6개월마다 착유기를 검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적합한 유두 컵 라이너를 구비, 매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교체 - 맥동기 작동 확인해야 하며, 진공 게이지 압력이 적정한지 확인 <전자동 착유시설> - 수동식 착유시설 이상의 관리가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다. 사육밀도, 깔짚 및 바닥관리

○ 깔짚제공 면적과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육단계</th> <th>깔짚 제공면적(m<sup>2</sup>)</th> <th>총 면적(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경산우</td> <td>착유우</td> <td>8</td> <td>16.5</td> </tr> <tr> <td>간유우</td> <td>6.5</td> <td>13.5</td> </tr> <tr> <td>미경산우</td> <td>3</td> <td>10.8</td> </tr> <tr> <td>육성우</td> <td>3</td> <td>6.4</td> </tr> <tr> <td>송아지</td> <td>2</td> <td>4.3</td> </tr> </tbody> </table>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16.5	간유우	6.5	13.5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사육단계		깔짚 제공면적(m <sup>2</sup> )	총 면적(m <sup>2</sup> )																	
경산우		착유우	8	16.5																
		간유우	6.5	13.5																
미경산우		3	10.8																	
육성우	3	6.4																		
송아지	2	4.3																		
- 개별우상(free stall)을 이용할 경우, 개별우상 바닥전체에 깔짚을 깔아주거나 바닥용 매트를 제공 - 씨수소 우리는 운동 및 교미가 가능하도록 최소 25㎡ 이상 이어야 하며, 최소 16㎡ 이상의 깔짚을 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운동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배설물 청소와 깔짚 교체를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사육환경

○ 조명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동안 최소 100 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조도 장소 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송풍팬, 분무시설 등 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청소, 소독 및 분뇨처리

○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인증사항

○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337㎡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음 급수 기준에 적합합니까? -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 마련 - 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 -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 시설/쉼터를 설치하였습니까?(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환경 관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하며, 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쑥갓 속 식물, 영경귀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 제거 -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함 -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우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 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등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생산관리 현황	○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청·등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없음			
	○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 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없음			
	○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있음(실적 : )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출하			

[별지 제1-6호 서식]

**동물복지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일반기준**

○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축사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항생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염소를 입식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염소의 관리 방법

####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 축사 내부면적(사육밀도, 시설 평면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축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청소 및 소독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수의사 컨설팅 내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염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비정상 행동, 질병발생 치료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⑪ 기대치 대비 성장률(표준체중과 비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⑫ 축사 바닥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⑬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⑭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⑮ 새끼염소 관리, 제각, 거세 관련 기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화재, 수해,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현 가능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염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

○ 염소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염소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다. 건강관리

○ 염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필요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염소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염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마.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건물기준)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마리당 최소 사료조 길이(cm) : 30~40(cm)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급수

○ 영소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영소의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 새끼영소는 생후 24시간 동안 초유 급여, 생후15 동안 어미 영소와 함께 분만실에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영소는 군사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제각을 하지 않거나 제각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거세를 하지 않거나 거세할 경우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도태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로 인해 영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영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분만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합니까? - 분만실크기 최소 가로 1.2m, 세로 1.8m - 개체별로 분만할 수 있는 시설 - 충분한 깔짚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격리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충분한 수의 격리시설 및 적합한 위치 - 청소 및 소독 상태 양호 - 격리실에서 나오는 분뇨의 적정 처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울타리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전기 철책을 접촉 시 영소에게 일시적인 불쾌감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 설치, 이용, 관리 - 급이시설과 관련한 곳에는 전기 철책의 사용을 금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사육밀도, 깔짚 및 바닥관리

깔짚제공 면적과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종류	깔짚 제공면적(㎡)	최소 소요면적(㎡)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예 아니오

- 개방식 흙바닥 축사의 경우 슬랫바닥 축사에 비해 1.5배의 면적을 제공해야한다

운동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 성장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내 성장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  
- 운동장의 일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영소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

예 아니오

배설물 청소와 깔짚 교체를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  
-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 영소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청결, 건조, 곰팡이가 없으며 수시로 보충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사육환경

조명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낮 동안 최소 50 lux 이상 조도 장소 제공  
-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에 50 lux 이하 조도 장소 제공

예 아니오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예 아니오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송풍팬, 분무시설 등 영소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자동화 · 기계화 설비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예 아니오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영소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 축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인증사항

○ 유기축산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55㎡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모든 염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출입하기 용이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음 급수 기준에 적합합니까? - 급수기 주변의 장소를 지나치게 밟아 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구유 앞에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방법 등 대책 마련 - 염소가 필요한 식수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수가 있는 장소로 250m 이내 위치. 가능하다면 구유나 출입구를 경사면의 아래 부분이나 지면의 침수지역에 위치 - 결빙, 가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식수를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비급수 공급대책을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차양 시설/쉼터를 설치하였습니까?(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환경 관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하며. 염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식물(썩갓 속 식물, 영경귀의 새싹, 마디풀과의 잡초 등) 제거 - 방목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야 함 - 방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되며,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 사육 대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축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자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대책이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 현 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등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관 리 자 현 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생 산 관 리 현 황	○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청·등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없음			
	○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 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없음			
	○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있음(실적 : )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출하			

[별지 제1-7호 서식]

**동물복지 오리농장 운영 현황서**

**1.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일반기준**

<input type="checkbox"/> 농장 내에 일반(관행)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오리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사육관리 등

#### 가. 관리자 의무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 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오리사 내부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폐사 및 도태 수와 원인 ④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⑤ 사료 및 물 섭취량 ⑥ 점등시간 ⑦ 오리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등 ⑩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나. 오리의 건강상태 등 점검

○ 매일 2회 이상 오리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1회 이상 기록 의무사항에 대한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오리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다. 건강관리

○ 오리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내외부 기생충은 구충약 투여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마른 깔짚이 깔린 적절한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라. 급이

○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를 먹기 어려운 오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에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급이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최소 급이 공간 : 100 마리 당 50cm 이상 - 팬형 급이기 : 15마리 당 1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급수

<input type="radio"/> 오리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물은 최소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겨울에도 급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급수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합니까? - 니플형 : 컵받침 설치 시 12마리당 1개 이상 컵받침 미설치 시 15마리당 1개 이상 - 벨형 : 100수 당 50cm, 폭, 깊이 각각 7c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적절한 수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100마리당 길이 50cm, 폭 20cm,깊이 10cm 이상제공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준수사항 및 인도적 도태

<input type="radio"/>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오리를 입식·사육할 경우 입식 후 40일 이상 오리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오리를 인도적으로 도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사육시설 및 환경

가. 사육시설

<input type="radio"/>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무창오리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오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오리는 관리자가 모든 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오리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radio"/>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오리가 보호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깔짚

<p>○ 깔짚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인가?</li> <li>- 오리사 내 모든 바닥(음수부근 예외)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으며 충분한 깊이</li> <li>- 음수시설 부근이 슬랫형태인 경우 바닥면적 25% 이하</li> <li>- 깔짚은 위생적으로 관리, 건조하게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li> <li>-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었을 때 즉시 교체</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깔짚은 충분히 제공하며 계절별로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최소 소요량 이상 제공합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사육밀도

<p>○ 사육밀도는 기준에 적합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란오리 : ㎡ 당 6.8kg 및 2마리 이하</li> <li>- 육용오리 : ㎡ 당 10.2kg 및 3마리 이하</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사육환경

<p>○ 조명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li> <li>-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인공조명은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의 오리가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조명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 시간 동안 오리사 내부는 오리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수 있고 관리자가 오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li> <li>- 조명도 : 최소 20 lux 이상</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공기오염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li> <li>- CO<sub>2</sub> 농도 : 5,000ppm 이하</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오리사 내 먼지 및 가스 냄새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적절한 온도 관리를 위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불편감을 느낄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는 없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자동화·기계화 설비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자동 급아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오리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 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 방역 및 청소

○ 오리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육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울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울인-올아웃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정식 소독장치 운영 등 방역 및 소독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오리를 입식하기 전 오리사를 비운 다음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차단방역을 위하여 오리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오리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 인증사항

○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HACCP 지정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동물복지형 자유방목(방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방목장 면적은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방목장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마리당 2.5㎡ - 방목장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마리당 4㎡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오리사와 방목장과의 출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높이 : 45cm 이상 - 너비 : 50cm 이상 -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오리 1,000마리당 총 2m 이상 - 오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차양시설 및 쉼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까? - 오리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은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잠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 상태가 좋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방목장의 오리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 사본 및 실측치 기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 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등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생산관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 단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			
생산관리 현황	○ 단체구성원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청·등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없음			
	○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단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화된 생산지침서가 있습니까? 생산지침서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없음			
생산관리 현황	○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속농가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미실시 - 위반자에 대한 자체 제재규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있음(실적 : ) <input type="checkbox"/> 제재규정 없음 - 소속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기적인 교육실시(실적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실시 - 인증품을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의로 출하(실적 : )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출하			



[별지 제4호서식]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인증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생산자			
4. 생산내역					
축종	사육규모	출하량(kg, 개) /출하기간	축종	사육규모	출하량(kg, 개) /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 적정성					
○ 농장의 출하내역					
○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 인증 기준 준수 여부					
○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					
○ 동물의 상태					
○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합 사항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사후관리 조사보고서(취급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유통내역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개)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개)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					
○ 표시된 농장에서 실제 출하 여부					
○ 표시된 축산물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출하된 축산물인지 여부					
○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동물실험지침

---



## 동물실험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5호, 2016.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23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이용·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 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찰과 시험을 통한 연구, 병성감정,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등 과학 실험을 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시험연구, 교육 및 기타 과학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비(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이하 "사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한 부서의 장(본부는 과장, 지역본부는 과장·센터장 또는 사무소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실험자"라 함은 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및 제7조(이하 "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관한 사항
2. 「기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7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국가검정 등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사용 시 준수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동물실험 일반원칙) ①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 보호와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그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자가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을 관리할 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과 그 준수사항을 지켜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실험계획 승인 등) ① 실험자는 동물실험의 수행 착수 전에 위원회운영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실험의 수행 또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실험자가 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강구 여부
4. 실험동물 종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6.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최소화 방안의 강구
7. 실험동물의 마취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8. 실험의 인도적 종료시점 및 그 처리기준 설정의 합리성 여부

9.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10.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자의 실험 전문지식 및 훈련 정도

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운영규정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신청)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4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자와 시설관리책임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험동물의 구매) ① 실험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위해 실험동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의 종과 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 동물실험시설에서의 검역 및 동물 순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에게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받은 구매담당 부서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청정·위생 상태의 유지, 방역, 동물실험

의 과학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의한 실험동물의 품질수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구매·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동물 반입) ①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정비 등 여건·운영계획 및 동물실험계획을 고려하여 그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 운송자가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실험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실험동물이 장시간 운송으로 인한 불편함과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인한 충격·공포감 및 상해 등을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과 운행에 유의할 것
2. 실험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실험동물의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운송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운송 차량을 사용할 것

제9조(실험동물 검역 등) ① 실험자가 실험동물을 검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구매조건, 이상 여부, 사망 유무 등의 확인 및 실험동물의 상태, 운송방법, 운송시간 등을 기록하고, 적절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들 작업은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은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등 사육관리 관련 자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나 갑작스런 질병발생 등 긴급한 실험 또는 기타 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실험 수행) ① 동물실험은 검역본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실험 관련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상의 숙련된 실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은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실험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③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그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쾌적하고 적합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도·습도 및 환기 등을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유지·조절해 주어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 있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실험종료 후의 처치) ① 실험자는 실험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득이 실험자가 동물을 처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승인

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할 경우 인도적 처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숙련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험자와 사체처리 담당자는 실험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험동물의 사체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종료보고서와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육·관리방법 등의 일반기준)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동물실험에 이용할 때에는 관계 법·규정을 지켜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실험동물로 인해 산업안전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시설의 관리를 위하

여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출입 관리기록, 시설관리기록 및 동물반출입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실험시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실험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와 공간 및 환경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설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음·폐기물·냄새·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원활한 소독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 등 실험동물을 사육관리 하는 자는 실험동물에 대해 윤리적인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종이나 임신·출산 등 동물의 상태에 적합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험자는 실험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시설운영자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자 등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과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및 개인 안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질병방역대책)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해충 및 야생동물 등의 질병매개체에 대한 대책과 구제를 위한 계획 등 실험동물질병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질병 및 감염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 및 감염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른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방지대책) 시설관리책임자는 지진·화재·정전 등 비상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안전)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로부터의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필요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자 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는 자는 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마스크·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실험시설의 출입·안전관리)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이 관리장소로부터 탈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실험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실험자는 물리적·화학적으로 위험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험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경의 오염에 의해 실험동물이 장해를 입거나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실험자는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실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시설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 관계)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②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운영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1호, 2013. 3. 23)」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6호, 2011. 6. 15.>

-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95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호, 2012. 11. 20.>

-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6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호, 2013. 3. 23.>

-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2016. 3. 9.>

-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시설관리책임자의 의무 (제12조제2항 관련)

1. 시설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실험동물 사육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시설운영자로 지정
- 나. 질병방역대책 및 재해방지대책 수립
- 다. 위원회의 실사나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
- 라. 시설운영자 및 실험자의 업무수행 관련 교육·훈련 등의 기회 부여
- 마. 외부인의 시설출입 허가 등

2. 시설운영자는 시설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 기록의 관리
- 나. 시설의 운영상황과 동물실험실태, 동물사용현황 등의 관리
- 다. 질병방역대책 및 재해방지대책의 이행
- 라. 동물 질병의 주기적인 진단과 고지
- 마. 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제 과정에 대한 관리
- 바. 관리자의 안전과 위생 등의 관리 등

3. 관리자는 시설운영자를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개인위생 준수, 동물의 관리 및 점검
- 나.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확인될 경우 시설운영자에게 보고
- 다.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기록, 환경 및 동물사육관리기록의 기재 등

[별표 2]

동물실험시설의 환경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사육실의 온도 및 상대 습도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다른 동물 종이나 임신 등 특수상태의 사육에 관한 사항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문헌에 근거한다.

동물 종	상대습도(%)	실내온도(℃)
마우스	40~70	18~26
랫드	40~70	18~26
햄스터	40~70	18~26
기니픽	40~70	18~26
토끼	30~50	16~22
개	30~70	18~29
가금류	60~80	15~27 (성축)

2. 청정실험동물사육실의 환경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기준치	비고
조도	150~300 Lx	작업상 높이에서
소음	60 db 이하	
기류	13~18 cm/sec	
배기	14~18 회/시간	
취기	20 µg/m <sup>3</sup>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한다
기압		필요에 따라 사육실 내외부의 차이를 두고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먼지	285 개 이하/ m <sup>3</sup> (10,000 개 이하/ ft <sup>3</sup> )	실험동물이 없는 경우
낙하세균	3 콜로니 이하/30분	실험동물이 없는 경우
	30 콜로니 이하/30분	실험동물이 있는 경우

3. 동물 사육 시 고려사항

동물을 수용하는 공간과 시설물은 동물의 상해를 방지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종	체 중(g)	사육방식	바닥면적/동물(cm <sup>2</sup> /animal)	높이(cm)
마우스	<10	케이지	38.70	12.70
	10~15	케이지	51.62	12.70
	16~25	케이지	77.42	12.70
	>25	케이지	96.78	12.70
랫드	<100	케이지	109.68	17.78
	100~200	케이지	148.40	17.78
	201~300	케이지	187.11	17.78
	301~400	케이지	258.08	17.78
	401~500	케이지	387.12	17.78
	>500	케이지	451.64	17.78
햄스터	<60	케이지	64.52	15.24
	60~80	케이지	83.88	15.24
	80~100	케이지	103.23	15.24
	>100	케이지	122.59	15.24
기니피그	≤350	케이지	387.12	17.78
	>350	케이지	651.65	17.78
	(kg)		(m <sup>2</sup> /animal)	(cm)
토끼	<2	케이지	0.14	35.56
	2~4	케이지	0.28	35.56
	4~5.4	케이지	0.37	35.56
	>5.4	케이지	0.46	35.56
개	<15	케이지/펜	0.74	81.28
	15~30	케이지/펜	1.12	91.44
	>30	케이지/펜	2.16	101.6
돼지	≤25	펜	0.54	
	26~50	펜	0.90	
	51~100	펜	1.80	
	101~200	펜	3.60	
	>200	펜	4.68	
소	≤75	펜	1.80	
	76~200	펜	3.60	
	201~350	펜	5.40	
	351~500	펜	7.20	
	501~650	펜	9.45	
	>650	펜	10.80	
가금류	≤0.2		0.025	30
	0.2~1.5		0.09	50
	1.5~2.4		0.18	60
	>2.4		0.21	75

가. 펜, 케이지 등 동물의 사육상은 실험동물이 정상적으로 성장·발육·번식·행동하기에 적합하고, 작업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 및 구조를 가져야 한다.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권장 사육방식, 최소면적과 높이 등의 공간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동물종이나 임신 등 동물의 특수상태에 대하여는 동물계통과 체중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준용하거나 과학적으로 인정된 문헌을 따른다.

나. 동물을 사육하는 케이지 등의 보관상은 하단의 받침대가 사육실 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사육상과 보관상은 세척, 멸균 등의 위생적 처리에 의해 변형 및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라. 음수공급기의 고려사항

(1) 물병의 재질은 세척, 멸균 등의 위생적 처리에 의해 변형 및 변질되지 않는 것을 선정한다.

(2) 음수공급기구의 구조는 실험동물이 물을 섭취하기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음수관리의 고려사항

(1) 동물용 음수의 공급절차 및 종류 등을 규정하여 해당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2) 물은 위원회의 승인 등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실험동물이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음수로 사용되는 물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음수매개 병원체의 오염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멸균처리를 실시한다.

(4)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나 유해물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바. 사료의 고려사항

(1) 실험동물용 사료는 동물의 정상적인 성장·발육·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장기간 보관 시 사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장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물운송 세부규정

---



## 동물운송 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9호, 2018. 10.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부터 차량의 적재공간으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5. "하차"라 함은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포유류'와 제2호의 '조류'에 한한다.

제4조(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하여야 한다.
7.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3.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4.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 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 다.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 라. 털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 마.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6.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가.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 나.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 다.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기타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7.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9.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기타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주어야 한다.
13.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7조(구비문서)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시 준수사항) ①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
3.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4.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소요면적)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은 별

표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제10조(상·하차 시설 등) ①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켜야 한다.
  2.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물이판이나 물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 ③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충격기의 사용
  2.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3.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4.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5.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6. 머리, 귀, 뺨,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
  7.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8.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품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9.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10. 기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④ 동물의 상처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한다.
- ⑥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한다.
- ⑦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3호, 2013. 3. 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0호, 2013. 3. 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6호, 2014. 9. 1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9호, 2018. 10. 1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제9조 관련)

1. 소

구 분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m <sup>2</sup> /두)
어린 송아지	50 이하	0.30-0.40
중 송아지	51-110	0.40-0.70
큰 송아지	111-200	0.70-0.95
중 소	201-325	0.95-1.30
큰 소	550 이상	1.30 이상

2. 돼지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m <sup>2</sup> /두)
7~10	0.05
25	0.14
30	0.15
35	0.16
40	0.18
100	0.43
110	0.45
120	0.47
모든	0.79

3. 닭

구 분	소요면적
병아리	21~25 cm <sup>2</sup> /수
1.0 kg 미만	180~250 cm <sup>2</sup> /kg
1~<2 kg	160~210 cm <sup>2</sup> /kg
2~<3 kg	170~230 cm <sup>2</sup> /kg
3~<5 kg	115 cm <sup>2</sup> /kg
5 kg 이상	105 cm <sup>2</sup> /kg

4. 오리

구 분	소요면적
새끼오리	23.1~27.7 cm <sup>2</sup> /수
1.0 kg 미만	198~255 cm <sup>2</sup> /kg
1.0~<2.5 kg	193~235 cm <sup>2</sup> /kg
2.5~<3.5 kg	188~245 cm <sup>2</sup> /kg
3.5 kg 이상	>200 cm <sup>2</sup> /kg

5. 기타 포유류 : 개체의 체장과 체폭을 곱한 넓이의 1.4배의 면적을 제공

6. 기타 조류 : 닭의 운송소요면적에 준하여 적용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호, 2016. 1.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제4조(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 1. 21.>  
이 고시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 상태 유지 여부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 이어야 한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 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4시간 또는 4회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 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나.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1)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 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 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 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 인한다.
	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 겔만비탁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 도 즉 O2의 백분율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 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 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 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 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 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 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2.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 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 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 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 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 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 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 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 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3. 연소 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 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 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 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 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 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 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 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4.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5. 보조연소 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 장치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7.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8.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번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9.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 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p>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p> <p>(2)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p> <p>(3)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 비교 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p>
10.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가. 연소실 외부를 철관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 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2. 내부 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13. 소각재의 흘날림 방지조치 여부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14. 표지판 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가.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2]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적정연소 상태 유지 여부	가. 적절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시간 또는 2회 이상 (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 완료시 까지)이어야 한다.
	나.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O <sub>2</sub> 의 백분을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 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 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2. 연소실 출구가스온도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0 0℃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 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 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3. 연소실가스 체류시간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 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시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 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4. 바닥재 강열감량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 이하이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5. 보조연소장치 작동상태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 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설치검사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가.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 조작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나.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3]

###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백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방법
CO(ppm)	200(12) 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함
황산화물(SO <sub>2</sub> 로서) ppm	50(12) 이하	
질소산화물(NO <sub>2</sub> 로서) ppm	90(12) 이하	
먼지(mg/Sm <sup>3</sup> )	20(12) 이하	
염화수소(ppm)	20(12) 이하	

[별표 4]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가. 동물사체처리시설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물사체처리시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동물사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2. 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 (멸균검사포함)	가. 적절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절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가) 2회이상 가동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시간당 멸균분쇄 능력이 검사신청한 용량이상에 적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신청시 처리능력은 등록신청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승온시간과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신청한 처리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동물사체는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조건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①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MHz의 주파수와 출력 1,000와트 이상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1)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의 제반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가) 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아포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다) 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아포균 (Bacillus Stearothermophilu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가)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3. 분쇄시설의 적정 작동 여부	가.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1) 멸균된 폐기물을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등 분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4.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가. 증기밀폐장치는 밀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 운전중 밀폐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5. 자동기록 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가.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가)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나.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의 종 이 또는 전산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1) 자동기록지가 연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전산파일인 경우 전체 평균 시간을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다.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 기록 되어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 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동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 지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4)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악취방지 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가.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5]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처리용량의 적정성	가. 적정한 멸균분쇄시설의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능력은 등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시설 능력은 멸균분쇄 처리량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멸균조건 적정유지 여부 (멸균검사 포함)	가. 동물사체는 아래의 운전조건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①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MHz의 주파수와 출력 1,000와트 이상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아포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가) 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아포균 검사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u>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u> 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가)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 밀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3. 분쇄시설 정상가동 여부	가.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1) 멸균된 폐기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가.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나.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1) 자동기록장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방식(종이 또는 전산파일)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1)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소화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6.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 등의 정상가동여부	가.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등은 설치검사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14호, 2014. 1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교육은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제1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위생·생산·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3. 교육방법(대상별)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과목별 교육시간
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

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3호, 2008. 3.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1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31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83호, 2013. 10. 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6년 3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14호, 2014. 12. 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키한)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4호, 2018. 12. 11., 일부개정.]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014-113호, 2014. 12. 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94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0호, 2019. 5.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0호, 2019. 5.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일부개정.]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

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부칙 <제2008-2호, 2008. 3.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66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7호, 2013. 5. 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5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약칭: 진돗개법)

[법률 제1314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7조(심사)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0조(혈통의 보존)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 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1조(반출·반입의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삭제 <2007. 12. 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3. 9.>

[제목개정 2011. 3. 9.]

제12조(반출·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3. 9.]

제14조 삭제 <1999. 1. 29.>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9.]

부칙 <제5347호, 1997. 8. 2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21호, 1999. 1. 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60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7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7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